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발간등록번호 31-9735006-001485-14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III

2017. 09.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회입법조사처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Ⅲ

총괄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
분야별 총괄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 고상근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성희 (사회문화조사실장) 박재유 (기획관리관)
기획 및 편집위원	김원모 (정치행정조사심의관) 김 준 (사회문화조사심의관) 여영준 (총무담당관) 황선호 (기획협력담당관) **박규찬 (정치의회팀장)** 심정희 (법제사법팀장) 유웅조 (외교안보팀장) 이상팔 (안전행정팀장) 정지은 (재정경제팀장) 임동춘 (금융공정거래팀장) 김봉주 (산업자원팀장) 유인규 (국토해양팀장) 유의정 (교육문화팀장) 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 최준영 (환경노동팀장 직무대리)
편집실무	**김유정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보)** 김안나 (정치의회팀 행정실무원) 방우리 (정치의회팀 입법조사원)

발 간 사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국정 운영의 잘못을 밝혀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가 명문화한 국회의 헌법적 권능이며, 국회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국회가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가 점차 전문화·비대화되면서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국회는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를 통해 행정부의 정책집행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도에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새롭게 도입하여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한 정부측 시정 및 처리결과를 평가한 보고서를 31건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대상 기관별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별로 1~2건만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점 등 기존 보고서 체계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2017년도부터는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건수를 확대하고, 보고서 발간 시기도 앞당기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저희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점검하고 평가한 약 290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습니다.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하였으며, 그리고 각 주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측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팀과 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매년 국정감사기간 동안 국민의 눈과 귀는 국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가 국회의원님과 보좌진 여러분의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7년 8월 31일

국회입법조사처장 **이 내 영**

알 림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 국회가 채택한 시정요구서에 따라 각 정부 부처가 제출한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평가보고서의 발간 기획·원고작성·편집이 진행되는 가운데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일부 정부 부처 및 국회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맞춰 정부 부처, 국회상임위원회 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지 및 목차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부처 명칭 변경	국회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 국민안전처 폐지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다만, 본문 내용에서는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또는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 당시의 「정부조직법」 및 「국회법」에 따른 정부부처 및 국회상임위원회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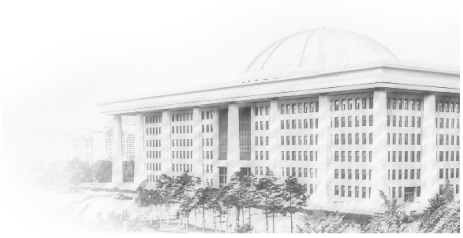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정감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각 주제 하단에 소관부처의 담당 팀 및 주제를 작성한 조사관의 연락처를 기술하였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팀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각 권별 상임위원회 구분 현황

구분	상임위원회
평가보고서 Ⅰ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평가보고서 Ⅱ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평가보고서 Ⅲ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Ⅲ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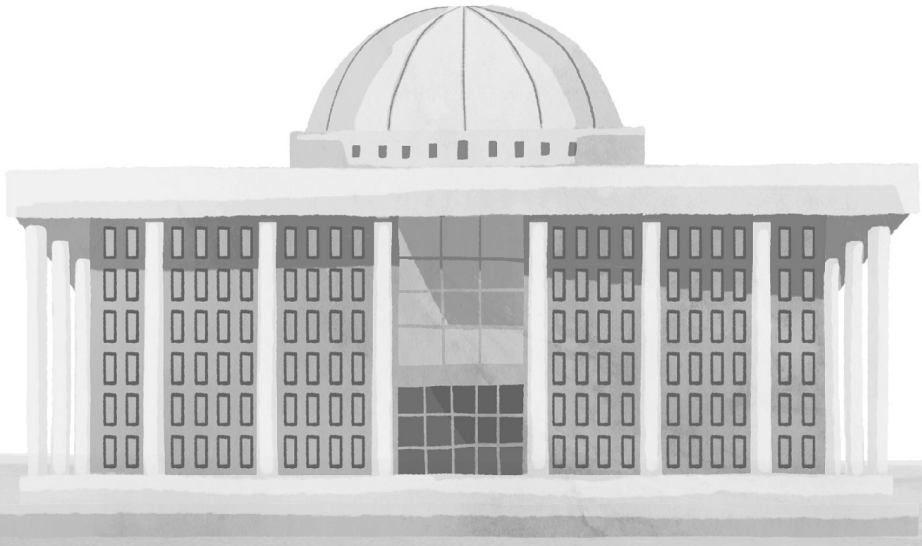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목 차 Contents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원격교육연수원 관리·감독 강화 ····· 3
자유학기제 활성화 ····· 6
선행교육 규제 및 공교육 정상화 ····· 8
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 ····· 10
지방대 육성 ····· 13
연구윤리의 강화 ····· 16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의 개선 ····· 18
대학구조개혁평가 사업의 재검토 ····· 21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 24
초·중·고교 창업교육 활성화 ····· 27
특수교육대상자 건강검진 기준 마련 ····· 29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인력 처우 개선 ····· 31
평생교육 강화 방안 ····· 3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 36
학교폭력 사안 재심 관련 ····· 38
SW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 40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관련 ····· 43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자리 관련 ····· 45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상영관 광고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 대책 수립 ····· 47
예술 지원 심의의 공정성 확보 ····· 50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작성의 장려 ····· 52
대기업의 영화배급업·상영업 겸업 금지 ····· 55
문화콘텐츠 유통 불공정 문제의 개선 ····· 57

스포츠 불공정행위 사전 예방대책 마련 ····· 60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 63
굿스테이 등 인증 숙박시설의 사후관리 ····· 66
국민체력100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68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73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 76
국가 대장암검진 개선 방안 마련 ····· 7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83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합리적 역할 설정 ····· 86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용체계 개선 방안 ····· 89
기초생활수급자의 공공요금 감면제도 개선 ····· 91
기초생활수급자의 미신고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소급 지급 ····· 94
기후변화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역할 재정립 ····· 97
맞춤형보육 개선 ····· 101
사설구급차 관리감독 강화 ····· 103
사회복지시설 시설평가제도 개선 ····· 106
수급자 선정시 기본재산액 기준 개선 ····· 110
아동학대예방 예산의 일반회계 편성 ····· 112
양육수당과 보육료 격차 해소 ····· 115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117
요양보호사 수급부족 문제 개선 ····· 121
음주폐해예방 종합대책 마련 ····· 124
응급환자 이송시스템 구축 ····· 128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공급 개선 ····· 131
의사-한의사 협진체계 확대 ····· 134
인구정책 총괄 전담기구 설치 등 ····· 137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전 방안 검토 ····· 140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 설치 방안 검토 ····· 143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지원 대책 ····· 146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실시 ····· 149
활동보조인의 처우 및 업무범위 개선 ····· 1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정한 입원적정성 심사 방안 마련 ····· 157
의료질평가지원금 배분의 평가기준 마련 ····· 16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기관의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 164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 개선 ····· 168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이식 의료기기 추적관리 강화 ····· 172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 ····· 176

장애인개발원

BF인증제도 개선 및 홍보강화 ····· 180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184
장애인 취업 관련 실태 파악 및 임금보장을 위한 대안마련 ····· 18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 ····· 19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설계사의 처우 개선 ····· 196
유해사이트와 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198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근로자 처우 개선 ····· 202
화해치유재단의 성격과 사업 검토 ····· 205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하천 유입 총인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211
빗물 재이용시설 확충 등 필요 ····· 213
일회용 컵 재활용률 제고방안 마련 ····· 215
순환골재의 품질안전 기준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 ····· 21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 219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방안 ····· 221
전기차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필요 ····· 223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 재검토 ····· 226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관리강화 ····· 227

기상청

해저지진 관측장비 도입 및 연구강화 ····· 230

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 ····· 233
사무장 병원의 산재급여 부정수급 ····· 23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영업비밀로 정보공개 거부 시 정보공개심의회 이용 ····· 238

고용노동부

조선업 하청업체 종사 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 ····· 240
모성보호 근로감독 강화 ····· 242
고용형태공시제 개선 ····· 244
시내버스 운전사의 장시간 운전관행 개선 ····· 246
IT업계의 과도한 근로시간 ····· 247
노사간 균형감이 있는 고용노동행정 필요 ····· 249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 2대 지침 관련 ····· 252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Ⅲ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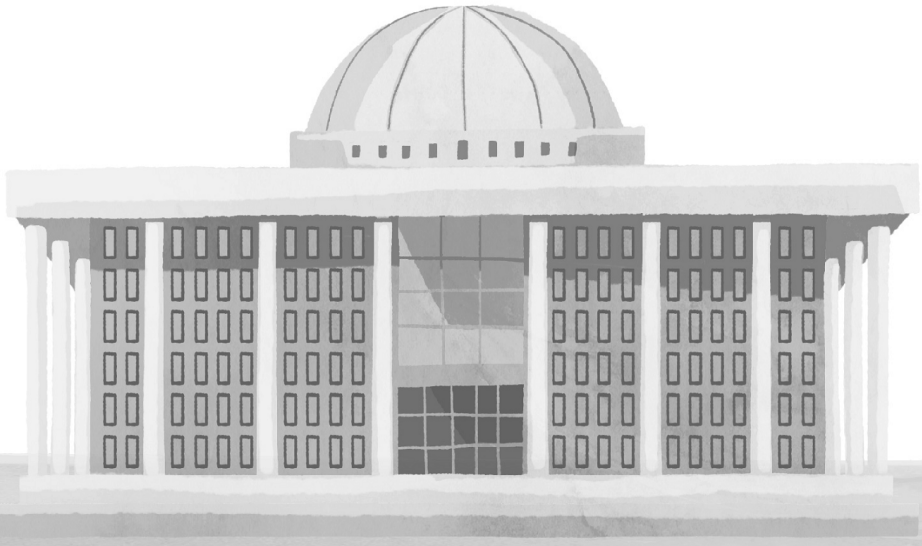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교육부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원격교육연수원 관리·감독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에 대하여 원격교육연수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교육부	원격교육연수원을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한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인가취소 조치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지난 2017년 2월에 다음과 같이 보고함[1)]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2016.12.22.)

– 연수원 운영평가 결과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미이행시 인가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임

1) 대한민국 정부,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교육부 소관)』, 2017.2.

○ 향후 입법예고(2016년 12월~17년 1월 말) 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임(2017년 중)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원격교육연수원 평가 결과를 활용한 후속조치의 법적 근거 확보 등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여부**
- 관련 대통령령 및 부령 개정안 마련(이행)
- 관련 대통령령 및 부령 개정(미이행)
- 그 외의 관리·감독 강화 및 질제고 방안 마련(계획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교육부는 교원 연수원의 평가 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안 제2조의3)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음

○ 이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해 공감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교원 연수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미이행시의 인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및 부령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법령 체계 및 내용상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 방안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해석됨

- 교육부도 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 및 부령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다른 대안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남

3. 개선방안

□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의 주요한 목적은 “부실한 교원 연수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교원 연수 운영의 질 제고” 등이라고 해석됨. 교육부는 법률 개정 이외에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상위 법률(「교육공무원법」 등)을 개정하여 평가 결과 미흡한 교원 연수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설치인가 취소 등의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제2항은 “교원 연수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이 법률 제39조를 개정하여 연수원에 대한 평가, 결과 활용을 통한 시정명령 및 인가 취소 등의 제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임

□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제2항이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평가 및 평가 결과 활용을 통한 제제 조치”를 추가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시정명령 및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 정지 처분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현행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인가 취소 등을 제외한 운영 정지 처분 등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9조 제2항의 위임 한계 일탈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이덕난	02) 788-4702
관련 부처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원복지연수과	-	044) 203-6466

자유학기제 활성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에 대하여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교육부	자유학기제에 대한 토론회 결과 교사들의 열정, 학부모들의 배경 등에 따라 실제 운영이 천차만별이고 연속성 문제 등 여러 개선과제가 있으니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학교·교원간 편차 완화를 위해 지원함

- 교과별·대상별·수준별 맞춤형 교원 연수(143,280명) 및 찾아가는 학교컨설팅(학교당 평균 2회 이상) 실시, 수업·평가 자료집 개발·보급(40종) 등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함

- 전체 농산어촌 학교(1,206교)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 지원
- 서울대 등 유수대학 진로캠프(145교, 2,119명) 및 공공·민간기업 양질의 체험프로그램 농산어촌 학교 우선 배정

○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를 통해 자유학기로 인한 긍정적 변화를 타학기·타학년으로 확산함

-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학교(2016·2017년: 80교)·시범학교(2017년: 326교) 지정·운영 및 권역별 연구·시범학교 교원 연수 추진(2017.2월)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자유학기제 운영의 개선과제에 대한 대책 수행 여부**
- 학교·교원간 편차 완화 대책 (대안 이행 중)
- 지역격차 해소 대책 (이행 중)
-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를 통한 확산 대책 (계획 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학교·교원간 격차 완화를 위해 교원 연수와 컨설팅 등 부분적인 지원 방안을 이행하고 있으나,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시된 대책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학교의 요청 및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음

○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지 않는 일반 학기 및 학년으로 연계 및 확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나, 중학교의 다른 학기 및 고등학교 등 일반학기와 자유학기 간의 실질적인 연계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및 평가(교내 내신, 상급학교 입시 등) 개편방안은 제시되지 않음

3. 개선방안

□ 농어촌 지역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교·학생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해당 학교 및 지역의 요구 및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의 1개 학기동안 실시되고 있으므로, 자유학기제의 연속성 문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등으로의 확산과 연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유학기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과정 및 평가 방법의 혁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학기제 도입이후 자유학기 및 일반학기의 교육과정 및 평가 방법이 얼마나 개선되었고 그 효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중·고등학교 교내 평가(내신) 및 상급학교 입학시험(대학입시, 고교입시) 개선 대책 마련 시 자유학기제 정책의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이덕난	02) 788-4702
관련 부처	교육부	학교정책실	공교육진흥과	-	044) 203-6331

■ 선행교육 규제 및 공교육 정상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에 대하여 선행교육 규제 및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교육부	학교 현장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어떤 후속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시행하고 있음

- 자유학기제 학교 수: (2013년) 42개교 → (2014년) 811개교 → (2015년) 2,551개교

→ (2016년) 3,213개교(전체 중학교)

○ 학교 내 선행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추진함

– 선행교육·출제 점검 및 위반사항 시정조치(매 학기)

※ (2015.1학기) 10,962개교 점검, 11개교 시정조치 → (2015.2학기) 10,962개교 점검, 4개교 시정조치 → (2016.1학기) 11,245개교 점검, 6개교 시정조치(서울교육청 위반학교 미확정으로 제외)

– 대학별고사 선행교육 영향평가 및 위반사항 시정조치(매 학년도)

※ 2016학년도 위반대학(12개교) 결정, 시정명령(이행계획서 제출)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후속방안 마련에 대한 수행 여부** – 학교 내 선행교육 관행 근절 대책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정부는 초·중·고교의 선행교육과 초·중·고교 및 대학의 선행출제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는 선행교육 및 출제 위반관행을 근절하는 데에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평가됨

○ 다만, 선행교육 및 출제 근절은 공교육 정상화의 필요조건 중 하나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효과적인 후속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아직은 초·중·고교 12년(24학기) 중 중학교 1개 학기에 대해 시행되고 있고, 자유학기의 도입 이후 공교육 정상화 및 학교 밖 선행교육 감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미흡함

3. 개선방안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4.3.11.제정)의 제정 목적은 "학교 선행교육 규제 및 공교육 정상화 실현"이나, 현행 법률은 학교 선행교육 및 선행출제 중심으로 규율됨

□ 법률명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정상화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항을 법령에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3학년 2학기까지 정상 운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 시기(3학년 2학기 중 실시)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과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을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3학년의 2개 또는 1개 학기를 학생의 진학 및 진로 희망에 따라 수능시험 등 대학진학 준비, 직업준비 및 자격증 취득, 대학 과목 선 이수, 직업 체험 또는 고교-직업 연계 교육 이수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며, 수능시험 시기를 3학년 1학기 말이나 2학기 초로 앞당기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이덕난	02) 788-4702
				유지연	02) 788-4706
관련 부처	교육부	학교정책실	공교육진흥과	-	044) 203-6331

■ 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에 대하여 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교육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공무상 병가·휴직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치료·상담-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
교육부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지원하기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전문상담사가 없거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교육부	교권 침해에 대한 예방, 엄중한 처벌, 피해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교육부	교권침해에 있어서 단순히 전보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 교사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교육현장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충원대책을 마련할 것
교육부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실시함

- 4개 시·도교육청(대전, 부산, 대구, 제주)에서 시범운영함
- 2017년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특별교부금 교부 계획을 수립함(2016.12.22.)
- 담당 부서와 총액인건비 지원을 통한 전문상담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실시함

○ 교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2016.11.11.)이 발의되어 국회 교문위에 계류 중임

- 관할청의 수사기관 등에 대한 고발 의무화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300만원)하는 내용이 포함됨

□ 교육부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보고함

○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할 예정임(2017년 내)

○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및 성과분석을 위한 위탁 계약을 체결함(한국교육개발원)

○ 교원의 공무상 병가 및 휴직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업무 협의를 실시할 예정임

○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 교권침해 학생의 강제전학 조치 명시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 수행 여부**
– 교원치유지원센터 17개 시·도로 운영 확대 (계획 수립 중)
– 전문상담사 및 전담변호사 충원 대책 (미 수립)
– 교권침해 예방, 엄중 처벌, 피해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법령 개정 (이행 중)
–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계획 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교육부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2017년 중에 17개 시·도로 운영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센터 수의 양적 확대 및 접근성 제고 등을 고려한 계획으로 평가됨

– 다만,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피해교원의 접근 경로 등을 분석하여 광역 단위 집중 운영 및 방문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대안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심한 피해 교원의 경우 본인의 센터 방문보다는 전담인력의 방문 서비스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전문상담사 및 전담변호사의 충원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고,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현재 배치된 인원도 적고, 대부분 계약직 신분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함

○ 교권침해 예방, 엄중 처벌, 피해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0대 국회에 4건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안, 2016.11.11., 서영교의원안, 2016.12.8., 조훈현의원안, 2017.2.9., 이동섭의원안, 2017.5.19.) 등 입법 대안에 제안됨

3. 개선방안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의 효과적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전문상담사 및 전담변호사의 안정적 충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권침해 예방, 엄중 처벌, 피해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0대 국회에 제안된 4건의 법률안 등을 효과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고, 정부제출 및 대통령령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입법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이덕난	02) 788-4702
				유지연	02) 788-4706
관련 부처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원정책과	-	044) 203-6688

■ 지방대 육성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에 대하여 지방대 육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교육부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 이후에 오히려 지역인재 교수임용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일부 거점 국립대학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실시율이 낮은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대' 육성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노력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것
교육부	고등교육 투자, 정부재정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한 지방 국·공립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지방대 육성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발 권고비율 준수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평가(CK)시 인센티브를 도입하도록 하고, 미준수 대학은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독려함

○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을 통해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함

○ 대학특성화사업(CK)을 통해 지방 국·공립대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지원함

○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대 육성법」과 관련**

– 지역별로 대학·산업체·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구성을 독려함(이행 중)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대하여 2016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18년 시행계획을 수립함(이행 중)

– 지역인재 전형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공공기관 지역인재의 채용을 확대할 계획임(이행 중)

– 교수 채용 시 우수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육성법 등을 적극 안내하고, 국립대의 경우 교수정원 배정 시 지방인재 채용을 적극 권고함(이행)

■ **지방 국·공립대 경쟁력 강화 관련**

–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을 통한 국립대학의 자율 혁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제고 과제를 자율적으로 발굴하고(이행), (2) 대학 간 협업 등을 통해 발전체제를 구축하여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함(이행), (3)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대학 내 혁신 및 대학 간 혁신모델 등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이행 중)

– 대학특성화사업(CK)을 통해 지방 국·공립대가 비교 우위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 2016년도에 지방 국·공립대 24교 87개 사업단에 71,351백만원을 지원함(이행), (2) 2016년 지방대육성 추진실적을 점검함(이행 중)

– 지방대학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 대학재정지원 사업시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구분하고, 프라임사업과 코어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이행), (2) 2017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함(이행), (3) 2018년 지방대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함(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지방대 육성법 관련 국회의 시정 요구사항의 취지는 동법의 제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이 미흡하다고 보고 실태를 점검하여 동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는데, 교육부의 관련 시정 처리 사항들은 지방대 육성법에 따른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대한 사업 개선 등 구체적이나 지엽적인 방안 추진에 집중하고 있음.

○ 국회가 시정 요구를 한 정부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지방 국공립대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교육부는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과 대학특성화사업(CK) 등 이미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는 부문에서는 지방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시정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대 육성법과 관련하여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지방대 육성법 관련하여 교육부는 동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중장기 종합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지방대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심의를 받은 후 필요한 재정계획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정부의 종합계획에 대하여 지방대 육성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효과적인 정책이 되도록 심의하여야 함

□ 국·공립대 재정 지원의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미 이행 중인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주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대 육성과 관련되어 시정 이행 중인 재정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부처 내의 유관 부서 간의 실질적인 협력으로 통하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한 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정환규	02) 788-4701
관련 부처	교육부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과 지역대학육성과	- -	044) 203-6917 044) 203-6949

연구윤리의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그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제재하고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교육부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실태와 처벌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교육부	학술논문의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 확인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구비 환수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한국연구재단	대학에서 표절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장(소속기관)이 검증·판단하고 재단에 통보하게 되는데, 총장이 연구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연구윤리 위반행위 예방 및 처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화함

-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이수 의무화를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을 하도록 지원함
- 연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연구자 소속 기관에서 1차 검증하고, 이의제기 시 규정에 따라 검증결과 재조사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 관련 규정 내 해당 조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발굴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연구윤리 위반행위 예방 및 처벌 강화 관련**
- 사이버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을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 2015년 4월부터, 공동연구원에 대하여는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고, 이밖에도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오프라인)을 실시하도록 지원함(이행)
-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제20조의2) 연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제재부담금 및 출연금 환수 등을 규정하는 등 제재를 크게 강화함(이행)

■ **연구윤리 교육 관련**
- 연구윤리 교육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심화과정, EBS를 통한 연구윤리교육의 신규 방영과 제작을 추진하고 있음(이행 중)
- 윤리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2015년 4월부터는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2016년부터는 공동연구원에 대한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의 의무 이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이행 중)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관련**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연구자 소속 기관에서 1차 검증하고, 이의제기 시 규정에 따라 검증결과 재조사 등의 조치를 실시함(이행)
- 향후 연구 부정행위 확정시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게 제재 조치(참여 제한, 협약 해약, 사업비 환수 등)를 실시할 계획임(이행 중)

■ **총장이 연구부정행위를 할 경우의 제도보완 관련**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내 해당 조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발굴하겠음(이행 중)
- 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하여 규정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조치방안을 찾겠음(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대학 및 학술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역사적 관행상 학술적 성격의 연구윤리에 대하여 법과 제도를 통하여 학술사회의 외부에서 직접 규제하기가 어려운 점이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이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난점임

○ 이와 같은 근본적인 속성 때문에 소관 부처인 교육부나 일부 유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국회의 감사 시정요구 사항들에 대하여 명쾌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정행위는 해당 규정으로 비교적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도 명료하게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현행 규정 내에서 개선점을 발굴하겠다는 소극적인 방안만을 내놓고 있음

3. 개선방안

□ 연구윤리에 대한 학술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학술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 접근은 학술진흥과 대학사회의 자율 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실효적인 법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모법인 「학술진흥법」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조문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적 연구비를 지원받는 비학술적 연구·국책연구·각종 용역연구·기관연구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비·통합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정환규	02) 788-4701
관련 부처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대학정책실 -	학술진흥과 -	- -	044) 203-6604 042) 869-6510

■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의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에 대하여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입전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교육부	학부모 대상 여론조사 결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데 해당 전형을 줄인다거나 개편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교육부	학생부 종합전형의 안착을 위한 입학사정관제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교육부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에 대한 직무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평가기준 및 검증절차를 강화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대학 입시 및 입학사정관 운영에 대하여 대학 컨설팅을 실시함

○ 학생부 종합전형 등 대입전형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한 대학차원의 공동사업이나 공동연구를 지원함

○ 입학사정관 대상 직무윤리 및 전형평가역량 제고 연수를 실시함

○ 학생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부 권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교내상·학교내 학생주도 연구실적(소논문) 등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안에 대하여도 개선방안을 마련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고교 학생부의 신뢰성 제고 관련**
- 2016년 11월, 학생부의 권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교내상·학교내 학생주도 연구실적(소논문) 등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안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이행)
- 2017년 2월, 학생부종합전형의 안착 및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포럼 개최(이행)

■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성 제고 관련**
- 2016년 8~9월과 같은 해 12월, 대학 입시 및 입학사정관 운영에 대하여 대학 컨설팅을 실시함(이행)
-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 학생부 종합전형 등 대입전형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한 대학차원의 공동사업이나 공동연구를 지원함(이행)

■ **입학사정관제 운영 관련**
- 2017년 1월, 입학사정관 대상 직무윤리 및 전형평가역량 제고 연수 실시(이행)

- 2017년 2월,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의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2017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함(이행)
- 2017년 2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를 통해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및 직무윤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대학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입학사정관을 채용·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함한 대입전형 운영 시 학생의 능력·노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함(이행)
- 대학의 대입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 등 양적 확대에 치중하지 않고 질적 내실화되도록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를 통해 유도(이행 중)
- 대학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도록 추진함(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이 학생을 보다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도입한 입학사정관제와 함께 운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이 아닌 수시모집을 통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집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부가 감사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했다고 밝힌 사항들인 학생부 기재방법의 개선 및 학생부 운영에 관한 관련 포럼의 개최는 국감에서 지적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들을 실효적인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 고교에서 작성하는 학생부는 기입 내용의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주요한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대입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른바 계층 사다리 효과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시정방안이 요구된 것임

□ 대학이 시행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시행했다고 밝힌 대학 컨설팅·공동연구의 지원 등도 실질적인 방안이 되기는 어려우며, 수시모집시 입학사정관에 의한 입시부정의 사례가 일부 나타났지만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없음

3. 개선방안

□ 새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입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현행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과 학생부 중심의 수시모집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단기/중장기로 나누어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상세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입전형의 합리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학생부 종합전형이 문제시되는 이유 중에는 대입전형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다기한 점도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선을 통하여 대입전형 방법의 숫자를 크게 줄이거나 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정환규	02) 788-4701
관련 부처	교육부	대학정책실	대입제도과	-	044) 203-6368

■ 대학구조개혁평가 사업의 재검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에 대하여 대학구조개혁평가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의 설정과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교육부	정원 감축 목표인원의 추산이 미흡하고 보다 정교한 산출이 필요함 대학구조개혁이 정원감축에 매몰되어 고등교육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지 못함 과거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것은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반증이 아닌지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등급별 감축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개혁 원칙을 새롭게 모색할 것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교육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대학을 신속하게 퇴출하여 소모적 경쟁이 아닌 전체 대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정원감축만 아니라 대학 퇴출 로드맵 등의 수립이 필요하고, 퇴출 대상 대학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공영제 사립대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재정지원사업 평가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평가 목적, 취지, 지표 등이 상이하므로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종합적, 균형적으로 1주기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향후 2주기 기본계획에 고등교육의 개선방향을 반영함

○ 1주기 평가 하위 대학이 컨설팅 이후에도 자구 노력 및 개선 성과가 미흡한 경우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하고,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2018년도에는 재정지원 제한을 보다 강화하고, 통폐합·퇴출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대학구조개혁평가 사업의 문제점**

- 2013년, 학령인구 추이, 대학 진학률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입학 가능 인원 추산했으며(이행), 향후 업데이트된 통계 및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입학자원 추이를 새롭게 추산하겠음(이행 중)
- 재정지원사업 평가와 1주기대학구조개혁평가는 평가 목적, 취지, 지표 등이 상이하므로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향후 2주기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평가 결과가 미흡한 대학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제한하겠음(이행 중)

❖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 중 하위 등급(D,E)에 선정된 대학 비중('15년 기준)
- (ACE 사업) '10년 이후 선정된 대학 총 42개교 중 1개교(2.4%)
- (CK 사업) 107개교 341개 사업단 중에서 11개교 18개 사업단(5.3%)
- (LINC사업) 전체 87개교 중 4개교(4.6%)

- 대학의 미래 경쟁력 제고, 지역 균형발전, 학령인구 감소 등을 종합적,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1주기 구조개혁 추진(이행)

– 2주기 기본계획에 (1) 대학특성화, 학사구조 개편 등 대학의 자율적 개선·발전방안을 반영하며, (2) 지역대학·전문대학의 자생력 확보방안도 반영할 예정(이행 중)

■ **대학의 질적 발전을 위한 대학구조개혁 모색**

– 대학의 미래 경쟁력 제고, 지역 균형발전, 학령인구 감소 등을 종합적,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1주기 구조개혁 추진(이행 중)

– 2주기 기본계획에 대학 자율성 확대,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지역과 대학 간 상생, 지역 기여도 및 운영 건실성을 고려한 한계대학 퇴출 등 구조개혁 원칙을 수립하고 반영할 계획임(이행 중)

■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대안 사례**

– 1주기 평가 하위 대학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과제 이행 노력 및 성과가 미흡한 경우 재정지원 전면제한 등 조치 강화(이행)

–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18년 재정지원제한 강화, 통폐합·퇴출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2주기 기본계획에서 1~2주기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 등을 '한계대학'으로 선별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임(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정부와 대학, 시민사회 사이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에 대하여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와 합의과정이 없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만을 명시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 사업은 관련 입법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국정감사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교육부는 여전히 기존 사업의 세부 항목의 추진 상태에만 집착하는 등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결여하고 있음

□ 새 정부는 기존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하고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는 정부가 내놓을 새 정책에 대하여 대학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한국 대학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심도있는 심의를 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정환규	02) 788-4701
관련 부처	교육부	대학정책실	대학평가과	–	044) 203-6804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에 대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교육부	중도포기 유학생 과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교육부	외국인 학생 외에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하며, 대학이 단순히 유학생을 받아 등록금 수익에만 치중하게 둘 것이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둘 것
교육부	우수한 외국인 유치를 확대한다면서 외국인 학생의 불법체류율 요건을 완화해주고,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지표를 오히려 삭제한 것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현황을 점검함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중도탈락률이 높은 대학 방문·지도(2016.12., 2곳)

○ 국제장학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 GKS)을 통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함

- 2017년 정부초청 학부·전문학사 과정 장학생 선발(2017.1., 119명)

○ 2016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를 실시함(2016.9~12월, 대학평가과)

- 대학의 유학생 생활적응 및 학습 지원, 교육성과, 학사관리 현황 등 종합 점검

○ 정책의 일관성, 현장의 정책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인증주기에 해당 내용을 검토함

- 1주기: 유학생 인증제(2013~2016년)

- 2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2016~2019년)

□ 교육부는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외국인 유학생 표준업무처리요령(교육부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2017.2.)

-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대학의 지원사항 추가

○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높은 대학에 대한 점검·지도를 실시할 예정임(2017년 상반기)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할 예정임

-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2급 입학자에 대한 한국어 연수 필수 이수시간 확대

※ 외국인 유학생 표준업무처리요령 개정(2017.2.)

○ 국제장학프로그램(GKS)을 통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예정임

- 정부초청 학위과정 장학생 지원인원 확대(2016년 3,150명 → 2017년 3,330명 예정)

※ 2017년 정부초청 대학원 장학생 선발(2017.6월, 580명)

- 우수 외국인 대학생의 국내 대학 유학 유도를 위한 초청연수 대상국가 확대

※ (2016년) 동남아시아 10개국 120명 → (2017년) 동남아 10개국 120명 및 아프리카·중남미 학생 80명

- 선진국 우수 대학생 국내 대학(학사·석사) 교환과정 신설(2017년 100명)

○ 제2주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임

- 2016년 인증대학 발표(2017.2.)
- 인증대학 관리실태 모니터링(2017년 상반기)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대한 대책 수행 여부**
- 중도탈락 유학생 대책 마련 및 시행(이행)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대안 이행 중)
-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확대(부분 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중도탈락 유학생 대책 마련 및 시행과 관련하여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높은 대학에 대한 점검·지도를 실시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얼마나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유학생 실태 방문 조사 및 컨설팅을 해주고, 일정 기간 후에도 개선이 안되거나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 행·재정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2016년의 경우 방문·지도한 곳이 2곳이고, 점검·지도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됨. 방문·지도 및 점검·지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는 대학에 대한 추가적 대책이 미흡함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 관련하여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지속 실시하고 있고, 국제장학프로그램을 통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 연수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현재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방안의 효과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움

○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 확대 관련하여 국제장학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국가는 일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나 전체 유학생의 다양성이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제시되지 않음

- 그리고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지표(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중 하위 지표) 복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거나 추진계획을 제시하지 않음
-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3주기(2020년~)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지표를 다시 추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2주기(2016~2019년)에도 실시하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유지연	02) 788-4706
관련 부처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044) 203-6784
		대학정책실	대학평가과	-	044) 203-6804

초·중·고교 창업교육 활성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에 대하여 창업교육 활성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교육부	초·중·고교 기업가정신 교육을 필수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교육부	진로전담교사 등에게 창업 관련 연구 및 정보제공을 통해 취업 뿐 아니라 창업 진로 상담도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업가 체험 프로그램(수업내 연계활동 및 자율동아리활동)을 통해 창업 및 기업가정신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창업동아리를 운영('16년 중고교 580개교, 64,061명 참여)하거나 창업 관련 자율동아리를 대상으로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16.9~'17.1, 우수동아리 10개팀 시상)함

○ 2016 동계 충남권 청소년 창업교육 전문가 연수('16.12.16~12.17, 단국대 천안캠퍼스, 29명 수료), 2016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중등학교 담당교사 연수등 중등교원 대상 창업교육교사 연수('16.4.28, 서울 JW메리어트호텔, 330명 참여)를 실시함

○ 향후 권역별 LINC 대학과 연계하여 초중등교원 대상 기업가정신 연수 확대, 소규모 지역별, 온오프라인 연계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담당교사 연수 확대 및 원격 진로 멘토링 수업 프로그램과 연계 및 창업경진대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임

○ 중등 진로전담교사 동계 연수에 '창업과 진로'를 편성하여 추진 중이며, 2017 학교진로교육 추진계획(안)에 창업 등 관련 진로동아리 기반 학생 진로설계 가이드북 개발 및 보급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초·중·고교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필수적으로 확대시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여부**
  - 중등교원 대상 창업교육 교사 연수(이행 중)
  - 중고교 학생 대상 수업내 연계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창업교육 실시(대안이행 중)
- **진로전담교사 등에 대한 창업 관련 연수 및 정보제공, 내실있는 창업진로상담 기반 마련 여부**
  - 중등 진로전담교사 동계연수에 '창업과 진로'편성(이행 중)
  - 창업 등 진로동아리 편성 운영을 위한 진로지도 가이드북 개발보급 계획(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중고교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내 연계활동이나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한 청소년 기업가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초중고교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필수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됨

- 창업동아리 운영이나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은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교육이라기 보다 자율적이거나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므로, 기업가정신교육에 흥미를 갖게 할 수는 있으나, 안정적 확대 시행으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감에서의 지적사항은 기업가정신교육의 필수 확대시행 방안이므로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는 대안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 교육 방법의 적정성 및 효과성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 이행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봄

○ 중등 진로교사에 대한 동계연수 과목에 창업과 진로를 포함하고, 창업 등 진로동아리에 대한 진로지도 가이드북을 개발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동아리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지도 가이드북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진로전담교사가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업관련 내용이 포함된 진로지도 가이드북을 마련하거나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정태희	02) 788-4703
관련 부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	044) 203-6222

특수교육대상자 건강검진 기준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에 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검진 기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 건강검진 및 조기 개입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 특수교육대상자 부모의 정신사회적 건강 향상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 건강검진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일반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 간 건강검진 기준의 차이는 없으나,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일반학생과 달리 별도의 치료지원과 부모 상담을 포함한 장애학생 관련 서비스지원을 제공 중임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과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함('14년 40,401명, 46,132백만원 ⇒ '15년 41,092명, 46,694백만원 ⇒ '16년 41,993명, 53,578백만원)
- 장애학생 부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14년 560백만원 ⇒ '15년 640백만원 ⇒ '16년 656백만원)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별도 건강검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별도의 치료지원 및 부모 상담 지원(대안 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학교건강검진 기준을 마련한 것은 아니나, 별도의 치료 지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는 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라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2017년 12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에 따라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등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 설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검진이 시행될 예정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해 건강 파악 및 각 증상의 조기개입을 통한 질환 예방 등의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 시행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학교건강검진 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재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봄

○ 예산 및 지원대상이 매년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7.12.30.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 소관)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정태희	02) 788-4703
관련 부처	교육부	학교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	-	044) 201-6988 044) 203-6561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인력 처우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에 대하여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인력 처우 개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정책이 예산대책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어 전담사의 여건 하락 및 돌봄교실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교육부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에 따른 예산확보 및 돌봄전담사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
교육부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의 처우와 관련하여 근무시간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 여부를 기준으로 무기계약 전환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교육부	초단시간 돌봄전담사의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기존 초단시간 돌봄전담사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및 근무시간 확대를 검토할 것
교육부	돌봄전담인력에 대한 탈법적인 근로계약, 무료노동, 행정업무 필요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문제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교육부	교육부는 돌봄교실 위탁운영을 오히려 장려하고 있어 위탁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위탁운영 문제점을 점검, 분석하고 충남교육청 사례와 같이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
교육부	돌봄전담사는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에 중요한 전문 인력인데 시도마다 제각각인 처우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돌봄전담인력의 처우기준을 상향평준화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초등돌봄교실 재정지원을 기준재정수요액에 교실당 운영비 기준단가를 '16년 대비 증액 반영('16년 약 30백만원 ⇒ '17년 약40백만원)을 통해 확대함

○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위하여 「초·중등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계류 중)을 제출함

– 향후 초등돌봄교실 예산 편성률 제고를 위해 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 '17년 시도별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등에 관한 계획 수립('17.1월)을 통해 전담사의 고용 안정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향후 시도교육청과 지속 협력하겠음.

– 다만, 초등돌봄교실은 '04년 시범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시도교육청 소속 돌봄전담사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초등돌봄교실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법적 근거 마련 여부**
– 초등돌봄교실 재정지원 기준재정수요액 운영비 기준단가 증액 반영(이행 중)
– 초등돌봄교실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초·중등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제출(이행 중)

■ **돌봄전담사 고용안정대책 및 처우기준 상향평준화 개선대책마련 여부**
– '17년 시도별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안내(대안이행 중)
– 시·도교육청과의 지속 협력(대안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예산 일부를 증액 반영하고 초등돌봄교

실을 포함한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안[3])을 제출한 바 있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노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각 시·도별로 돌봄전담인력 관련 업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교육부의 돌봄전담인력 처우 개선 대책 수립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지역에 대한 주기적 현황 파악 및 협력을 통해 기본적인 정책 기준 수립 및 상향평준화를 위한 개선 권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봄

– 교육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시도별 돌봄전담사는 총 10,429명으로 '16년 대비 33명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위탁운영 비율은 광주교육청의 위탁 돌봄전담사 134명 직고용 전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돌봄전담사 현황▐

구 분	무기직[4])	기간제	위 탁	계	비 고 (초단시간)
2016년	7,049	2,544	803	10,396	2,456
	(67.8%)	(24.5%)	(7.7%)	(100%)	(23.6%)
2017년	7,075	2,674	680	10,429	2,500
	(67.8%)	(25.6%)	(6.5%)	(100%)	(24.0%)
증감	+26	+130	–123	+33	+44

–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16년 2,456명에서 '17년 2,500명으로 증가하여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를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한 지역도 있으나 전환 없이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지역도 있는 바, 각 지역별로 국정감사 시정요구 취지에 따른 처우 개선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임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현황▐

구분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16년	7	8	26	91	1,022	316	183	482	229	92	2,456
2017년	5	9	0	119	1,063	314	160	484	253	93	2,500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3627, '16.11.16 정부 제출, 상임위 계류 중)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의 시간 또는 학교의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하며, 교육감이 매년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4) 서울, 대구, 강원, 충북, 울산 등 5개 시도는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음.

○ 교육부와 함께 실제 돌봄전담인력 운영주체인 각 시·도교육청에 대한 돌봄전담인력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독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정태희	02) 788-4703
관련 부처	교육부	학교정책실	방과후학교지원과	-	044) 203-6370

■ 평생교육 강화 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에 대하여 평생교육 강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교육부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국가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대학을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교육방송과 방송통신대학교 등 인프라를 평생교육에 적극 활용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17년 평생교육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함

-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예산 ('16년)401.05억원 → ('17년)504.33억원(103.28억원 증액)

○ 향후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제4차 평생교육 진흥기본계획('18~'22) 수립을 추진할 예정임(2017년 하반기~)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국가투자 확대 여부**
  -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예산 확대 편성 (이행 중)
- **지역대학의 평생학습센터 전환 방안 모색 여부**
  - 제4차 평생교육 진흥기본계획 수립 예정 (계획 수립 중)
- **교육방송과 방송통신대학교 등 인프라의 평생교육에 활용 여부**
  - 제4차 평생교육 진흥기본계획 수립 예정 (계획 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국가투자 확대 요구에 대해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예산을 증액 편성(401억원 → 504억원, 103억원 증액)하고 있어 국가투자의 확대를 통한 사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2017년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사업 세부내역

(백만원)

사업명	'16예산	'17예산	증 감	비 고
평생직업교육 제체 구축	**40,105**	**50,433**	**10,328**	
평생학습 기반구축	2,281	2,422	141	
평생학습진흥 지원	1,339	1,141	△198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942	1,281	339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22,284	29,125	6,841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18,425	25,359	6,934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3,859	3,766	△9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10,001	14,407	4,406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5,539	4,479	△1,060	

– '17년 예산에서 방송대 중심의 원격고등 평생학습 체제 구축, 대학의 평생교육 체

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69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으로 44억 6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업효과를 계속 점검해야 할 것으로 봄

○ 지역대학의 평생학습센터 전환 방안 및 교육방송 등의 인프라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추진예정인 제4차 평생교육 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국감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정태희	02) 788-4703
관련 부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44) 203-6869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을 교사, 학부모, 법조인, 경찰 등 동등한 비율로 구성해 객관성을 높일 것을 요구함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과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 확대를 요청함

–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통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 확대 강화를 요청함(학교생활문화과-1008:2016.3.8.) '성폭력 예방교육 철저 및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 협조')

○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 비율을 평가지표에 포함하도록 함

–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외부전문가 15% 이상 위촉학교 수"를 평가지표로 설정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 확대 요청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 확대 강화를 요청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촉 확대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송부함(이행)

■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외부 전문가 15% 이상 위촉학교 수'를 평가지표로 설정함**

–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외부 전문가 15% 이상 위촉학교 수'를 포함하여 2016년도 시·도교육청의 운영과 성과를 평가함(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송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를 요청하였고, 2016년도 시·도교육청의 평가지표에 '외부 전문가 15% 이상 위촉학교 수'를 포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외부위원의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교육부의 2016년도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외부위원의 비율이 15.5%임

구 분	학부모 위원	교직원 위원	외부 위원
전체위원 대비비율	57.0%	27.5%	15.5%

- 따라서, 시·도교육청 간에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외부위원의 비율이 15.5%로, 대부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외부위원의 비율을 15%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 전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외부위원 비율이 15%인 점을 고려하면, 시·도교육청의 외부 전문가 15% 이상 위촉 학교의 수를 평가한 부분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의 확대를 위한 조치로는 부족한 점이 있음

○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조인식	02) 788-4705
관련 부처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생활문화과	-	044) 203-6539

■ 학교폭력 사안 재심 관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대하여 학교폭력 사안의 재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시·도교육청에서 피해자 심의는 시·도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재심기능을 교육청으로 이관하거나 강화하도록 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과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적용(2016.9.1)을 통한 사안처리 공정성·객관성 강화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관련 업무담당자 협의회 실시

– 학교생활문화과–4136(2016.10.1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관련 업무담당자 협의회 실시" 공문

○ 재심관련 시·도 및 시·도교육청 간 연계협력 강화 요청

– 학교생활문화과–4223('16.10.20), "학교폭력 신고, 대응요령 안내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침 준수 요청" 공문

○ 학교폭력 신고, 대응요령 안내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침 준수 요청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적용(2016.9.1)을 통한 사안처리 공정성·객관성 강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 기준에 대한 고시를 마련하고 적용하여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강화를 추진함(이행)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관련 업무담당자 협의회 실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 관련 업무담당자의 협의회 실시를 통하여 학교폭력 사안의 재심처리에 공정성 제고를 도모함(이행)

■ **재심관련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연계협력 강화 요청**

– 학교폭력 신고 및 대응요령 안내와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침의 준수를 요청하여 학교폭력 사안 재심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시행함(이행)

■ **학교폭력 신고, 대응요령 안내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침 준수 요청**

–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치를 취함(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교육부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고시하고 적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 재심 관련 업무 담당자 협의회 실시, 재심 관련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을 요청하여 학교폭력 재심기능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학교폭력 사안 재심의 이원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심기능의 일원화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재심기능을 이관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현재 학교폭력 사안 재심의 일원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조인식	02) 788-4705
관련 부처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생활문화과	-	044) 203-6539

■ SW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대하여 SW교육을 위한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노후 PC, 컴퓨터실, SW교육이 가능한 교사 부족, 지역별 격차 등 SW교육 인프라 문제의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SW교육 인프라 개선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과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SW교육 필수화의 인적·물적 기반 마련을 위한 'SW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016.12.2. 사회관계장관회의)

○ 컴퓨터실 등 SW교육 인프라 확충

- 시·도별 SW교육 물적 인프라 현황 및 확보계획 수립·조사(2016.11.4.)
- 컴퓨터실, 노후PC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2016.12. ~ 2017.1.)

○ SW교육을 위한 교원 확충 및 연수

- 연도별 중학교 정보·컴퓨터 교원 확보 계획 마련(2016.12.)
- 연도별 교원연수 계획 수립(2016.12)과 2016년 19,000여명 연수 실시

□ SW교육 인프라 개선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의 향후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음

○ 교육정보화 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미흡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점검 실시(2017.4)

○ 초·중등 교원 대상 SW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2017년 연중)

○ 2017년 중등 정보·컴퓨터 교원 신규채용 및 복수전공연수 추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016년 12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SW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 SW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SW교육의 실시를 위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이행 중)

■ **컴퓨터실 등 SW교육 인프라 확충**

- SW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SW교육 인프라 현황 및 확보계획 수립 및 조사를 실시하였고(2016.11), 컴퓨터실, 노후PC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함(2016.12.~2017.1.)(이행)

■ **SW교육을 위한 교원 확충 및 연수**

- 연도별 중학교 정보·컴퓨터 교원 확보 계획을 마련하였고(2016.12), 연도별 교원연수 계획에 따라서 2016년 19,000여명에게 연수를 실시함(이행)

■ **교육정보화 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미흡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점검 실시**
- 2016년 11월 기준으로 컴퓨터실 미확보 172개교 중에서 69개교는 2020년까지 연도별로 컴퓨터실을 설치하고, 소규모 학교 등 103개교는 특별실 등의 대체 시설에서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여 SW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이행 중)

■ **초·중등 교원 대상 SW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중·장기 교원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SW교육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 SW교육을 위한 인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이행 중)

■ **2017년 중등 정보·컴퓨터 교원 신규채용 및 복수전공연수 추진**
- 중학교 '정보'과목 필수화되어 신규채용과 복수전공연수 등을 통하여 2020년도 까지 정보·컴퓨터 교원을 600명 이상 확보할 예정임(이행 중)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2017년도에 200명의 중등 정보·컴퓨터 교원을 확보할 예정이고, 개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서 시·도별 신규채용, 자격연수, 교원배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임(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교육부는 학교의 SW교육 여건을 조사하고, SW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원을 대상으로 SW교육 관련 연수를 강화하는 등 SW교육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SW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의 확대와 함께 학교에서 필요한 적정수준의 SW교육을 위한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SW교육에 배정된 시수가 다른 과목과 비교하여 부족하기 때문에 원활한 SW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논의가 있으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내실있는 SW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	조인식	02) 788-4705
관련 부처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과	-	044) 203-6433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관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대하여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현행 교육비 지원 내용에 교복비 지원을 추가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과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상 시·도교육청의 재량적 예산사업으로 교육청별 상황에 따라 지원 항목 차이 존재

- 2016년 현재 서울, 울산, 세종, 충북, 전북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함
- 경기도 성남시와 충남 예산군 등 시·군·구에서 자체 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 교복비 지원 중
- 교육비 지원 항목에 교복비 포함 가능 여부를 교육청과 협의 필요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016년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5개 시·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상 시·도교육청의 재량적 예산사업으로 교육청별 상황에 따라 지원 항목 차이 존재**

- 교육부는 2017년 6월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공문을 송부하여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관련 협조를 요청함(이행)
- 교육부는 향후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와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관련 협조를 요청할 예정임(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사업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의 제60조의4제1항[5]에 근거한 시·도교육청의 재량적 예산사업으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

○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5개 시·도교육청이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시·도교육청 간에 저소득층 학생에 교복비 지원이 상이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저소득층 학생의 교복비 지원에 편차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이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조인식	02) 788-4705
관련 부처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과	-	044) 203-6526

5)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자리 관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대하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상승한다고 홍보하기보다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과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고졸 취업문화 확산 노력

-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학생, 교사, 일반 등 총 23명에게 우수 고졸취업 성공 사례자로 시상
- 중학교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대상 고졸취업 인식개선 토크콘서트를 경북, 경기, 대전, 서울, 강원, 충북 등 6개 지역에서 개최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 지원

-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확대(공공기관 인력운영 계획에서 고졸채용 권고 비율 20%),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 채용콘서트를 광주, 전주, 대구, 부산 등에서 공동 개최
- 민간기업의 고졸채용 확대를 위하여 대한민국 고졸인재 잡콘서트,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 등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채용과 연계,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경제단체 등과 기업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고졸 취업문화 확산 노력 여부**
- 고졸취업 성공수기 개최와 중학교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대상 고졸취업 인식개선 토크콘서트 개최(이행)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취업 지원 여부**
-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확대를 위하여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의 강화(이행)
- 민간기업의 고졸채용 확대를 위하여 취업박람회와 관련 행사 개최 및 관계 부처 담당자가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교육부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고졸취업 성공수기 및 토크콘서트 개최와 관계부처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 강화는 고졸취업 문화의 확산과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인식의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하지만, 교육부의 고졸취업 문화 확산 관련 행사는 사회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자도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과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지원을 확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조인식	02) 788-4705
관련 부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직업교육정책과	-	044) 203-6374

문화체육관광부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영화 상영관 광고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 대책 수립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하여 영화 시작 시간을 넘기면서 상영되는 광고의 소비자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시작 시간을 넘기면서 상영되는 광고의 소비자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멀티플렉스사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영화상영관 연석회의를 2017년 1월 개최하여 영화산업 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과 영화관 관객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하여 협조를 요청함

○ 2017년부터 영화상영관 연석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영화관 광고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

○ 영화 상영시간 내 광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4건의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

○ 영화관의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영화상영관 품질인증제'를 시범 실시 중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영화관 관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여부**
- 영화상영관 연석회의 개최(대안 이행 중)

■ **영화관 광고 개선 대책 마련 여부**
- 영화 상영시간 내 광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4건의 법안 관련 논의(이행 중)

■ **영화상영관 품질인증제 시범 실시 여부**(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공지한 상영시간에 본 영화를 상영하지 아니하고 광고나 예고편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정시에 상영관에 입장하여 원치 않게 광고를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는 관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영화관 관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를 구한 것은 직접적으로 대책 수립이라는 결과물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대안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영화 상영시간 내 영화광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국회에서 4건이 발의되었는데[1], 이 조치는 행정부 제출 법률안이 아니고 의원 발의 법률안이지만, 영화상영관 연석회의에서 관련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시정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 주승룡 의원 대표발의 (2016.6.22.),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2016.7.8.), 안철수 의원, 도종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 (2016.10.31.)

3. 개선방안

□ 영화 상영 전 광고 상영과 관련하여 발의된 4건의 개정(안)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영화 상영시간 동안 광고 및 예고편 상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임

○ 영화상영업계는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TV 등 다른 매체에서도 시작 타이틀 고지 후 편성표상 시작 시간 이후까지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극장의 스크린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는 입장임

- 또한 영화상영업의 주 수익원이라 할 수 있는 광고수익이 감소하면 영화 입장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관객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규제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2015년 2월 시민단체는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상영시간 내 무단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2015년 10월 CGV의 무단광고 상영에 대해 소비자 26명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있었음

- 2016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멀티플렉스 3사의 무단광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심사를 종료하였으며, 2016년 7월 CGV 무단광고 상영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였고 동년 12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바 있음

□ 영화 관람의 경우에는 대다수 관객이 착석하고 관람 준비를 하는 동안 광고와 예고편, 대피 안내 영상물 등을 상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조건적으로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관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는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화관람권에 입장가능시간, 본영화 상영시작 시간과 종료시간 등으로 세분화하여 표시하고, 표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객의 불편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김휘정	02) 788-4704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영상콘텐츠산업과	-	044) 203-243

예술 지원 심의의 공정성 확보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하여 문화예술 지원 심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논란 등 문화예술 지원심의 관련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을 2016년 12월 마련하여 추진함

○ 기금사업의 심의위원 풀 구성에 있어서 민간 협회 및 단체의 추천을 받고,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무작위 추첨방식을 도입하고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할 예정임

○ 정량지표를 도입하고 현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원 심의·평가 방식의 객관화를 도모함

○ 2017년 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의 심의 시 개선안을 적용·추진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수행 여부**
-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과정의 개선안 마련·추진(이행)
- 심사위원 풀 민간 협·단체 추천(이행)
- 심의위원 구성 무작위 추첨방식 도입(이행)
- 심사결과 전면 공개(계획 수립 중)
- 심의·평가 시 정량 지표 도입(이행)
- 심의·평가 시 현장 모니터링 강화(이행)

■ **2017년 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심의 시 개선안의 적용 및 추진 여부(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단체로부터 공개 추천을 받은 적격 인사를 포함하여 심의위원 후보군을 구성하는 심의위원 후보자 공개추천제와, 5배수의 인원을 감사부 입회 하에 무작위로 추출하는 심의위원 추첨제를 도입한 것은 블랙리스트 파동으로 저하된 지원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2017년 1월에 행해진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시공모사업 심의 시 이와 같은 개선안이 적용되어 추진됨으로써 심의과정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지원사업 심사결과의 전면 공개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차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심의 시 기존의 책임심의위원제도보다 예술계 현장으로부터 공개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 후보군을 구성하는 개선안이 민주적이기는 하지만, 랜덤추첨방식에 의해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심의위원 후보군을 기계적으로 선정하고 운영할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야의 위원이 위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심의위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심의의원 구성 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정, 안배를 통해 사업을 이해하는 균형감 있는 심의위원의 구성이 필요함

○ 각 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가 가능한 심의위원 후보단 확보 등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심의에 적합한 심의위원 후보군을 구성하기 위하여 예술현장 관계자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기구 설치도 심의의 적확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연간 심의위원 위촉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심의위원의 권력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한편, 다년사업 등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심의위원을 유지하여 사업 평가가 일관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설계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김휘정	02) 788-4704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	044) 203-2714

■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작성의 장려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하여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관련, 임금 등 미지급 사건의 절반이 넘는 151건, 57.9%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복지재단 등에서 계약서 작성을 장려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6년 5월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을 개정·시행하였음

○ 표준계약서 체결 시 사회보험료 지원(2016년 418명), '예술, 계약과 친해지기' 안내책자 발간, 예술인 대상 계약 및 저작권 교육(2016년 35회, 2,256명)을 실시하였음

○ 향후 예술인 대상 계약 및 저작권 교육 강화, 서면계약 의무화 홍보를 통해 계약서 작성 문화 정착을 추진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시행 여부(이행)**
- **표준계약서 체결 시 인센티브 제공 여부**
  - 표준계약서 체결 시 사회보험료 지원(이행)
  - 예술인 대상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이행)
- **예술인 대상 서면계약 의무화 홍보를 통해 계약서 작성 문화 정착 추진 여부(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문화예술분야 계약 당사자 간의 서면계약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한 것은, 현장에서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시정하는 직접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조치가 정

책사업을 통하여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예술인을 대상으로 서면계약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계약서 작성 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현 상황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3. 개선방안

□ 예술상품의 생산자 또는 예술 용역의 제공자로서의 예술인과 예술상품의 유통자 또는 제작자, 기획자 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권력관계가 예술인에 대한 수익 배분이 지연·제한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인 바, 계약서 작성이 당연한 문화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공정한 계약내용에 대한 강요뿐만 아니라 문서화된 계약서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또한 현행 「예술인복지법」이 계약 당사자 간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서면계약서 미작성 시 150만원에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임

○ 피해를 입은 예술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면계약 미작성이 적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술인신문고제도가 시행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예술인 임금 미지급액의 규모가 대체로 5백만원 미만의 소액의 규모로 나타났으나, 서면계약서 미 작성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모 역시 5백만원 미만이라는 점에서, 과태료의 액수가 미미한 측면도 있음

□ 예술인 임금 미지급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벌칙을 적용하는 방법보다 각종 공공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단체나 개인의 지원요건으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거나 지원서 검토에 있어 이 조건의 가산점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김휘정	02) 788-4704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	044) 203-2718

대기업의 영화배급업·상영업 겸업 금지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하여 대기업의 영화 수직계열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대기업이 영화 배급업과 상영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규제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대기업의 배급업 및 상영업 겸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음(안철수의원 대표발의,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2016.10.31)

○ 2017년부터 발의 법안에 대하여 국회, 관계부처, 유관단체, 업계와의 협의를 계속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대기업의 영화 배급업·상영업 겸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 조치 수행 여부**
  - 안철수 의원의 영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행 중)
  - 도종환 의원의 영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행 중)
- **발의 법안에 대한 국회·관계 부처·유관단체·업계와의 협의 지속 여부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대기업의 영화 배급업·상영업 겸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 조치는 행정부 제출 법률안이 아니고 의원 발의 법률안이지만, 영화제작자협회 등 60여개 이상의 협·단체, 영화업계 등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국회와 관계 부처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3. 개선방안

□ 2016년 10월 도종환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멀티플렉스에서의 특정 영화 상영 비율제가 포함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은 영화배급업과 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복합상영관의 영화상영업자는 동일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상영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민간 상업시설인 극장에서 상업적 판단을 근거로 스크린을 배정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영화 생태계의 다양성과 창의성 확보를 위해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일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되어 왔음

○ 그러나 주요 복합상영관 운영사업자는 영화배급업과 분리된 계열회사로 상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개정(안)의 '대기업'은 '기업집단'이 아닌 '기업'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 조항이 현재의 독과점적 시장 구조 개선에 큰 효과가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의견이 있음

○ 또한 시장점유율 기준 국내 3-5위 배급사는 대형 외국계회사의 현지법인으로 이들은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국내 기업만 역차별을 당하고 외국계 배급사의 독점적 지위 상승이 우려된다는 기획재정부의 검토의견도 있음

□ 영화 생태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기업 영화 수직계열화를 금지하는 입법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멀티플렉스에서의 특정영화 상영비율 상한제와 같은 가장 강력한 수위의 규제 뿐 아니라, 반대로 독립영화·예술영화·저예산영화 등에

대해 일정 비율 상영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나 독립영화상영관을 지원·육성하는 다른 정책 수단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복합상영관의 배급사 차별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이미 존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처벌 사례도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김휘정	02) 788-4704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	044) 203-2432

■ 문화콘텐츠 유통 불공정 문제의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하여 문화콘텐츠 유통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 유통 불공정 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구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6년 7월 콘텐츠의 원천 소재인 이야기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이야기 유통 플랫폼 '스토리움'을 구축함

○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임

– 2016년에 4,199건의 분쟁 조정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969건에 대하여 조정전 합의 및 조정을 성사시켰음

○ 창작자 중심의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영화(시나리오, 근로, 투자 등 3종, 2013년~2015년) 및 만화(2015년)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음

○ 2017년부터 이야기 유통 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임

○ 2017년 말까지 콘텐츠분쟁조정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문화콘텐츠 유통 불공정 문제의 개선을 위한 조치 수행 여부**
  - 이야기 유통 플랫폼'스토리움'의 구축 (이행)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이행)
  - 영화 3종 및 만화 표준계약서의 제정 (이행)
- **이야기 유통 플랫폼의 운영 활성화 여부 (계획 수립 중)**
- **콘텐츠분쟁조정 기능 강화 방안 마련 여부 (계획 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이야기 유통 플랫폼은 별도의 네트워크 없이도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지닌 창작자가 스토리를 올리면 콘텐츠 제작자가 매칭되어 스토리를 거래할 수 있는 오픈 마켓으로, 공정한 계약조건으로 이야기를 사업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네트워크와 기기의 발달과 함께 콘텐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의 참여주체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영화 표준계약서(근로, 투자, 상영, 시나리오 등) 및 만화 표준계약서(출판, 전자책 출판, 웹툰연재, 저작재산권위임, 공동저작, 홍보만화 등 6종)의 제정은 건전한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이야기 유통 플랫폼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여부는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으로 '스토리움'의 구축 및 운영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3. 개선방안

□ 스토리 창작자의 가입(1,540명)에 비하여 이야기 유통 플랫폼의 수요자인 스토리 이용자의 가입(363명)이 아직 저조한 바, 스토리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다방면의 홍보방안이 필요함

□ 오픈마켓인 유통 플랫폼에 스토리를 올려놓는 창작자가 아이디어의 도용이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스토리의 콘텐츠화 제작 등 원활한 유통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스토리에 대한 중첩적인 보호 조치(휴대폰 인증, 전용뷰어 설치 등) 뿐 아니라, 사업화가 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토리를 거래할 때 비밀 유지나 저작권 이용 허락을 위하여 이야기산업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접수 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분쟁 조정 신청의 내용 중 콘텐츠산업자 간(B2B) 관련 분쟁은 소수이고, 콘텐츠산업자와 이용자 간(B2C)가 대부분을 차지(94.3%)함으로써 분쟁 조정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조정 제도 외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소송 가액이 큰 B2B 분쟁에 적용하기에 '조정' 제도는 조정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영업 비밀이 상호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이 조정 종료 후 불복할 경우 차후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소송과 마찬가지로 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가 승복할 수밖에 없는 '중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김휘정	02) 788-4704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대중문화산업과	-	044) 203-2463

■ 스포츠 불공정행위 사전 예방대책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하여 스포츠 비리 등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조치사항	〈스포츠 분쟁 조정〉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 강화를 통해 스포츠 중재 제도 도입 발표('16.6)
향후 추진계획	〈스포츠 분쟁 조정〉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등과 지속 협의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 강화를 통한 스포츠 중재 제도 도입**
– 법무부 등과의 지속 협의를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활성화 (시정 및 처리 요구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국정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은 스포츠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불공정 행위[2]로 인한 분쟁 발생 시의 해결방안 중 하나를 조치사항으로 제시함

– 선수 (성)폭력 문제, 체육특기자 문제,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문제 등의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건별로 개별적 조치사항들은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 건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아우르는 전체 스포츠 불공정 행위 근절방안에 대한 조치 및 중장기적인 계획이 제시되었어야 할 것임

○ 한편 스포츠 불공정 행위들로 인해 야기된 분쟁 해결방법의 하나로 스포츠 중재 제도[3]를 도입하고 활성화하겠다고 하더라도,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법무부와 협의하여 활성화하겠다는 조치 및 추진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스로의 조치 사항이나 해결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스포츠 분쟁 해결을 위해 별도의 스포츠중재기구가 아닌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스포츠 중재제도를 도입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면, 스포츠중재기구의 필요성과 별도의 기구 설립의 불합리성에 대한 검토,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스포츠 분쟁 해결 가능성 검토가 조치사항으로 우선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스포츠 분쟁을 해결한다는 전제하에서도, 2006년 대한체육회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활동 실적이 미비하다는 이유(약 3년여간 중재실적이 1건에 불과)로 중단되었던 사례에 비추어 스포츠 중재 활성화 방안, 중재인단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문화체육관

2) 스포츠 불공정 행위란 선수 (성)폭력, 승부조작, 도핑, 스포츠 단체의 비리, 선수 선발과정에서의 충돌, 입시비리 등과 같이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하는 각종 비리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3) 스포츠 중재 제도란 대회의 판정시비, 도핑문제, 선수자격 문제, 스포츠 계약관계 등 스포츠계의 분쟁 발생 시 재판외의 분쟁 해결방법인 중재(Arbitration, 당사자간 합의로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얻고 분쟁 당사자가 수용함으로써 해결을 찾는 제도)를 통해 스포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제도임

광부 스스로의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었어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적·체계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관계부처와 체육단체가 협력하여 스포츠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단속강화, 처벌규정 강화,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단기간에 개선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하나 스포츠계의 불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속해서 승부조작, 입시비리 등 스포츠 관련 비리가 이슈화되고 있음

○ 테스크포스(Task Force) 형식의 비공식적이고 단기적인 조직을 통한 접근이 아닌 공식적·연속적 전담기구를 통해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함께 단기적 대안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계속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통해 스포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포츠 비리의 척결을 위한 방안 마련 및 단속 강화 등 노력의 지속과 함께 스포츠계에 만연한 승리지상주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임주현	02) 788-4707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	체육정책과	-	044) 203-3110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하여 국내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원인 파악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대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조치사항	그 동안 2차례 관광진흥확대회의('13~'14)와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15) 등을 마련하여 국내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 - 봄 가을 국내여행자 수 증가 : '15년 3,720만명 → '16년 4,849만명(30.3%) - 국내 여행 참가 횟수 : '14년 2.2억회 → '15년 2.3억회 - 국내 여행 이동총량 : '14년 397백만일 → '15년 407백만일
향후 추진계획	콘텐츠 확충, 국민 여가여건 개선, 관광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지속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여행할 수 있도록 추진 - 우수 관광 콘텐츠 및 지역축제 발굴·육성 - 국내 여행주간 운영, 국내 관광지 추천(테마여행 10선, 한국관광 100선) - 숙박·음식·안내체계 개선, 휴가문화 확산 등 해외여행 수요의 동기를 파악하여 국내여행 활성화 대책 수립·반영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원인 파악(계획수립 중)**
-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 국민들의 해외여행 선호 원인 파악을 통한 맞춤형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대책 회의 등을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 노력 계속 추진 중(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관광진흥확대회의 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축제 발굴·육성을 통한 콘텐츠 확충, 관광인프라 확충 및 개선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관광진흥확대회의 및 문화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는 2013년~2015년에 개최된 것으로 2016년 국감 이후의 조치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국감 조치사항 보고 이후 2017년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관광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책 회의 과정에서 나온 논의 중 하나일 뿐이지 국감 지적에 따른 시정 및 처리결과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위 회의에서 제시한 각종 학교의 수학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변경 시 지원, 공공·민간 부문의 각종 워크숍·행사·직원 휴가 시 국내 여행 우선 고려 협조 요청 등을 통한 공공 부문의 국내관광수요 선도적 창출 방안은 일시적인 국내 여행 수요 증가를 위한 방안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해외 여행 수요 원인 파악을 통해 이를 국내 수요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안 제시라 보기는 어려음

○ 한편 국내 여행자 수 증가, 국내 여행 참가횟수 및 국내 여행 이동총량 증가 수치를 성과로 제시하며 국내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임을 조치사항으로 제시하였으나, 같은 기간 해외 여행자 수 증가율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여행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국내 여행 인구의 증가는 전체적인 여행인구 증가추세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국내 여행 활성화 대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구 분	국민해외관광객 (증감률%)	국민국내여행총량(증감률%)		
		참가자수	참가횟수	이동총량
2014년	16,080,684명(8.3)	38,059,002명(0.7)	227,815,219회(-1.4)	398,308,414일(2.3)
2015년	19,310,430명(20.1)	38,307,303명(0.7)	238,297,311회(4.6)	406,818,700일(2.1)
2016년	22,383,190명(15.9)	39,293,235명(2.6)	241,749,955회(1.4)	412,378,155일(1.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여행 실태조사』, 2017.5.

3. 개선방안

□ 해외 여행 수요를 국내 여행으로 전환하여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해 실시하는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여행 선호 원인과 국내 여행의 한계를 분석하여 맞춤형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관광소비가 5% 증가할 때, 내수파급효과는 1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함

□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관광콘텐츠, 지역 축제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여행 후기 공유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공개적으로 지적·점검하여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여행정보 제공 및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임주현	02) 788-4707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과	-	044) 203-2810

굿스테이 등 인증 숙박시설의 사후관리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대하여 굿스테이와 같은 인증 숙박시설의 관리·감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굿스테이'의 당초 취지를 살려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함께 철저할 사후 관리를 할 것
한국관광공사	공사 운영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조치사항	굿스테이 인증제도를 개선한 '관광품질인증제' 시범운영 중('16.10~'17.3.) – 평가지표 개선, 평가결과 피드백 및 정기·수시 모니터링 강화 등
향후 추진계획	관광품질인증제 법적근거 마련 및 본격 운영('17)

□ 한국관광공사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조치사항	굿스테이 지정업소에 대한 연 2회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적 필수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조사기간 : 1차 6~7월, 2차 10~11월 – 조치결과 : 모니터링 결과 법적 필수지정기준 위반 74개 업소 지정 취소(2016년)
향후 추진계획	한국관광품질인증제 도입으로 지정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굿스테이와 같은 인증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기존 제도를 개선한 '관광품질인증제'시범 실시 중(대안이행)
- 굿스테이 지정업소에 대한 연2회 전수 모니터링 실시하여 필수 지정기준 위반업소 지정 취소(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우수 숙박시설로 인증된 '굿스테이' 업소들에 대해 연 2회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수 지정기준 위반업소들에 대해 지정취소 조치를 취한 것은 굿스테이 인증 숙박시설의 사후 관리를 요청한 국감 시정 요구 사항을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 관광품질관리의 중요성, 여러 기관의 중복·유사한 인증제도 난립[4]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관광객 혼란 및 신뢰도 저하 등에 비추어 볼 때 통합형 인증제도인 '한국관광품질인증제' 도입안은 기존 제도들 운영에 따른 미비점 개선을 위한 대안의 제시로서 그 도입 취지는 적절하다 평가됨

– 다만, 시범실시[5] 단계이기에 '한국관광품질인증제' 도입의 성과, 인증업체 선정 과정 및 운영의 타당성, 인증 이후의 철저한 사후 관리 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임

3. 개선방안

□ 한국관광품질인증제가 여러 인증제도 난립으로 인한 이용자 혼란,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관광 품질 관리를 통해 국가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인증제도

---

4) 숙박업에 대한 굿스테이, 도시민박업에 대한 코리아스테이, 한옥체험업에 대한 한옥스테이, 음식테마거리, 농가맛집, 모범음식점, 우수쇼핑점 등 30여개 기관에서 80여개의 관광관련 인증제도 운영

5) 서울, 부산, 강원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 인증을 신청한 207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2번의 현장심사를 거쳐, 일반·생활숙박업 67개소, 한옥체험업 32개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3개소와 사후면세업소 35개소 등 총 137개 업소(지역별로는 서울 71개소, 강원42개소, 부산 24개소)가 인증대상으로 선정됨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전제로 이를 개선하는 대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 관련 협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존 인증제들을 통합 인증제도로 빠르게 흡수·전환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 과정에서 통합인증제가 새로운 인증의 추가로 인식되는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국인관광객 입장에서는 인증을 부여한 국가 자체의 이미지와 품격이 저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인증 미실시보다 나쁜 결과를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임주현	02) 788-4707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관광산업과	-	044) 203-2829
	한국관광공사		관광인증팀	-	033) 738-3605

■ 국민체력100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하여 국민체력100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민체육 진흥공단	국민체력100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조치사항	직장인 30~40대 참여율 저조 및 저녁시간, 주말이용 확대 필요성 제기 → 센터운영 탄력적 조정,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필요 – 센터 운영시간 탄력적 조정(주말, 저녁시간 운영) –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시행 • 건보공단 검진안내문 등에 국민체력100 정보제공(2,750만부) • 신한은행 제휴 국민체력100 참여자 금리혜택 예금상품 출시(12월~) • 국민체력100 CF 및 바이럴 영상 제작·송출로 온/오프라인 홍보(TV광고 240회, 라디오광고 49회) 등
향후 추진계획	체력인증센터 '17년 37개소 운영(전년대비 6개소 증가)으로 체력인증 참여율 제고 – '17년 예산 80억원(전년 70억원 대비 10억원 증액) 출장전담반 찾아가는 서비스 및 센터 연중운영 확대 대국민 인지도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TV광고 및 체력왕중왕 선발대회 등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국민체력100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센터 운영시간 조정,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및 홍보 강화(이행 중)
– 운영센터 전년대비 6개소 증가(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국민체력100 사업 참여율 제고 방안으로서 센터 운영시간 조정(주말, 저녁시간 운영), 학교, 직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및 홍보 강화 등을 실시한 것은 국민체력 100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 부산 남구, 부산 북구, 경북 포항, 광주 동구, 인천, 대전, 전북 전주, 남원, 전남

목포, 제주, 세종, 서울 송파, 동작, 마포, 성동 센터에서 토요일 운영, 서울 마포, 노원, 경기 의정부, 충북 영동, 청주, 경남 창원, 세종 센터에서 일부 평일 저녁시간 운영[6)]

- 중학교,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노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지, 생활체육대회장 등 행사장을 방문하여 체력 측정 및 홍보 실시

○ 다만 평일 연장운영 및 주말 운영으로 직장인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현재와 같이 광역지자체에 1~2개 센터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원거리 거주자들의 이용에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임

○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와 홍보를 통해 현 센터의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한정된 센터 인원 및 장비 등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이용을 원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예산의 한계를 고려할 때 6개 센터를 신설한 것은 현실적인 조치로 적절하다고 평가됨

3. 개선방안

□ 전 국민이 국가가 제공하는 체육복지 서비스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센터를 확장하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 국민체력수준이 떨어지고 비만인구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초고령사회 진입, 국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악화 등 사회간접자본의 증가가 예상되어 국가에서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임주현	02) 788-4707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	체육진흥과	-	044) 203-3135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실	국민체력사업팀	-	02) 410-1432

6) 서울 금천, 서초, 부산 사상, 사하, 대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 오산, 부천, 화성, 강원 원주, 충남 천안, 전남 나주, 곡성, 순천, 경북 안동, 경남 사천에서는 주말, 저녁시간 운영 미실시로 확인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100사업 홈페이지 확인(http://nfa.kspo.or.kr/front/center/centerIntroList.do)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Ⅲ

보건복지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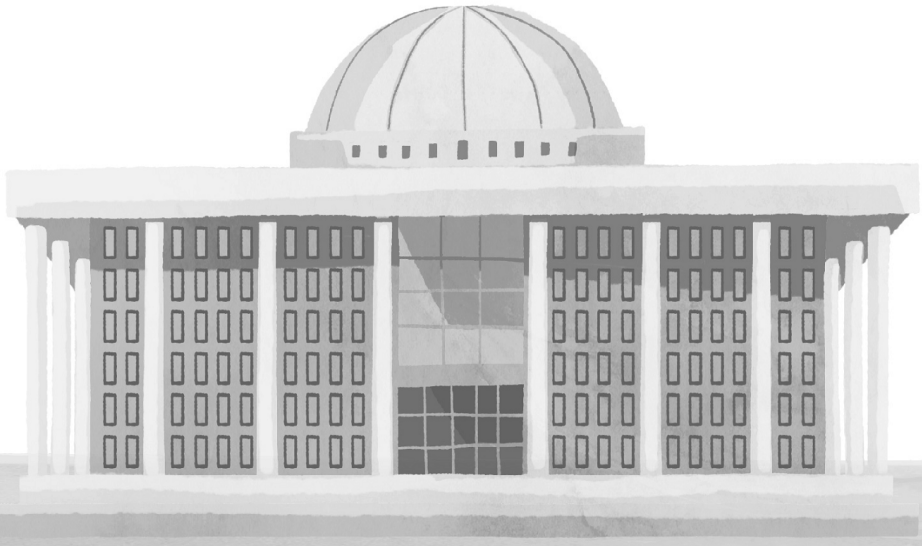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보건복지부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4대 중증질환 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1] 이외의 분야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외에도 의료비 부담이 큰 고액진료비 및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를 추진 중임

1)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2016년 내에 완결하고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를 이행하여 고액진료비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함[2] (이행)**
-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 계획(2014~2018년)을 이행하고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희귀난치질환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사업을 2016년 연초 발표 및 박근혜 정부 공약대로 이행함

- 2016년 상반기 및 국정감사 직전까지 기간에는 분만취약지 고운맘 카드 지원액 인상 및 분만수가 개선, 제왕절개 입원 본인부담 경감(20% → 5%), 분만시 상급병실 급여 적용, 신생아 집중치료실 비급여 해소, 노인임플란트 및 틀니 연령확대(70세 → 65세), 결핵 치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추진하였음
- 2016년 10월에는 임신 초음파검사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고 12월에는 1회용 안전 관련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확대를 추진함
- 장기이식 본인부담금산정특례의 경우 당초 2016년 12월에 급여 확대를 계획하였으나 2017년 5월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함
- 2016년 6월부터 12세 여성청소년 23만 명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 및 모성건강 상담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함

○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실적은 다음과 같음

- '13년부터 총 672 항목의 고비용 약제·검사·치료법 등 급여 확대 완료로 환자 부담 비급여 7,657억 원을 경감함

2)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국민행복 분야 합동 업무보고」, 보도자료, 2016.1.20.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실적

구 분	'13	'14	'15	'16
항목 수	25항목	100항목	258항목	289항목
신규 소요재정	4,042억원	4,124억원	5,603억원	5,452억원
비급여 경감액 (누적)	2,176억원 (2,176억원)	2,168억원 (4,344억원)	1,803억원 (6,147억원)	1,510억원 (7,657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제출자료(2017.7.26.)

- '16년에는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등 289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함
-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본인부담금산정특례 확대를 통해 대상자를 확대함
- 희귀질환, 중증뇌혈관, 선천성심장질환 등 단계적으로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하여 약 12만 명이 혜택을 받음

2016년도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 실적

구 분	질병 진단 검사	수술 및 처치	약 제
신 규 보험적용	160 항목	28항목	12 항목
	유도초음파, 유전자검사(120종) 등	진정내시경,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릭시아나정, 블린사이토주 등
급 여 대상자 확 대	8 항목	37 항목	44항목
	유방감마영상, 에이즈검사 (나471 HIV항체) 등	체외순막형산화요법(에크모), 자동봉합기	알부민주, 췌장암 치료제 등
합 계	168항목	65 항목	56 항목

자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제출자료(2017.7.26.)

2016년도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 실적

구 분	'14.2월	'15.2월	'15.12월	'16.3월	'16.7월
확대 대상	희귀질환 25종	미수술 중증 뇌혈관	선천성 심장질환 12종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급성기 뇌경색 희귀질환 5종
예상 수혜자(년)	33천명	29천명	6.8천명	8.5천명	42천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제출자료(2017.7.26.)

3. 개선방안

□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같이 질환 단위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경우, 질환별 위중도·중증도 등이 환례마다 다르므로 건강보험 급여확대 과정에서 비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중증질환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질환 단위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접근 방식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02) 788-4725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	044) 202-2710 044) 202-2730

■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입원환자에게 간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인건비가 간호관리료 및 행위별 간호수가에 포함되도록 하고 간호사에 대해서도 야간·휴일가산을 적용하는 등 간호 관련 수가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보건복지부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가·감산 기준을 법정 인력 기준에 맞춰 조정할 것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병원과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간호·간병료 수가 가산 및 시설투자비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답변함

○ 간호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입원료의 간호관리료에 반영되어 있고, 행위별 수가에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인건비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음

○ 야간·휴일 가산은 현재 진찰료, 처치·수술 등의 행위에 적용되고 있고, 가산 수가에 간호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

○ 「의료법」상 간호사 확보기준은 연평균 환자수를 기준으로 하며,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분기별 병상수 기준으로 하는 등 산정방식이 상이하여 일률적 비교에 한계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간호인력의 적정수급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중임

○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 대하여 초기 투자비용을 보상하는 국고 지원('16년 50억원)은 공공병원과 상급종합을 제외한 병원이 우선 받도록 운영하고 있

※ '16.9월 기준 65기관, 27억 원 지원, 민간 5천만 원·공공 1억 원 한도

– 간호·간병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15년6월, '16년9월)하여 병원의 인건비나 시설 투자비 등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왔음

※ 간호·간병 수가는 일반병동 대비 약 2배 수준, 공공병원은 전체 포괄수가 급여비용 총액에 가산(2~3%) 실시

– 또한, '16년 10월부터 취약지역 소재 병원들이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1인당 30만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료 수가에 8~9% 가산을 시행하고 있음

* 102개 시·군, 214개 병원 대상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017년 4월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준중환자실 수가 신설 등을 심의·의결하였음**
- **간호인력의 적정수급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함[3] (이행 계획 수립)**
  - 지방병원 간호인력 확보 어려움과 낮은 병상 가동률을 감안하여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을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와 병행하여 인력확보 수준이 더욱 열악한 취약지는 인력 고용과 직접 연계된 보상 방안도 시범 운용할 예정임(10월 예정)
  - 중환자실 이용을 줄이면서도 일반병실보다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졸중, 고위험 산모 대상 준중환자실(노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가 신설 적용됨(10월 예정)
  - 또한 취약지[4] 병원의 경우 간호관리료 산정 기준 개선만으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등급 개선 효과가 미미할[5] 것으로 예상되어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임
    - 실제 고용 증가가 확인된 경우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 인건비를 지원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간호사 대비 병상수에 따라 간호관리료 등급을 매길 경우 병상가동률[6]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실제 입원 환자수와는 동떨어진 간호등급을 받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의료기관이 적정 수준의 간호사 수를 확보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게 간호관리료를 보다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999년에 도입되었음
-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7등급은 5% 감산하여 지급함
- 간호관리료 등급산정 기준을 환자 수가 아니라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은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려웠음

○ 간호인력 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하여 실제 투입인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지방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된다!」, 보도자료, 2017.4.25일자
4) 소득세법상 의료 취약지 58개 시군구, 88개 병원
5) 간호등급 상승 및 입원료 변동 예상기관은 14.8%(13개 의료기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됨
6) 종별 병상가동률은 상급종합 93.7%, 종합병원 78.5%, 병원 61.6%이며 지방 소재 병원의 경우 7등급 이하가 85%(788개소)를 차지함

3. 개선방안

□ 서울, 광역시, 수도권 대형시와 서울 인접 지역의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간호사 대비 환자 수에 따른 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인 바, 이후 간호서비스 질 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02) 788-4725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	044) 202-2730

국가 대장암검진 개선 방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국가 대장암검진 개선 방안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국가 대장암검진의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	대장내시경을 받은 사람의 경우 향후 5년 동안은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국가 대장암 검진 대상자 중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분변잠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	분변잠혈검사의 경우 정량검사가 정성검사에 비해 3배 정도 정확하므로, 검사방법을 정량검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분변잠혈검사 및 대장내시경 검사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검진 수검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음

– 1차검사에는 분변키트 우편발송을 하고, 2차검사인 대장내시경을 한 경우, 1차 검사기관과 2차 검사기관이 다르더라도 검진비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임

○ 대장내시경을 받은 사람의 경우 향후 5년 동안은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하여 근거를 확인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임

○ 분변잠혈검사의 경우, 국내 정량/정성검사 수준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국가 대장암검진의 수검률 제고 방안의 마련 여부**
  - 1차검사에는 분변키트를 우편으로 발송 및 회수하고, 2차검사인 대장내시경을 한 경우, 1차 검사기관과 2차 검사기관이 다르더라도 검진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이행 중)
- **대장암 검진 대상자 중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분변잠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의 마련 여부**
  - 2018년부터 기암환자, 용종 발견자, 대장내시경에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5년 동안 분변잠혈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이행 중)
- **분변잠혈검사의 경우 검사방법을 정량검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의 검토 여부**
  - 국내에서는 정량법이 정확도 면에서 정성법보다 우월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계속 검토 중임(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대장암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으로, 1차 기본검사인 분변잠혈검사를 위해서 수검자에게 분변키트를 우편을 보내주고 우편으로 회수하는 안을 2018년에 도입하려 하지만,

당장에 수검률 향상을 기대하기에는 어렵고 장기간의 시범실시를 통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5대암검진 중 대장암검진 수검률은 매년 다른 종의 수검률보다 많이 저조[7]한데, 특히, 시군단위에서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들도 있어서 수검률이 15%도 안 되는 곳이 있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용자기반의 암검진 프로그램 개발(2015-2016)'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변채취 키트 우편 발송한 표본조사에서 기존의 수검자의 60%, 비수검자의 50%가 검사에 응하였고 수검률이 15% 정도 향상되었지만 기대한 정도의 수검률에 못미쳤다고 함[8]
- 따라서 분변키트의 우편발송 및 회송의 방법은 낙도 등 검진기관을 직접 왕래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비용효율성으로 접근할 것인지 의료형평성 제고로 접근할 것인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임

○ 또한, 2차 검진기관이 1차 검사기관과 다르더라도 2차 대장내시경 등의 검진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수검자의 2차 검진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져 수검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원칙은 1, 2차 검사기관이 동일해야 지원되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2차 조영검사나 내시경, 조직진단 검사 비용 등이 지원되고 있음

○ 대장내시경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5년동안 분변잠혈검사를 기본검사로 하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안을 올해 8월 중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분별잠혈검사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 등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거나, 내시경적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분변잠혈검사가 아닌 대장내시경으로 추적검사를 받아야 함

○ 분변잠혈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정량검사가 정성검사보다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의 두 결과를 비교했을 때 정량법이 더 우월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9] 비교연구(2018~2019년)를 통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

7) 5대암검진수검률(2016년) : 위암 59.4, 간암 65.4, 대장암 35.7, 유방암 63.0, 자궁경부암 53.0
국가암검진사업(2016년) : 위암 50.2, 간암 58.6, 대장암 30.9, 유방암 54.8, 자궁경부암 44.5

8) 국립암센터 책임연구원과의 구두 통화

9) 현재 약 50%의 국가대장암검진이 정성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방법별 정확도의 분석 결과, 정량법이 특이도(음성이 나올 경우 암이 아닌 확률)와 양성예측률(양성이 나왔을 경우 정말 암일 경우)은 높았으나, 민감도(암환자 중 양성이 나올

계획이라고 하니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현 상황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다만, 정량검사는 정성검사에 비해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므로, 분변잠혈검사를 정량검사로 일원화할 경우에는 많은 의원급 검진기관이 검진기관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3. 개선방안

□ 대장암검진 권고안[10]에 따르면, 45~80세 무증상 성인의 경우 분변잠혈검사를 1~2년마다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어, 국가대장암검진 대상 상한 연령을 80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는 5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 학회에서는 80세 이상에서는 대장암 검진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외 대장암검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에서는 50~75세로, 영국 NHS는 60~74세로 검진대상 연령을 정하고 있고, 80세 이상의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권고하지 않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	조숙희	02) 788-4727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	-	044) 202-2513

경우)는 오히려 정성법이 높았음

10) 손대경 외, 「대장암 검진 권고안」, 「대한의사협회지」 제58권제5호(2015년 5월), pp. 420-43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다 빠르고 지역적으로 폭넓게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국공립어린이집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150개소씩 지속 확충 중에 있음

– '16년 국공립 확충 실적 201개소로 목표대비 134% 초과 달성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매년 예산 편성 시, 어린이집 확충 지원단가 등을 인상하기 위해 지속 노력(이행 중)**

–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지자체 사업신청에 따라 대상 선정 및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도권 외 지방의 경우 지방재정부담에 따라 확충 신청 자체가 저조한 상황임

– '18년 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부담 완화 및 지역적 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원단가 인상 및 차등보조율 적용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 국공립어린이집 전국 확충을 위한 개소수를 대폭 확대[17년 기준 180개소 → 450개소(계획)]

□ 연도별 지자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현황

(단위: 개소)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204	2,332	2,489	2,629	2,859
서 울	690	750	844	922	1,071
부 산	148	152	155	161	163
대 구	39	39	42	46	54
인 천	106	125	132	140	150
광 주	30	31	30	32	33
대 전	28	28	29	30	33
울 산	31	32	33	33	36
세 종	5	5	8	10	14
경 기	522	546	575	595	625
강 원	83	83	85	87	87
충 북	52	56	56	58	59
충 남	62	65	68	72	77
전 북	53	54	54	55	56
전 남	76	80	86	91	97
경 북	126	132	133	134	137
경 남	132	133	135	137	140
제 주	21	21	24	26	27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이행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신속하게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공급하는 정책의 추진은 수도권 외 지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확충 신청 자체가 저조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세부사항 보고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개선방안

□ 지자체별 편차가 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과 지방의 예산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전국 및 지자체별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이용 아동 현황 및 비중

(단위: 개소, 명, %)

구 분	전체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16.8월 기준)			
	개소	현원	개소	국공립 비율	현원	이용 비율
전 국	41,221	1,396,747	2,781	6.7	173,985	12.5
서 울	6,369	231,304	1,014	15.9	66,518	28.8
부 산	1,950	72,310	162	8.3	10,996	15.2
대 구	1,487	55,901	53	3.6	2,639	4.7
인 천	2,239	78,344	148	6.6	8,618	11
광 주	1,240	45,135	32	2.6	2,356	5.2
대 전	1,594	42,405	32	2.0	1,698	4
울 산	899	33,679	36	4.0	2,207	6.6
세 종	244	10,196	11	4.5	923	9.1
경 기	12,204	96,789	618	5.1	9,872	10.2
강 원	1,184	277,243	87	7.3	30,915	11.2
충 북	1,209	40,334	59	4.9	5,450	13.5
충 남	1,964	48,387	75	3.8	3,849	8
전 북	1,570	66,676	56	3.6	3,721	5.6
전 남	1,243	51,763	97	7.8	2,983	5.8
경 북	2,107	52,774	136	6.5	4,912	9.3
경 남	3,173	67,774	138	4.3	5,777	8.5
제 주	545	99,302	27	5.0	8,768	8.8

□ 하지만 보육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보육예산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온 것과는 달리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 분	2015예산	2016 예산	2017 예산
전체	5,186,136	5,270,824	5,373,451
어린이집 확충	33,446	30,234	22,370

□ 요컨대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정책기조와 달리 예산을 감축해야 하는 이유 즉, 기재부 등과의 조정 과정의 결과인지 혹은 재정을 분담해야 하는 지자체의 부담 때문인지를 밝혀내고 이에 해법을 마련하여 본래의 정책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02) 788-4724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실	보육정책과	-	044) 202-3545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합리적 역할 설정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합리적 역할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발표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동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관계부처·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제도 보완·개선에 협력해 나갈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발표를 수행하였음 (이행)**

– 2016년 12월 20일에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복지부·금융위 공동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TF」를 통해 최종 확정된 대책(안)을 발표함[11)]

–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정책세미나(6.16), 금융감독자문회의(6.24), 금융발전 심의회(9.7), 금융개혁추진위원회(10.5),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11.28) 등을 거치면서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협업함

■ **상기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과)는 비급여 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개 확대, 표준화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가격경쟁을 촉진을 추진하겠다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함 (이행 중)**

– 사회적 요구가 큰 비급여 항목부터 코드·명칭·행위 정의 등을 단계적으로 표준화해나갈 계획이며 표준화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7.4.1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두 공개하겠다고 하였음

– 현재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별 관리코드·명칭·정의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임

– 현재 52개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 현황조사·가격공개 하였으며(20개 항목은 제증명 수수료), 연내 100개 항목('17.4.1. 공개), '17년 200개 항목으로 확대('18.4.1. 공개)하겠다고 함

■ **또한 현재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고 난해한 진료비 내역서식을 사용함에 따라 진료서비스의 적정성 확인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알기 쉽게 기재하도록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을 마련하여 '17년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겠다고 함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11)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16.12.20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코드·명칭 표준화를 이행하면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었던 진료행위에 대한 가격 비교가 가능해지고, 비교 가능한 상태에서 가격정보가 주어져야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항목 현황조사·가격공개가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관건이 될 것임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를 일부 개정하여(2016.12.28.) 77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30개 항목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현황조사 후 107개 항목을 별표로 고시하였음

○ 현황조사 및 가격공개 비급여 항목을 107개 항목에서 200개로 확대하는지는 2017년 연말에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개정이 진행되고 있음(법제처 심사 중)

3. 개선방안

□ 건강보험 재정 보호 차원에서 가입자 3,200만 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악용·남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실손의료보험의 주된 보장 영역은 비급여 부문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하면 비급여 의료의 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음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총의료비증가율은 7.7%이고 이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면 의료비 6.7%, 비급여의료비 10.2%임

○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율 상승·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은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침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건보공단이 비교대상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은 미가입자보다 약 3.5배(314,232원) 높은 수준이며, 총 의료비도 약 4배(641,198원)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12)]

12) 김관옥·신영전,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비판사회정책』 제54호, 2017.2

□ 의료계 내에서 전문과목별로 사용량이 많은 비급여 항목(시술, 검사 등)에 대해서는 적정진료 지침을 개발하여 과잉진료 및 남용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함

○ 정보 공개를 통한 서비스 가격 경쟁을 촉진해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02) 788-4725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044) 202-2703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용체계 개선 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의결권 행사 지침 관련 개선 방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성하기 위한 논의와 연구에 착수할 것

2)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위원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임

○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해외사례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임

–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지침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실시함('17.1.23.)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설명회 및 위원교육 실시**
–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전 안건에 대한 설명회와 가이드북을 통한 교육을 실시 (대안이행 중)
■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해외사례조사 실시**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17.1.23.), 해외사례들을 조사 중 (이행 중)

2)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 안건에 대한 설명회와 가이드북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비상임위원회 성격상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불가능한 한계는 인정하나 설명회와 가이드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성이 미비하므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금융전문가가 아닌 가입자, 사용자,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 부족을 지적받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안건에 대한 설명회만으로는 전문성을 강화하기에는 부족하며, 따라서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전문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및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선에 포함된 의미는 실질적으로 의결권행사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임. 이는 기금운용 의사결정 체계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시정조치 요구를 따르기 위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검토방안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이행 중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총 2번의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 과정과 해외 주요연기금의 의결권행사 체계 조사가 이루어짐[13)]

- 현재의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현 체계에서 기금운용위원회는 비상임위원회이기에 전문성이나 공정성, 책임성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고 체계변경과 함께 이를 담보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짐

3. 개선방안

□ 현재의 기금운용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금운용위원회 및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비상임조직이라는 한계성으로 전문성, 공정성, 책임성에 대한 논의 및 지적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 스튜어드십 제도 도입을 통해 각종 의사결정과정과 기금의 투자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서선영	02) 788-4722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	-	044) 202-3654

기초생활수급자의 공공요금 감면제도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공공요금 감면 수혜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13) 전문가 간담회('17.1.23. 재무전공 교수2인, 법률 전문가, 연금 전문가로 총4인 참석), 관련단체 간담회('17.3.27.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총3인 참석) 간담회 총2회와 일본,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미국 등의 해외 사례 조사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ㅇ 전체 공공요금 감면 수혜율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각지대 없는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를 운영할 것 ㅇ 신청주의를 없애고 보건복지부가 알아서 찾아가서 혜택을 줄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ㅇ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대상자를 포함하여 공공요금 감면 여부를 전수 조사(2016.12월)

- 공공요금 감면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공공요금 감면 신청 안내(2016년 12월 요금감면을 받지 않는 40만여 가구를 발굴하여, 신청안내문 우편발송 등 안내)

ㅇ 신청하지 않고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 요금감면 신청제도 개선 협조 요청(2016.10월)

ㅇ 사각지대 없는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누락대상자 안내 강화('16년 1회 → '17년 2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전체 공공요금 감면 수혜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를 운영할 것**
- 복지수혜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이행)
- 공공요금 사각지대에 있는 395천여 명을 발굴하여 175천여 명 감면 혜택 (이행)
- 2017년부터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 연 2회로 확대 (이행)

▪ **공공요금 감면 신청주의 폐지 여부**
- 관련 부처와 신청주의 폐지를 협의하였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미이행)
- 신청대행제도 확대 (대안 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사각지대 없는 공공요금 감면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전수조사를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시행함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공공요금 감면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395천여 명을 발굴하였고 이들에게 공공요금 감면을 위한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175천여 명만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았고 여전히 220천여 명이 공공요금 감면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까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휴대전화요금, TV수신료 등 4개 요금은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기관에 각종 감면서비스 및 복지자원 연계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있고 2017년 4월부터 지역난방요금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상기와 같이 전수조사를 통하여 사각지대가 발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신청대행제도를 모르거나, 개별신청에 따른 번거로움과 수혜대상 여부도 모르는 대상자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공요금 감면 신청주의 폐지를 요구하여 관련부처인 산자부, 방통위, 미래부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청주의 폐지에 대하여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3. 개선방안

□ 공공요금 감면 신청대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요금 감면관련 기관인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등에게 복지수혜대상자를 대신하여 신청을 대행하고 있음

○ 그러나 시내·외 전화요금, 초고속 인터넷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은 신청대행에 빠

져 있으므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대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공요금 감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함

○ 2017년 상반기에 시행한 공공요금 감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395천여 명을 발굴하였으나, 175천여 명만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아 전수조사만으로 사각지대 해소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복지수혜대상자에게 복지감면제도 및 대행신청제도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공무원은 감면 받지 않고 있는 대상자의 원인을 찾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최병근	02) 788-4721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운영과	-	044) 202-3174

■ 기초생활수급자의 미신고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소급 지급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미신고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소급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수급자가 보장기관에게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성실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급여는 소급 지급하지 않는데, 개선방안을 마련·보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지자체 기초생활보장 담당공무원 의견수렴 등 실시(2016년 11월)

○ 성실 신고하지 않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 소급 지급 시 일용 소득 등 잦은 소득재산 변경에 따른 업무부담 및 행정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 필요

○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에 대한 성실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수급자의 미신고로 발생한 급여의 소급 지급 등 개선방안 마련**
-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급여 소급 지급 개선방안 마련 (미이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 자료 연계 확대 지속 추진 (대안 이행)
-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소명기회 독려 및 성실 신고 안내 강화 (대안 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수급자가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성실 신고하지 않아 수혜 받지 못한 급여분에 대하여 소급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대안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성실 신고하지 않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 소급 지급 시 일용 소득 등 잦은 소득재산 변경에 따른 업무부담 및 행정비용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에 2017년 상반기 사업장임차보증금, 비상장주식, 공동소유자동차, 전월세거래정보 등 공적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규 연계함으로써 적정급여 지급을 위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인적사항 변동에 대한 적시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자체가 수급자에게 수급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자격·급여 변동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안내문, 전화통화, 문자 발송 등으로 독려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홍보 시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인적 변동에 대한 성실신고 관련 사항도 안내하여 불성실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등의 감소 사실을 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의 소급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급 지급 금지규정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개정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음[1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7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의 경우 수급자와 거주지역을 달리할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급자가 알고 신고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임

○ 또한 보건복지부는 불성실 신고 수급자에 대한 소급지급 금지를 업무부담과 행정비용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민원이 거의 없어 업무부담이나 행정비용도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수급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급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급자의 금융정보 및 장애인 임금내역에 대하여 자동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4)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213
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 이에 수급자가 성실 신고하지 않아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감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 신고하였을 경우 지급할 수 있었던 급여와의 차액을 추가 급여로 소급 지급할 수 없음

○ 2017년 상반기에 사업장임차보증금, 비상장주식, 공동소유자동차, 전월세거래정보 등 공적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규로 연계함으로써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인적사항 변동을 적시 반영하여 적정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재산의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변동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연계가 아닌 파일로 수신 받고 있음. 또한 월별 확인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반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임금내역은 자동연계가 불가하여 확인조사 시에 CD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있어 오류 확인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공적자료 변경시기와 제공주기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최병근	02) 788-4721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	044) 202-3048

■ 기후변화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역할 재정립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게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예방대책 강화 필요 - 기후변화 급·만성질병연구(R&D) 예산이 2015년 25억 원, 2016년 24억 원, 2017년 25억 원 등에 불과하므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것 -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에 대한 감시와 진단·대응의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감염병 대응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연구에 필요한 해외 연구 인프라를 확충할 것 –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래감염병대응TF'를 상설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ㅇ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전담 상설조직 설치 및 법적 근거 마련, '기후변화 적응 건강관리대책(2016–2020)' 수립 등 기후변화대응 건강관리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ㅇ 보건복지부가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ㅇ 기후변화관련 연구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ㅇ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매개체전파질환/수인성질환 등) 발생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인식하여, 감염병관리운영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감시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음

ㅇ '17년 수시직제개편을 통해 '미래감염병대비과' 신설을 추진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기후변화 급·만성질병연구(R&D) 예산은 당초 편성한대로 2017년 25억 원이지만, 미래감염병대비과를 신설하여 2017년 연구예산 7억 원을 편성하고, 2018년 30억 원(미세먼지 건강영향 관련)을 요청함 (이행)**
- **보건복지부는 감염병관리에 기후변화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보고하였음**

연도	수요기관	수요정보명	비고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시 외 15종	구축 완료
	국민안전처	감염병 보고 고유번호 외 8종	

연도	수요기관	수요정보명	비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염병발생번호 외 15종	
2017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 정보 및 진료정보	구축 예정
	교육부	학생감염병 감시정보	
	통계청	시군구 지리정보 및 분포 인구정보	
	보건환경연구원(4)	감염병 검사결과정보	
	행정자치부	감염병 웹통계	
20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 및 약국 의약품정보	연계 계획
	국립환경과학원	야생동물 질병 및 인수공통감염병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7.7.19.)

- 환경부, 해수부, 기상청 등에서 생산되는 기후변화관련 정보를 질병발생정보와 통합분석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 **기후변화 및 고령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보건위기상황을 예측하고 이와 관련된 만성병, 신·변종 감염병, 환경질환 등에 대한 능동적·선제적인 대응·대비를 위한 전담 부서가 필요하여 2016년 하반기 수시 직제 요구서를 제출하고(2016.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2017.5.8.) (이행)**

■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건강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6-2020)에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부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함**

■ **미래감염병대비과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온 발생 증가에 따른 건강영향 감시를 위하여 온열(2011년부터)/한랭질환(2013년) 감시체계를 운영 중임**

- 온열질환 15년 1,056명(사망1명), 16년 2,125명(사망 17명)
-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극한기온 건강피해 예방 행동요령 등을 제작·배포함으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피해 저감을 추진 중임

■ **기후변화 관련 질병 전파 매개체(모기, 진드기 등)의 분포지역 및 해외유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벡터넷(VectorNet), 수인성 질병 발생예측 등 위한 비브리오넷(VibrioNet)을 운영 중에 있음**

■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 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와 5년마다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이행 중)**

- 실태조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질환 등의 발생경로, 발생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진료경과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
- 기후보건영향평가를 통해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유형, 내용 및 특성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민감 질병에 대한 발생추이 및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질병관리본부 미래감염병대비과에서 「'17년 하반기 주의해야 할 10대 감염병 및 예방수칙」을 마련하여 발표[15]한 것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시정하여 조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기후보건영향평가는 오는 8월 9일에 시행 예정으로 실태조사 및 5개년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임

○ 기후변화 감염병 대응 연구에 필요한 해외 연구 인프라 확충 추진은 확인되지 않음

3. 개선방안

□ 하반기 주의해야 할 국내유행 감염병 5가지, 하반기 주의해야 할 신종·재출현 감염병 5가지, 일상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5가지,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 5가지, 국내유행 감염병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담긴 「'17년 하반기 주의해야 할 10대 감염병 및 예방수칙」을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음

○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과 공항 등에 안내 자료를 비치하고 전자적 광고 게시판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02) 788-4725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	-	044) 202-2533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	-	044) 202-2210
		질병관리본부	미래감염병대비과	-	043) 719-7260

15) 질병관리본부 미래감염병대비과, 「질병관리본부, '17년 하반기 주의해야 할 10대 감염병 및 예방수칙 발표」, 보도자료, 2017.7.25

맞춤형보육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맞춤형보육 개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기본 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워킹맘에 대해서는 추가보육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기본 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벌이 가구 등 보육 실수요층을 우선해 오던 그간의 보육 목적 및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어린이집, 교사 뿐 아니라 아이와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견을 제시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린이집, 교사 뿐 아니라 아이와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여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미이행)

– 단, 향후 전문기관 연구, 부모·어린이집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답변을 부가하고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맞춤형 보육을 기본보육(8시간)과 추가보육으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체계로의 시정 및 처리 요구가 지금까지는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개선방안

□ 2016년 7월 1일 시행된 맞춤형 보육은 시행초기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업이었던 만큼 본래의 정책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후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행 1년을 맞이한 맞춤형 보육은 필요에 비해 과도한 이용시간의 제공, 공급자에 의한 일종의 역선택, 가정내 부모양육의 감소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영아가구의 특성에 맞는 정교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었음

○ 그러나 영유아부모의 수요 충족 부족, 종일반 판정기준의 혼선과 판정을 위한 인력 및 비용 증가, 종일반 부모와 맞춤반 부모 간의 형평성 문제, 어린이집의 문제제기로 인한 지원비용 상승 등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청문회(7.19.)에서 후보자가 맞춤형 보육 폐지를 거론한 바 있듯이, 그간 제기되었던 영유아부모의 수요,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준수,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축 등을 반영하여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육시간 개편, 보육료 지원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02) 788-4724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실	보육정책과	-	044) 202-3541

사설구급차 관리감독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사설구급차 관리감독 강화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ㅇ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설구급차를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것 ㅇ 비영리민간단체 사설구급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보건복지부	ㅇ 최근 5년간 사설구급차 업체가 응급구조사 미탑승, 이송처치료 과다 징수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총 101건에 달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사설구급차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할 것 ㅇ 현행 사설구급차 관련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16.12.29.)을 검토 중임

- 용도 외로 사용되는 구급차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ㅇ 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 실시하였음('16.10.~'17.1)

-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불법 운용 차량에 대한 적정 조치를 위해 모든 사설 구급차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설구급차를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 (이행)**
  - 법 제45조제3항을 신설하여 용도 외로 사용되는 구급차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17.7.19.시행)
- **사설구급차(민간이송업체)의 응급구조사 미탑승, 이송처치료 과다 징수 등 법률 위반한 사례 특별 전수조사 실시 여부 (이행)**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별 사전 서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19구급차를 제외한 모든 구급차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함('16.10월~'17.1월)
- **사설구급차 관리·감독체계를 강화 여부 (대안 이행)**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와 별도로 이송업체 보유 구급차도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함
  - 모든 구급차의 말소 통보 및 신고제를 도입하고, 운행연한 및 운행거리 초과 운행을 금지함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구급차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연예인 등 일부 이용자들이 구급차를 교통정체 등을 피하기 위한 긴급이송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나,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보유한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제재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보건복지부는 119구급차를 제외한 전국 91개 민간이송업체[16]의 모든 구급차에 대하여 각 시·도별로 조사하게 하여, 적발된 43건에 대하여, 과징금(8), 업무정지(5), 시정명령(30)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받음

– 이 중에서 응급구조사 인력기준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16) 서울 18, 경기 14, 그 외 시도 1~8 업체(제주도와 세종시는 없음)

민간이송업 허가 요건 미비에 해당하는 중대한 것으로 일회성의 특별점검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할 것임

○ 국회의 요구대로 사설구급차 관련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한 것은 아니지만,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와 별도로 민간이송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도 신고하도록 한(법 제44조의2제2항) 것은 구급차 운용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고, 모든 구급차의 말소 통보 및 신고제를 도입하며(법 제44조의3) 운행연한 및 운행거리 초과 운행을 금지(법 제46조의2)하도록 한('16.12.2. 개정, '17.12.3. 시행예정) 것은 구급차의 관리·감독을 좀더 강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법 제50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이 매년 1회 이상 구급차 등의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이상 시·도지사로 하여금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처분의 이행 상황도 같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응급구조사 인력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벌칙 규정이 필요해 보이며, 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를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처벌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	조숙희	02) 788-4727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	-	044) 202-2556

사회복지시설 시설평가제도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시설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ㅇ 대구시립희망원은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시설임에도 시설평가에서 전체 A등급을 받아 보건복지부의 시설평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인권지표를 확충하는 등 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ㅇ 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데, 인권침해가 문제된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14년도 평가 결과가 7개 전체평가 올 A가 나오는 등 평가가 제대로 되는지 의문임. 인권침해 항목을 늘리고, 현장실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ㅇ 전체평가에서 이용자 인권영역 비중을 양로시설(8% → 15%), 한부모가족복지시설(10% → 15%) 완료

ㅇ 인권지표의 확충, 인권침해 시설 등급 강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ㅇ 인권지표 강화(학대 지표 신설 등) 및 배점 강화(평균 2배↑)

- 인권 관련 행정조치 사항 '평가등급 강등제' 시범 실시
- 2016년 평가 결과 13개소 이용자 권리영역 최하등급(F) 부여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인권지표 확충 등 평가제도 개선 여부**
- 2018년 평가대상시설 이용자 인권영역 비중 확대 (이행)
- 2019년 평가대상시설 이용자 인권영역 비중 확대를 위해 지표 개발 중 (이행 중)
- 인권 영역 평가등급 강등제 시범 도입 (이행)

■ **현장실사 강화**
- 현장평가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 (대안 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인권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8년 평가대상시설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종전보다 평가비중을 확대하여 지표를 개발하였음
- 2019년 평가대상시설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3개 시설에 대한 인권지표는 2017년에 개발 중에 있음

○ 2016년 평가부터 이용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인권 관련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을 해당영역 평가등급에 반영하는 평가등급 강등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므로, 인권지표 관련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용자 인권침해로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이용자 인권 영역을 최하등급인 F를 부여하고 이용자 인권 침해로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평가 등급을 보류함
- 이와 관련하여 2016년에 13개 시설이 이용자 인권영역 최하등급을 부여받았고 6개 시설의 평가등급이 보류됨

○ 현장실사 강화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17년부터 현장평가 위원의 평가지원 및 모니터링과 대상시설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평가 운영체계 등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평가지표의 내용이 관찰이나 면담위주가 아닌 관련규정·근무일지·계획서·서약서·상담일지 여부 등 문서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3. 개선방안

□ 인권영역의 배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평가대상시설인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4개 시설은 이용자 인권영역 비중을 아래와 같이 확대함. 그러나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인권영역비중에 비하여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의 배점이 너무 작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인권영역배점 비중 현황▐

평가유형	인권영역 배점(%)				지표개발시기
양로시설	2015년 평가	8	2018년 평가	15	2016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15	
사회복지관		3		6	
노인복지관		3		5	
아동복지시설	2016년 평가	10	2019년 평가	배점확대 예정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			
장애인거주시설		10			
정신요양시설	2017년 평가	10	2020년 평가	배점확대 예정	2018년
사회복귀시설		5			
노숙인복지시설		12			
장애인복지관		10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7. 7.20.)

○ 2016년 평가등급 강등제를 실시하여 성폭행·아동학대·폭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E. 이용자 인권영역] 강등시설이 13개 시설이 있으나, 전체 등급의 강등 폭이 그다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등급이 강등되지 않은 시설도 3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영역의 평가등급 강등이 전체 등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음

2016년 평가등급 강등시설 등급비교 현황

연번	시설유형	시설명	A	B	C	D	E		F	전체등급	
							전	후		전	후
1	아동복지시설	새○○	B	B	B	B	B	F	C	B	C
2	아동복지시설	성○○	A	A	A	A	B	F	A	A	B
3	아동복지시설	한○○	B	A	C	A	B	F	B	B	C
4	아동복지시설	혜○○	A	C	C	B	B	F	A	B	C
5	아동복지시설	의○○	A	B	B	A	B	F	A	A	B
6	아동복지시설	리○○	A	B	B	A	B	F	B	B	C
7	아동복지시설	환○○	A	A	B	A	B	F	A	A	B
8	아동복지시설	제○○	B	A	B	B	B	F	C	B	C
9	장애인거주시설	품○○	A	C	B	A	B	F	A	B	B
10	장애인거주시설	송○○	F	F	F	F	F	F	F	F	F
11	장애인거주시설	루○○	B	D	D	B	B	F	F	C	D
12	장애인거주시설	나○○	A	C	C	C	B	F	D	C	C
1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삼○○	A	B	D	A	B	F	A	B	B

* 음영이 있는 9, 12, 13번 시설은 E영역의 등급이 강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등급은 강등되지 않았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7. 7.20.)

□ 관찰이나 면담 위주의 현장실사 강화가 필요함

○ [E. 이용자의 인권영역]의 지표를 보면 대부분의 평가내용에 대한 평가인증방식이 문서 확인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사회복지사 등 현장 종사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본연의 돌봄서비스가 소홀해지고 있어 평가과정과 결과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음. 이에 평가인증방식을 문서 확인위주에서 관찰이나 면담 위주로 현장실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최병근	02) 788-4721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 202-3261

수급자 선정시 기본재산액 기준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기본재산액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ㅇ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기본재산액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공제(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하는데, 기본재산액이 지역의 집값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 ㅇ 경기도의 경우 기본재산 공제액을 중소도시가 아닌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ㅇ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별 생계·주거비 등의 차이, 주거급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수급자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수급자 선정 시 기본재산액이 지역별 집값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기본재산액 공제제도 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 (계획 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수급자 선정 시 기본재산액 공제를 지역의 집값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경기도의 경우 중소도시가 아닌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평가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는 기본재산액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지역별 주거비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의 적정성 검토, 제도 개선 시 파급효과 등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연구용역기간: 2017. 5월 ~ 11월)

3. 개선방안

□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급자의 기본적 생활유지비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기본재산액이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아래의 금액을 적용함

▌지역별 기본재산액 적용금액▐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 액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7.

○ 그러나 기본재산액 공제제도가 상기와 같이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를 포함하고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를 포함하며, 농어촌은 '도의 군'을 포함하고 있는 등 3개 급지만으로 구분하여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정감사에 지적된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31개 시·군 중 16개 시는 광역시 평균 거주비용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나 도의 기준을 적용받아 2급지인 중소도시로 분류되고 있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음

○ 주거급여의 기본재산액 기준은 생계급여의 기본재산액 기준과 동일하나, 주거급여의 기준 임대료[17]는 지역구분을 4개 급지로 구성하고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으로 구성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최병근	02) 788-4721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	044) 202-3048

■ 아동학대예방 예산의 일반회계 편성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아동학대예방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일원화하여 편성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국민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17년 일반회계 예산 신규편성

17)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017년 아동학대예방 예산 정부안을 25,679백만원으로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26,629백만원으로 확정 편성되었음

○ '16년 예산안과 비교할 때 '17년의 경우 일반회계

※ 예산 41억을 최초로 편성하였음(부분 이행)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운영 30억원, 아동학대 국민인식개선 홍보비 11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7년 기준)	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복권기금 (기재부)	일반회계 (복지부)
아동학대 예산	26,629 (국비)	18,297(국비)	4,168(국비)	**4,164(국비)**
사업 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17년 신규)
예산편성 형태		국비 50% 지방비 50%	국비 40% 지방비 60%	국비 100%

○ 향후 인프라 확충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아동관련 예산 일반회계 전환, 시설·인력 확충, 인건비 현실화 등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임(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운영 30억원, 아동학대 국민인식개선 홍보비 11억원 등 '17년 일반회계 예산에 41억을 최초로 편성한 것은 시정·처리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아동학대예방 예산의 일반회계 편성의 취지인 예산규모의 확대가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보다 증액된 것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렇지만 약 84%에 달하는 예산이 여전히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

로 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개선방안

□ 아동학대예방 일반회계 편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사례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부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아동학대 사례개입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데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임

○ 2015년 현재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18)]

- 2015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수행한 업무 총량을 산출한 결과, 총 업무량은 약 1,315,575시간(상담원 1인당 약 2,520시간, 315일)이었음
- 또한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들이 수행한 치료업무 총량을 산출한 결과, 총 업무량은 약 256,727시간(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인당 약 4,208시간, 526일)이었음
- 이를 상담원 1인당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비교하면, 상담원은 84일(669시간)을 초과근로하고 있으며,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295일(2,356시간)을 초과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시 말해, 급증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아동학대예방 및 조치를 위한 대응능력을 제고하도록 장기화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 확대에 한계가 있는 기금운용 방식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에 근거한 편성으로의 방향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02) 788-4724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	-	044) 202-3434

18)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6.9.

양육수당과 보육료 격차 해소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양육수당 인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양육수당과 보육료 금액을 동일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가정양육수당 인상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여, '17년 예산 편성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양육수당 인상을 제기하였으나 '17년 최종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

○ 향후 예산 편성시 양육수당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매년 예산 편성시, 적정 수준으로 양육수당 지원단가를 인상하기 위해 노력(이행 미흡)**
  - '18년 예산 편성시, 적정 수준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
-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이 약 93만명, 연간 국비 1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서는 국가재정 여건 고려 및 사회적 합의 필요(재정확보가 선결과제로 남아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매년 예산 편성시, 적정 수준으로 양육수당 지원단가를 인상하기 위해 '17년 예산편성에서 제기하였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최종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한 담당부처로서의 역할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의 규모나 예산규모가 막대한 사업으로 재정충당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그 정책적 취지에 대한 수용성 증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개선방안

□ 현행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간의 격차는 기본적으로 무상보육이 일가정양립 차원에서 맞벌이 부부 우선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액 격차

구 분		0세반		1세반 (만2세)	2세반 (만3세)	3세반 (만4세)	4세반 (만5세)	5세반 (만6세)
		만0세	만1세					
보육료	부모	430천원		378천원	313천원	220천원	220천원	220천원
	기본	395천원		191천원	125천원	–	–	–
양육수당		200천원	15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액 산정 근거

–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

– 양육수당은 2011년에 정해진 단가 수준으로 지속 지원 중

○ 보육료 및 영유아 보육료 지급방식

보육료	부모보육료*는 부모가 어린이집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기본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 *부모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 대하여 지원(전자바우처, 아이행복카드)

	**기본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시 지원
양육수당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 그러나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낮 시간 동안 자녀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한 결과, 영유아 전체는 기관에 맡기는 비율이 49%였고 어머니가 돌보는 비율이 41.3%였음. 연령별로는 0세의 81.8%, 1세의 47%가 주로 어머니가 돌본다고 응답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의 지원단가가 보육료에 비해 낮게 책정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정책수요자의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맞벌이부부와 어린이집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그 격차의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지원단가 격차를 조정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보육료도 영유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 직접양육과 기관양육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02) 788-4724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	-	044) 202-3562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ㅇ 아동학대 예방지표는 2차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속히 반영할 것 ㅇ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도 바로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등 현재 경과규정 등의 기준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행정적 제재 및 평가에 미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ㅇ 2017년부터 평가인증 2차 지표 평가 시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필수로 포함함

ㅇ 현행 인증제를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제로 전환토록 추진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 및 평가주기 조정 등 패널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ㅇ 현재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 보고에 근거하여 인증취소 처리, 참여과정 중 기본사항 감점, 심의 시 불인증 등으로 반영하고 있음

ㅇ 또한, 행정적 제재 및 평가의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인증시스템과 행정시스템을 연동하여 관련 행정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음. 향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인증취소 보고 지연 및 누락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차 지표에 아동학대 예방지표 반영 여부**
– 2017년 7월부터 평가인증 2차 지표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여부 마련 (이행)

■ **인증 취소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 여부**
– 인증 취소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경과규정 대신 차하위등급으로 등급 조정 (대안 이행)
■ **아동학대 관련 행정적 제재 및 평가 미반영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여부**
–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의 행정적 제재 및 평가 누락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중 (계획 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2차 지표에 아동학대 예방지표 반영여부와 관련하여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7년 7월부터 2차지표에서 아동학대 예방지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2017년 11월 시행 예정 중인 통합지표의 건강·안전 영역의 평가항목에서 임용된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 영유아 학대예방지침(체벌금지 포함)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평가할 예정임

○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인증 참여 확정 전 1년 이내 발생한 아동학대 어린이집은 평가위원회에서 부여받은 평가등급보다 한단계 낮은 차하위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안이행되고 있으나, 대안이행된 부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아동학대로 인한 평가인증취소 시 평가인증 재참여를 금지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품질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현행 평가인증제를 평가의무제로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재참여 금지를 위한 경과규정은 평가의무제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등급조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등급조정되는 어린이집 대상이 인증 참여 확정 전 1년 이내라는 점, 등급조정범위가 한단계만 낮추어지는 점 등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의 행정적 제재에 대한 평가인증 미반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책이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므로 현 상황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현재 기존 수행하는 언론 모니터링, 분기별 아동학대 발생 및 행정처분 현황을 지자체로부터 수합하여 확인, 인증취소 발생에 대한 시스템 보고, 지자체 보고 강화 등을 시행 중에 있음

– 2017년 하반기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의 행정적 제재 및 평가의 누락 방지를 위

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나타남

3. 개선방안

□ 인증 참여 확정 전 1년 이내 발생한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 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현재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평가 시 평가등급 조정을 인증 참여 확정 전 1년 이내 발생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어린이집 차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아동학대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한단계 낮은 차하위등급으로 조정을 받는데, 아동학대 근절차원에서 등급조정 수위를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발생을 근절하기 위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평가인증에 공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	보건복지여성팀	최병근	02) 788-4721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기반과	-	044) 202-3584

요양보호사 수급부족 문제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 수급부족 문제에 대한 개성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ㅇ 요양보호사의 근무 유인 증대 방안을 마련할 것
	ㅇ 현장에서의 요양보호사 수급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2)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요양보호사의 근무 유인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인건비 지급 비율,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지표 변경, 요양보호사의 구인·구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요양보호사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수가 중 인건비 지급 비율을 마련할 것임
-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인건비 지급 기준 준수여부를 반영하여 평가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센터가 요양보호사의 구인·구직을 중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담전화 등에서 진행 중인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구인·구직 지원을 지속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급 비율 마련 여부**
  - 급여유형별 종사자 전체 인건비 지급비율 고시 (이행)
-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중 인건비 지급 기준 준수여부 평가 방안 마련**
  - 인건비 지급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개선방안 연구 중 (대안이행 중)
- **지자체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독려**
  - 현재 지자체에 안내문을 통해 지속적인 센터 설치 권장 중 (이행 중)
-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의 구인·구직 지원**
  - 건강보험공단 업무지원 및 관리 중 (이행 중)

2)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 2016.12.22.)"에서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을 "인건비 지급비율"로 개정하여 급여유형별 종사자 인건비 지급비율을 명시하였음.

-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여 2017년 6월 1일 이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분에 적용되고 있어 시정조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내역 등으로 확인하는 가점지표가 마련되어 있으나, 인건비 지급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향후 연구용역에서 인건비 지급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것을 '재가급여 평가지표 개선 연구용역('17.8월 착수 예정)'통해 평가지표 마련을 계획하고 있어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는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센터를 설치하여 요양보호사의 구인 및 구직을 중점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안내고지를 하고 있으므로 시정조치에 대해 이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2013년 9월에 설치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본으로 서울시 자체 계획으로 2016년에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설치한 사례 외

에는 어떠한 지자체에서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았음

-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09.5.18. 설립)에서 장기요양기관 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전문가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대구시 노인돌봄서비스 거점수행기관('13년 설립)에서 노인돌봄종사자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교육을 대체하여 수행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으나 교육사업 이외의 요양보호사의 구인·구직 지원업무 등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구인·구직 업무기능을 대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현재 마련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인건비 지급 비율안[19]은 급여유형별로 종사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율 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재가요양사의 비율이 전체 요양보호사의 86%를 차지하고 있고 시간제로 일하며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방문요양의 경우에만 인건비 지급비율을 84.3%로 정한 것은 합당하나, 요양보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비가 약 15% 남짓이라면 장기요양기관의 불안정한 관리가 예상될 수 있음

○ 재가요양보호사뿐 아니라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전체 요양보호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민간요양기관이 아닌 거점 공공요양기관과 같은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월급제를 비롯한 입금보장체계를 만드는 방안이 요구됨

- 현재 재가요양보호사는 시간제 근무로 요양기관에서 근무시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없을 때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런 상황으로 인해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인식에 자격자 대비 실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구인·구직, 상담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

19)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16.12.22.개정, '17.5.30.시행)된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급비율은 노인요양시설 57.7%,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53.5%, 주야간보호 46.3%, 단기보호 55.8%, 방문요양 84.3%, 방문목욕 49.1%, 방문간호 57.9%로 지정됨. 인건비 지급비율은 급여유형별 수가(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구성) 중 장기요양요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앞으로의 인건비 비율은 매년 수가 결정에 따라 인건비 비율도 조정될 것임

을 위임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라는 사항을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립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서선영	02) 788-4722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운영과	-	044) 202-3521

■ 음주폐해예방 종합대책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음주폐해예방 종합대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에 음주폐해예방 규정을 추가하고, 알코올·도박·마약 등 중독 치료 관리를 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음주폐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보호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 중임(윤종필의원 대표발의, '16.12.16)

- 알코올관리자문위원회 설치, 알코올 실태조사 실시, 금주구역지정, 주류광고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담고 있음

○ 음주폐해를 감소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

획(2016-2020)」수립 시, 절주 부분 대책을 수립, 추진 중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국민건강증진법」에 음주폐해예방 규정 마련 여부**
  - 법률안 상임위 계류 중 (이행 준비 중)
- **알코올·도박·마약 등 중독 치료 관리를 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여부**
  - 법 개정이 되지 않음 (미이행)
- **음주폐해예방 종합대책 수립 여부**
  - 음주폐해예방 종합대책은 국정감사 전인 2015년 12월에 수립되어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 (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음주폐해예방 규정을 마련 등의 관련 법안이 2017년 2월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음

- 해당 법률안에서는 금연구역 지정·관리를 법률에 근거한 것처럼 공공장소에서의 금주구역을 조례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주류광고 위반 시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담배광고 위반 시 처벌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인데 이는 음주폐해예방 정책의 일환으로서 의미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제19대국회 초에도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법안 소위심사까지 가기도 하였지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음

- 이를 요약하면,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주류광고 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 등임
- 구체적으로는 초·중등·대학교(연회, 예식, 숙박 등 수익사업 제외),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 의료기관(장례식장 제외) 내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 주류광고에 경고문구 표기,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 및 초·중등·대학교와 주변지역의 주류광고 금지 및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 매체에서의 주류광고 제한을 담고 있음

○ 현재까지 53개의 시·군·구에서 금주구역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음주폐해로부터의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홍보가 부족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장소 음주 규제가 실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금연구역 규제와 같이 근거 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그리고 알코올 중독 조기 선별 및 상담, 치료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20] 5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센터는 기존의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설치 근거가 없으므로 시급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에서 음주폐해예방 대책에는 ①국가 절주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②음주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 시행 및 건강형평성 제고, ③신뢰성 있고 조직적인 교육 홍보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작년 국정감사 조치는 아니지만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법 정비의 일환으로서, 주류 판매용기에 주류 판매용기에 과음은 건강에 해롭다는 기존 경고문구 외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 표기를 의무화하여[21] '95년 과음 경고문구 도입 이후 21년만에 경고문구를 개정한 것은 규제 강화를 통한 건강생활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음주폐해예방 종합대책을 추진의 일환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운영 중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알코올 중독 조기 선별 및 상담, 치료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임

20) 인구 20만 이상 지역(시·구)에 설치
2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6.3.2 공포, '16.9.3 시행)

□ 알코올 정책의 핵심과제인 음주폐해예방은 전반적인 주류소비의 감소와 함께 음주폐해 조장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통해 가능할 것임

○ 이를 위해 도입될 수 있는 우선적인 과제는 청소년 음주조장 환경 개선, 대학생 음주폐해 예방 감소를 위한 대학교의 정책 도입, 주류광고 제한 및 주류이용에 대한 접근도 제한들이 이루어져야 함[22)]

- 청소년 음주조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불법 주류 판매 모니터링과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하여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주류광고와 문화 스포츠 행사의 주류회사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대학생의 과음과 폭음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 주류 접근성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학교 당국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대학생의 음주행동과 규범 변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여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 주류광고 제한 및 주류이용에 대한 접근도 제한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류광고에 경고문구 표기,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 및 초·중등·대학교와 주변지역의 주류광고 금지 및 인터넷, 신문 등 매체에서의 주류광고 제한에 관한 법령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미국의 경우 각 주정부에게 효과적이라고 권고하고 있는 알코올 정책대안은 청소년 및 만취자 대상 주류판매 금지, 주세인상, 판매 요일과 시간 제한, 법적으로 허용된 주류판매 장소 수의 제한, 21세로 규정된 주류구매허용연령의 유지, 주류구매연령제한법에 대한 단속강화 및 주류판매처의 민영화 금지임(Guide to Community Preventive Services, 2012)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숙희	02) 788-4727
관련 부처	보건복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	044) 202-2861

22) 정영호 외,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음주감소 전략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응급환자 이송시스템 구축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응급환자 이송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ㅇ 응급환자 이송시스템 개선할 것 –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응급환자의 전원(轉院)이 결정될 경우 해당 병원이 이송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을 통해 이송병원과 이송수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보건복지부	ㅇ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조정센터(재난응급의료상황실)의 전원조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보건복지부	ㅇ 재난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응급의료상황실과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단체 및 공공기관 간 업무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ㅇ 전원 지원시스템 및 조정 총괄기관을 마련 중임

–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권역 간 전원은 전원조정센터에서 총괄하여 조정하며, 권역 내 응급환자 전원은 기존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원조정센터 기능을 강화할 예정임

ㅇ 권역 간 전원은 전원조정센터에서 총괄하여 조정하도록 조치함

– 전국 차원으로 전원조정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 등을 확보할 계획임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개정을 추진함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2016.10.20.)

–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치·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이 관계기관에 응급의료 관련 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응급환자 이송시스템 개선 여부**
-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응급전원협진망) 구축 중(2016.12월 ~2017.7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2017.6월 ~ 9월) 예정임 (이행 중)

■ **전원조정센터(재난응급의료상황실)의 전원조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여부**
- 2014년 11월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16년 서울, 경기, 대구, 경북지역으로 전원업무 지원대상지역이 확대되었고, 2016년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행)
- 인프라·인력 강화를 위하여 인력증원(상황의사 3 → 7인, 상황요원 10 → 20인 증원) 을 위한 인건비 증액예산을 확보하여 채용 중에 있음 (이행 중)

■ **재난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응급의료상황실과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여부**
- 법률안 상임위 계류 중 (이행 준비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은 현행 1:1 유선 접수·처리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응급 환자정보(증상, 진단, 검사결과 등)를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통한 일괄/개별전송 기능, 상황실 전화바로연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여부를 의뢰하고 확인 가능하게 하여 전원 조정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됨

- 지금은 요청병원이 전화를 통해 일일이 수용 능력 확인 및 전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이 시스템이 작동되면 환자 상태정보를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송하며 전원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전원 요청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다만, 응급환자를 전원해야 될 때, 전원병원 선정 지원은 해 주지만, 이송수단은 전원요청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함

○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전원조정센터의 인프라·인력 강화를 위하여 '17년 인력증원(13인 → 27인)을 위한 인건비 증액예산을 확보하였지만, 의사직 3인이 계속 결원인 상태로 충원된 적이 없어(2017. 6월 기준) 채용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중앙응급의료센터 내에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의 업무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23]이 상정(2016.12월)되었지만, 이후 논의된 바가 없음

○ 한편, 재난응급의료상황실(전원조정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은 전원 총괄 조정 업무 주관 부서를 명확히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음

-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에는 전원 조정 업무 기능을 가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전원조정센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가 병존하고 있어, 전원 조정 업무의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임

3. 개선방안

□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에서는 이송 수단은 전원요청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송 구급차의 확보도 전원지원 시스템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의 경우, 환자 이송을 요청하는 병원이 서울대학교병원의 '중증응급환자이송팀'에 의뢰하면 대기 중인 구급차와 의료진이 서울시내 어느 병원이든 24시간 출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	조숙희	02) 788-4727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	-	044) 202-2560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제2002750호 2016.10.20.)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공급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공급 개선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24] 배치를 포함하여 다음 사항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ㅇ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	ㅇ 농어촌, 격오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군 단위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보건복지부	ㅇ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 필요 –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시행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1996년부터 장학생 선발을 중단하였으나, 최근 공중보건의사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가 커지고 있으므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시행을 검토할 것
보건복지부	ㅇ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지에 간호사를 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취약지 근무 간호사 양성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간호장학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25]

ㅇ 공중보건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필수 배치 기관에 우선 배치하고, 의료접근성이 높은 도시 지역은 단계적으로 축소 배치하겠음

ㅇ 의료취약지에서 또는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할 별도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별도 대학 설립을 추진 중임

---

24)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
*법적근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1호

25) 대한민국정부,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보건복지부 소관)」, 2017.2

- 사명감·전문성을 갖고 장기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별도의 선발·양성 체계가 필요함

○ 다만 이를 위해 별도의 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하고 인력을 배출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과도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보완 방안을 강구하는 중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016년과 비교할 때 34명의 공중보건의사를 추가로 확보하여 배치하였음 (이행)**
- 2016년 대비 2017년 공중보건의사를 1.6% 증가시킴

■ **의료취약지 배치·역학조사 수행 등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 대학 설립 추진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음 (이행 계획 수립 중)**
- 보건복지부는 2020년을 개교를 목표로 재학생 600명(매년 신입생 100명) 규모의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포함) 신설을 준비 중임
  - 입학금과 수업료는 전액 면제지만 졸업 후 전문의를 취득하면 10년간 격오지,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
- 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의원외 새누리당 의원 75인, '16.7.11.)
  -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 등 10인'16.9.2.)

■ **2017년 현재 『공중보건장학의[26] 제도 보완 방안 연구』를 수행 중이며, 주요 내용으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재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보완 방안 마련 및 공중보건장학간호사의 필요성 등을 다루고 있음 (이행 계획 수립 중)**
- 과제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종구 교수

26) '76년 제정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취약지 근무를 조건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신설·운영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어 '96년에 장학생 선발을 중단함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2016년과 비교할 때 2017년에 공중보건의사 수를 34명 추가로 확보하였으나, 2015년과 비교하면 115명이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 동안의 공중보건의사 공급 급감 추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함

최근 5년 공중보건의사 수급 현황 ('17년 6월말 기준)

구 분	공중보건의사 분류			
	의 과	치 과	한의과	계
2013	2,411	485	980	3,876
2014	2,379	412	1,002	3,793
2015	2,239	361	1,026	3,626
2016	2,090	393	1,005	3,488
2017	2,124	447	1,051	3,622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7.7.19.)

□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의 사명감 부족과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공중보건의사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사안으로 보임

○ 해당년도 신규 편입 공중보건의사와 2·3년차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중앙직무교육 및 시·도 직무교육 등을 수행함으로써 공중보건의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 인력의 상당부분이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고 있어서 불안정한 공중보건의사 수급 문제와 전문성 부족 문제가 상존하므로 공중보건의사의 양·질을 모두 고려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3. 개선방안

□ 의료취약지에 적정 수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연수기회 부여 등 재교육과 경력개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고 보수와 복지여건 등 경제적 요인을 개선하여 근속연수를 장기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요구됨

○ 『공공보건의료 인력 관련 인식조사 결과』[27]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중보건장학의를 마친 의료인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의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보장'과 '주거지원', '자녀 교육 지원' 등을 필요로 하므로 향후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시행할 경우 이러한 지원책을 병행하여 장학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 요구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02) 788-4725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	-	044) 202-2510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044) 202-2810

■ 의사-한의사 협진체계 확대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양한방 협력 및 협진 확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양한방 협진체계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협진병원도 확대할 것

27) 이종구, 「공공보건의료 인력 관련 인식 조사 결과」, 한국보건행정학회·대한공공의학회, 2016.11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1차 시범사업('16.7~'17.6)에서는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차 시범사업('17.7~'18.6)에서는 참여기관을 확대토록 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당초 1단계 시범사업이 '17년 6월에 완료되고, 같은 해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시범사업의 결과자료 수집 및 평가가 늦어지고 있어 2단계 시범사업 진행은 늦어짐 (미이행)**
- **'17년 3/4분기 중에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기관 확대, 협진수가 적용 등을 포함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미이행)**

1단계 시범사업 현황

(추진경과) 1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건정심 보고('16.6)
(추진내용) 시범기관에 한하여 의·한의 협진 시 후행행위 급여를 인정('16.7~)
(목적) 협진 기초 자료 생산, 제도 개선 사항 발굴
(급여대상) ① 건강보험요양 목록 상 급여 대상에 한정(단, 약제 제외) ② 같은 날, 동일의료기관 내 의·한의 간 협진 시

[현행] 협진 후행행위 비급여 → [시범적용] 후행행위 급여를 적용하여 본인부담 경감 및 한 곳에서 의과·한의과 진료로 환자 편의 증진
(시범기관)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기관 참여

구 분		종 별	요양기관
국공립	기관내	상급종합	① 부산대학교병원
		종합병원	②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③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병원	④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⑤ 서울특별시북부병원
	기관간	상급종합–한방병원	⑥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종합병원–한방병원	⑦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
		종합병원–한의원	⑧ 충청북도청주의료원 – 충청북도청주의료원부설한의원

구 분		종 별	요양기관
민간	기관내	종합병원	⑨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종합병원	⑩ 나사렛국제병원
		한방병원	⑪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병원	⑫ 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기관간	상급종합-한방병원	⑬ 경희대학교병 – 경희대학교한방병원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자료가 수집 중에 있어 평가가 어려움

3. 개선방안

□ '09.1월「의료법」개정[28]을 통하여 의-한의 간 상대 진료과의 교차개설 및 교차고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의 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양 직역간 의료범위 및 의료기기의 사용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제도화된 협진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양 직역간 대화채널 복원을 위한 유관기관의 노력과 함께 협진에 대한 표준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협진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서창식	02) 788-4726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	–	044) 202-2579

28)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인구정책 총괄 전담기구 설치 등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인구정책 총괄 전담기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사부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 설치 등 컨트롤타워 설치 및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보건복지부 內 인구정책 분석·평가 조직·인력 보강('16.7월)

○ 저출산 관련 핵심대책 보완 및 아젠더 발굴 등을 위해 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개선기획단 구성·운영 예정('17.3월~)

○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부처 신설 등 다양한 대안 검토 예정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부 內 인구정책 분석·평가 조직·인력 보강(이행)**
  - 보건복지부 내 인구정책 분석평가과 신설('16. 7. 26. 7명)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기 민간위원 위촉('17. 3. 6. 9명)
- **저출산 관련 핵심대책 보완 및 아젠더 발굴 등을 위해 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개선기획단 구성·운영 예정**

(이행)
- 저출산 관련 핵심대책 보완 및 아젠더 발굴 등을 위해 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개선기획단 구성·운영('17. 3. 24. 35명)

■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부처 신설 등 다양한 대안 검토 예정(대안이행 중)**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설치 검토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내 인구정책 분석평가과를 신설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기 민간위원을 위촉한 것은 간사부처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저출산 관련 핵심대책 보완 및 아젠더 발굴 등을 위해 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개선기획단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설치 검토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 이행 준수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약내용**
-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상 및 역할강화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논의내용('17.6.8 국정위 공식 브리핑)**
- 일자리창출, 4차산업혁명, 저출산해법 모색을 국정 3대 우선과제로 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변모시킬 것임

3. 개선방안

□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14개 부처 중앙행정기관의 장(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음

○ 한편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내 운영

지원단이 설치된 상태에서 분석평가과가 추가 신설된 상태임

□ 이러한 구조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비상설기구의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고 정책의 개발·평가 기능보다는 부처별 정책의 수집하고 망라하여 심의하는 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음

□ 따라서 대통령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 첫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상설 전담기구로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식 부처와 같이 실질적인 업무조직의 형태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 내의 운영지원단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직속의 운영지원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저출산 관련 핵심대책 보완 및 아젠더 발굴 등을 위해 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은 정책의 개발 및 사전·사후 평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상설 전문인력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행의 14개 부처가 망라되어 참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를 분리하여 국민의 핵심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주요 부처가 집중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함. 가령 저출산 대응은 국민의 핵심 정책수요인 교육, 고용·소득, 주거 등의 유관부처인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정도가 집중 참여하고, 여타 부처는 관련 정책들을 조정함으로써 부응하는 방식으로 재편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02) 788-4724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	-	044) 202-3375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전 방안 검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전 방안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ㅇ 지자체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성희롱 예방상담 및 교육,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체조교육, 취업지원, 장기요양수급자 및 가족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
	ㅇ 지자체 장기요양요원센터의 위탁운영을 시설장이나 협회같은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2)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ㅇ 장기요양요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함('16.11.8.)

ㅇ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지자체 조례 제정 권고함

ㅇ 장기요양센터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조를 요청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업무 규정 지자체 조례 제정**
- 장기요양센터 업무를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완료하였고('16.11.8.) 현재 지자체의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규정 및 권리보호와 관련된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음(이행 중)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호사의 교육사업 위탁**
- 현재 서울시 자치구 2개 지역에서만 위탁하여 운영 중임(이행 중)

2)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2016년 5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조항이 신설되면서 11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 3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지자체 조례 제정이 권장되었음. 이에 따라 현재 6개 자치구(서울시의 경우 2016년 1월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제외됨)에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장기요양요원 권리보호와 관련된 조례를 지자체별로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6개의 지자체[29]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앞으로도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6개의 지자체에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들을 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장기요양요원의 권리향상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열거해 놓았으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없음

○ 현재로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 부족하다보니 장기요양요원의 권리향상을 위한 교육을 운영할 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라 교육이나 지원

29)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는 총 7개의 지자체에서 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2016년 1월 7일에 이미 제정되어 있어 2016년 5월 23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8장의2가 개정추가된 이후 만들어진 조례는 총 6개로 다음과 같음.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2017.4.12. 제정),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체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2017.4.28. 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2017.5.23. 제정), 「무안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2017.5.29. 제정), 「강원도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7.6.16. 제정),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2017.7.17. 제정)

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조치 이행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

지자체	기관명 (주소)	설치일 (설립근거)	위탁단체	지원대상	주요업무
서울 은평구	서울시어르신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13.9.1 (조례 9조)	(사) 보건복지자원 연구원	노인돌봄 종사자	건강관리상담, 고충상담 등
서울 구로구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16.11.8 (조례 9조)	나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노인돌봄 종사자	건강관리상담, 고충상담 등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7.7.

3. 개선방안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한 설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향상,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및 조사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센터가 필요함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질적관리 측면에서도 매뉴얼을 확보해 체계적인 현장 맞춤형 교육(실습 강화), 건강지원, 권리옹호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향상을 위해 근로기준법 안내, 성희롱 예방상담 및 교육, 취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센터의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위탁기관 및 협회를 통해 위탁운영 지원이 가능해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서선영	02) 788-4722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장기요양지원과	–	044) 202-3521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 설치 방안 검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요원 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간접인력(시설장, 사무국장, 조리원 등)의 발전과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종사자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의 기능들을 상당부분 수행 중이므로 추가적인 센터 건립 이전에 현행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지원 중임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장기요양기관의 애로사항 청취, 컨설팅, 장기요양관련 연구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등임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간담회[30]를 시행하였고,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에서는 장기요양관련 연구를 수행중임

○ 장기적인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임

30)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인지역의 지사에서 시행중이고, '15년에는 11,904명의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발전과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방안 검토**
  -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의 기능들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체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원 강화중임 (이행 중)
-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 설치 방안 검토**
  -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관련 업무들을 지켜보며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미이행)

2)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의 기능[31]들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만 강화하는 형식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와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업무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안은 모호한 상태이므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발전과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 조치 요구를 이행하는 데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와 교육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와의 물리적 거리가 먼 지역의 장기요양요원들은 거점이 되는 공적요양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역량강화교육이나 체계적 관리는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장기요양요원을 제외한 타 종사자)의 직종별 종사자 교육은 타 법에서 보수교육[32] 등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31) 장기요양기관의 애로사항 청취, 컨설팅, 장기요양관련 연구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등이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의 기능임
3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식품위생법에 따른 보수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부서명	주요업무	세부 수행 업무
요양자원부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관리	ㅇ 종사자 고충 상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리 ㅇ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관리(공단 홈페이지) ㅇ 정보공유협의회, 건강장해 예방교육, 대표자 설명회
요양관리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ㅇ 치매전문교육 ㅇ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ㅇ 사회복지사 교육
요양기준부	수가 및 산정기준 마련	ㅇ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설명회
요양조사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	ㅇ 부당청구 예방교육
요양평가부	장기요양기관 평가	ㅇ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설명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7.7.

ㅇ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요원센터의 기능적인 역할들을 위임하며 장래 장기요양요원종합지원센터 설치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 하였지만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 및 관리인력 등에 대한 장단기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지자체에서의 장기요양요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관리인력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센터 설치 및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거점 공공 요양기관을 선정하는 인증제를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

ㅇ 현재의 영세한 민간요양기관 난립과 하향식 과다경쟁으로 인한 민간시장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인증제 도입으로 지자체에서 민간기관에 공공요양기관으로 선정하는 체계 및 민간기관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 규제를 가할 수 있어야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안이 될 것임

□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의 구분이 필요함

ㅇ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및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수행이 주가되고,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요원의 급여를 포함한 노동환경 및 인적 관리의 기능이

주가 되는 역할구분이 꼭 필요할 것임. 이에 따라 지자체는 현장에서의 장기요양요원센터의 설치를 통한 돌봄서비스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장기요양요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민간기관이 인건비지급이나 근무요건 및 처우개선에 있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지표를 통한 감시 및 규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서선영	02) 788-4722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장기요양지원과	-	044) 202-3521

■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지원 대책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에 대한 의료보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발생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것
보건복지부	비급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를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로 전환, 의료비 분할상환, 의료비 긴급대출 등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이 낮아 비급여로 둔 항목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전환하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보험재정적 측면도 고려하여야 하며, 비급여에 대한 사적 관리 필요 문제 등이 제기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때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므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은 급여화를 추진하겠음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제도화 추진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대한 통계 산출 여부 (대안 이행)**

–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대한 통계 자료를 산출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의료패널조사[33] 등을 활용한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제도화를 추진하여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함[34] (대안 이행 중)**

– 저소득 중증질환 가구 및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50~70%)를 최대 2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의료패널조사 등을 활용한 표본 조사는 의료비 실태 파악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통계산출의 대안으로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한시적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

---

33)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보건의료이용실태와 의료비 지출수준,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한국의료패널」조사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에 1차년도 본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조사를 진행함

34)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국민행복 분야 합동 업무보고」, 보도자료, 2016.1.20.

- 2013년~2015년 기간에 한시사업으로 시행되었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2016년, 2017년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16년의 경우 대상자 규모는 건강보험료로 소득분위를 확인한 1만 5천 명이며, 확정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였고 1인 평균 300만 원을 지원받음
- 지원 사업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경우 의원입법발의가 진행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2016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35]에 따르면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이 40%이상인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2010년 3.68%, 2011년 4.23%, 2012년 3.76%, 2013년 4.39%, 2014년 4.49%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분석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패널조사의 단점인 기존 가구의 이탈, 패널의 노령화를 고려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이 증가한 것은 유의하여 검토할 부분으로 보임

□ 의료패널조사를 통해 확인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생활비가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 13.46%였으며, 분위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생활비가 가장 높은 5분위의 경우 0.26%가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한 가구는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고, 1세대 가구일 확률이 높았으며, 도단위 거주 가구의 비율이 높았음

○ 65세이상 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 장애인,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일수록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높았음

○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자가 없는 가구일수록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높았음

35) 서남규 외, 『2016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6.12.31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02) 788-4725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	044) 202-2710 044) 202-2730

■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실시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정량조사와 더불어 정성조사를 통해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할 것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성조사도 함께 실시할 것

2)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16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FGI방식의 정성·심층조사를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함

- 결혼 및 출산과 직접 관련있는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정성조사 실시함
- '16년 10월 계획수립 → '16년 11월 계약 → '16년 12월 조사완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실시**
– '16년도 국민인식조사 실시하여 보고서 발간함 (이행)

■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시 정성조사 실시**
– 결혼 및 출산과 직접 관련있는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정성조사 실시함 (이행)

2)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2016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고령화 현상 및 대처방안에 대한 평가 등을 만 19세~6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함. 전국의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욕구를 파악한 점에서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조사내용에서 결혼, 자녀출산, 자녀양육, 직장내 제도를 통해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을 조사하고 있으나 현재 타 행정부(여성가족부)에서 이루어지는 「일·가족 양립정책」관련 국민의식조사[36]의 내용과 중복되는 면이 많음

–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욕구를 파악한 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에 대한 인지도는 약 30%정도 나타났으나 정책시행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다른 국민인식조사와는 달리 문항에 정책들을 소개하고 인식 및 평가를 측정했다는 점에서는 욕구파악에 효과적이나, 정책문항에 포함된 정책들이 많지만 조사대상자의 기입란은 한가지여서 정책마다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이 조사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조사이지만 저출산에 대한 조사가 3/4을 차

36) 2016년 9월 여성가족부에서는 정부 주요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를 실시하여 11월 결과를 발표함

지하고 고령화에 대한 인식 및 정책조사는 주로 노인의 일과 노후소득에 맞추어져 있어 고령화 사회가 가져오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국민이 체감하는 면들을 측정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조사」가 2008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정량조사로 국민들의 태도나 가치관 조사 및 정책에 대한 욕구 분석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2016년 국민인식조사에서는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 '혼인과 출산에 대한 진입장벽', '문제해결을 위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중심으로 정성조사를 실시함.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성조사를 실시한 점에 있어 시정내용을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정성조사의 효과성이 적을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음

- 결혼과 출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 수요자를 대상[37]으로 정성조사를 통해 보고자 하였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진입장벽, 그리고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량조사에서 결과로 도출된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정량조사 결과를 정성조사에서 서술해 놓은 듯한 결과는 정성조사라는 형식적인 면만을 갖추었을 뿐 이후의 정책형성에 있어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정성조사의 초점이 정량조사와 마찬가지로 저출산문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고령화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에 대한 요구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2008년부터 이루어진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조사」가 정책입안에 있어 효과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나 정책인지도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인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전국민에 대한 의식조사이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기획단'에서 담당하여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변화를 파악하고 정책수요자의 욕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진 「저출산·고령화 국민의식조사」는 정책에 대한 인지

37) 미혼남, 미혼녀, 기혼유자녀 남, 기혼유자녀 여, 기혼무자녀 남녀 5그룹(각 그룹당 8명 이내)

도 및 평가를 반영하여 국민의식의 변화 및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나 매년 다른 여론조사전문회사와 변화된 설문문항 등으로 기술적인 통계만을 제시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어떠한 집단이 어떠한 요인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구축과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조사」에는 저출산의 문제만을 주로 다루고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미흡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음.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세대간 갈등 및 이해관계에서의 대립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저출산 문제만을 강조한다면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의 자세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것임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일에 대한 인식만을 주로 조사한 내용은 노인에 대한 이미지, 노인이라는 연령차별적 사회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임.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노인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있지만 정책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은 원인을 재고하고 탐색하는 국민의식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책들은 단순히 보건복지부만이 아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이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이므로 단순히 인구정책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닌 삶의 조건을 바꾸는 정책으로 관점을 전환하여 각 부처 합동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각 행정부마다 연계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서선영	02) 788-4722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분석평가과	-	044) 202-3747

활동보조인의 처우 및 업무범위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활동보조인의 업무범위 및 처우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ㅇ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활동보조인의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활동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
	ㅇ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수가 인상, 호봉제 도입, 운영비 분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ㅇ 활동보조인의 업무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ㅇ 활동보조서비스 단가의 단계적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자문단[38]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논의를 통해 활동지원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ㅇ 다른 돌봄서비스 수가 수준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활동보조인력 처우 개선방안을 검토 중임

ㅇ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활동 보조'는 활동보조인력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활동보조인력이 이용자의 가족이 아닌 이용자에 대한 활동보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여 2017년 지침에 반영할 예정임

38) 장애인단체,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학계 등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용자 교육 시 활동보조인력의 업무범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여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자문단 등과 개선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하여 활동보조가 불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축소함 (이행 중)

■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수가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여부**
–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수가는 인상하였으나, 다른 유사서비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미이행)

■ **활동보조인의 업무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여부**
– 이미 관련 규정에 업무범위를 구체화 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행)

2)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보건복지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자문단을 구성하여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를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에서 직계 혈족의 배우자로 개정하여 직계혈족의 형제·자매가 제한 없이 활동보조가 가능하게 한 것은 부분적으로 활동지원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활동보조인의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이나 전반적인 처우개선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2016년 9,000원에서 2017년에는 9,240원으로 인상하였지만, 유사한 사회서비스인 노인돌봄서비스의 방문서비스는 시간당 단가가 9,800원,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방문지원 서비스는 10,200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경우는 240분 기준 단가가 45,090원 임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볼 수 있음

- 현재 노인돌봄서비스 수준의 단가를 목표로 기획재정부와 예산과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음
- 또한 활동보조인력에 대한 호봉제 도입과 고용안정화 및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는 없는데, 향후 유사한 사회서비스 제공자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큰 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활동보조인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용자의 부탁을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용자가 급여제공계약에서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활동보조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활동보조 급여의 범위, 서비스 요구방법 및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개선방안

□ 활동보조인력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비슷한 사회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사업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교육과정 240시간(이론 80시간, 실기실습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이수 후 국가자격시험 합격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경우도 사회복지사로 서비스제공자를 제한하고 있음

- 하지만 활동보조인력의 경우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39]에도 기본교육인 이론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만 이수하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따라서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서비스 제공자들처럼 자격제도 내지는 이에 준하는 충분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9) 제27조(활동보조인)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항 생략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대명	02) 788-4728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	-	044) 202-334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공정한 입원적정성 심사 방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다음 사항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입원 적정성 심사를 공정하게 실시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된 전 건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전담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전문의학적 측면에서 입원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음

- 입원적정성 심사는 수사기관 등에서 보험사기행위 수사 등을 위해 대상자의 진료기록부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입원의 필요성 및 적정 입원일수를 의뢰기관에 회신하는 업무임. 이를

통해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017.2.1.부터 입원적정성 심사에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공공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있음

공공심사위원회 구성현황

- 운영 목적: 보험사기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명시됨에 따라 입원적정성 심사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공공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1)]
- 운영: 2017년 2월부터 시행(월 1회 개최)
- 위원회 인원: 총 19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인, 의학단체 추천 외부위원 9인(대한의학회(2), 대한의사협회(2), 대한병원협회(2), 대한개원의협의회(2), 대한한의사협회(1))
- 자격기준: 의사, 한의사 면허취득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자로서 대학·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자
- 임기: 2년(2017. 2. 1. ~ 2019. 1. 31.)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수사기관·검찰이 제출한 진료기록부(의사처방기록, 경과기록, 수술기록 등), 간호기록부(투약기록, 간호기록 등), 검사(진단)결과지 등을 토대로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별로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수행하고 있음 (이행)**
- **의뢰기관(검찰, 경찰 등)은 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회신자료를 참고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제11조의 처분을 하고 있음[2)] (이행)**

---

1)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①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이하 "입원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시행(2016.9.30.) 이전부터 수사기관 등의 의뢰에 따라 입원적정성 심사를 하고 있으나, 법 시행 이후로는 별도의 공공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원 적정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강화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외부의 의뢰 건에 대한 수동적 심사만 수행함에 따라 심사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외부 피드백은 이뤄지고 있지 않는바, 심사의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보화된 자료를 유형별로 공개함으로써 보험사기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심사결과(적정, 부적정 의견 등)에 대한 자료(통계)가 별도로 작성·관리되지 않아 적정성 심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보험사기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심사평가원이 필요시 의뢰기관에 처리결과 등을 요청하고, 적정성 심사결과를 정보화할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수 있음

▌최근 3년간 입원 적정성 심사 현황▐

(단위: 건)

구 분	'15년	'16년	'17년 6월말
접수건수	19,271	34,554	15,493
처리건수	21,750	24,434	5,319

3. 개선방안

□ 입원적정성 심사결과를 보험사기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등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심사기준 마련과 심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자료관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서창식	02) 788-4726
관련 부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사관리실	공공심사부	-	02) 2182-3852

의료질평가지원금 배분의 평가기준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하여 지방 의료기관의 의료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배분과 관련한 다음 사항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원이 지방 의료기관에 지나치게 과소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역의료기관의 현실을 감안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지역거점병원의 현실을 반영하고, 의료질 향상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음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 개요

○ '의료질평가지원금(건강보험 수가)은 국민의료비 부담경감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 축소개편 추진과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으로 의료의 질을 평가하여 기관별로 차등 보상하기 위해 '14.4월 도입됨

- 선택진료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15년 1,000억원 규모, '16년~'17년 5,000억원 규모 내에서 지원됨
- 평가지표, 방법 및 가중치 등 평가에 관한 주요내용을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질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 보건의료정책실장(위원장) 등 정부,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관련 전문가로 구성(16명)
- 평가대상기관은 평가대상 기간(12개월) 동안 진료 실적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임('15년 316기관 → '16년 322기관 → '17년 327기관)
- 평가지표로는 5개 영역에 56개 세부지표가 있으며, 지표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점수를 산출, 3개 그룹별 종합점수의 백분위순으로 등급화하여 상대평가를 하고 있음

영 역 / 지표 개수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 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56	27	9	7	8	5

중요도, 변별력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지표별로 가중치를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음

구 분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 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영역가중치		65%	10%	10%	8%	7%
영역 내 가중치	상	3(4.0~5.0%)	2(1.5%)	2(2.5%)	4 (0.8~2.6%)	2(2.25%)
	중	20(2.4%)	7(1.0%)	5(1%)	2(0.4%)	1(1.5%)
	하	4(1.0%)	–	–	2(0.2%)	2(0.5%)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개정하여 평가영역별 지표 및 가중치를 조정함(대안 이행, '17.4.11.)**
- **「2017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17.4.11.), 현재 평가 수행 중에 있으며, 8월 중 평가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임(대안 이행, '17.4.11. ~ 현재)**
- **평가영역별 등급화 구간 등 세부 평가방법 조정을 위해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 예고를 진행중임(대안 이행,'17.7.18~8.7)**
  – 최종 평가결과에 대한 등급구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은 '17.9월 이후 분부터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수가청구를 하게 됨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17.4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개정을 통해 평가영역별 지표와 가중치를 조정한 것은 의료기관 등 유관단체의 개선 의견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보임. 즉, 최근 보건의료분야의 현안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새로운 지표로 추가하고, 연구비 지출 기준 구체화, 임상시험, 교육수련 등의 가중치를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여 조정하였음

○ 선택진료 비용을 급여화함에 따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완화되는 효과는 있으나,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는 요인도 되는바, 선택진료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16.9월~'17.2월 기준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기관이 266개 기관중 서울 및 인천·경기 지역 기관이 114개로 전체 42.4%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총 252,238백만원 중 162.116백만원인 64.3%로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국정감사 시정요구의 취지가 정책효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바, 상대적으로 의료여건이 열악한 지방의료기관의 의료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 및 가중치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기관, 백만원)

종 별	'15.9월~'16.8월		'16.9월~'17.2월	
	기관수	실청구액	기관수	실청구액
전 체	266	112,832	269	252,238
서울	53	43,896	52	105,924
인천·경기	60	24,968	62	56,192
강원	12	2,689	12	5,437
대전·충청	30	8,802	29	18,736
대구·경북	28	8,609	28	17,791
부산·울산·경남	41	15,057	44	29,515
광주·전라	35	7,429	36	16,574
제 주	7	1,382	6	2,069

※ 산출기준

'15년도 의료질평가: '15.9.1.~'16.8.31. 1년간 건강보험 진료분을 대상('16.12월까지 심사분)

'16년도 의료질평가: '16.9.1.~'17.2.28. 6개월간 건강보험 진료분을 대상('16.12월까지 심사분)

3. 개선방안

□ 의료질평가지원금이 단순히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여 전반적 국가 의료질 향상을 유도하는 평가체계로 발전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전향적 평가와 상대평가제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행적 평가 및 절대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의료기관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의료질 개선 노력의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병원 종별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서창식	02) 788-4726
관련 부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수가개발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06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건강검진기관의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음주폐해예방 종합대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검진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장비 소독이 미흡한 경우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시경 장비 소독관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통합 2주기('15~'17) 검진기관 평가에 평가대상을 확대(5,509개소 → 11,136개소)하고, 행정처분이력을 평가결과(감점)에 반영함으로써 그 기준을 강화함

○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매뉴얼을 마련('16.12.)하고, 검진기관 평가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17.)할 예정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시경장비 소독의 적정 관리 기준 관련 고시(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음

– '소독과정 준수' 및 관리대장 서식, 보관방법, 환수기준을 건의함('17.1.)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건강검진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수행 여부**

– 평가대상 검진기관 확대, 전문학회 인증점수 반영 및 행정처분이력을 평가결과에 감점반영한 검진기관 평가 지침서를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음(2016년 국정감사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조치라 이행 여부의 판단이 어려움)

– 2016년 12월에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매뉴얼을 마련함 (이행)

– 2017년 6월에 「검진기관평가 효과 및 평가지침 타당성 분석 연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 중임(이행 중)

■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장비 소독관리 관련 규정 마련 여부**

– 암검진 실시기준에 내시경 소독 시 일련의 과정(전세척, 세척, 소독, 헹굼, 건조, 보관,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등)이 포함되도록 내용을 신설하고, 내시경 세척 및 소독 미 준수 시 해당 수검자의 검사비용을 환수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17.5.1. 개정) (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건강검진 질적 제고를 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적용하는 개정된 검진기관 평가 지침서를 2015년 초에 마련한 것이라 작년 국감감사에 대한 시정조치라고 하기 어렵지만, 평가대상 검진기관을 확대하고 행정처분이력을 평가결과에 반영하여 매년 평가 및 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라 평가할 수 있음

– 평가대상 검진기관을 확대(5,509개소 → 11,136개소)하였는데, 이는 전체 검진기관 19,073개소의 58.4%이지만 이전보다 2배 확대한 것임[1)]

– 대상기관 부담 경감 및 학회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학회[2)] 인증기관 인증점수 그

1) (기존) 종별에 따라 상이, 병원급이상: 연간 검진건수 10건 이상, 의원급: 연간 수검자수 300명이상 → (변경) 검진기관 종별(병원급이상, 의원급)에 관계없이 검진유형별(일반, 영유아, 구강, 5대암) 연간('14년도 실적) 검진건수 50건 이상 실시 기관

2) (기존) 진단의학, 병리학 분야 → (변경) 내시경학(위·대장) 추가

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에 내시경 분야도 추가하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인증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음

- 건강검진 관련 행정처분[3] 이력이 있는 경우 검진기관 평가 총점에서 10점을 감점하도록 새로 반영하였음

○ 또한 건강검진 질적 제고를 위한 조치로서 평가결과 미흡기관 사후관리 매뉴얼을 작년 12월에 마련하였는데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검진분야에 따라 공단과 국립암센터로 나누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미흡"등급[4] 기관에 대하여 전문의 또는 공단직원이 전체 검진기관을 2차에 걸쳐 방문하여 점검함
- 다만, 방문점검이 대상기관 규모별 사업계획에 따라 서면점검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서면점검으로 치중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2차 점검 후에도 개선 정도가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미흡" 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실시 중인 연구용역은 통합 1·2주기(2012~2014년/ 2015~2017년) 동안의 검진기관 평가의 효과와 평가지침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검진기관 평가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여짐

- 현행 검진기관 평가지표 및 지침서가 2012년에 실시한 「검진기관 평가지표 개발 연구」용역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임

○ 암검진 실시기준에 내시경 소독 관련 내용을 새로 추가하고, 내시경 세척 및 소독 미준수 시 환수기준을 신설한 것은 병원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로도 평가될 수 있음

---

3)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우수(90점이상), 보통(60~90점미만), 미흡(60점미만)

3. 개선방안

□ 검진기관 평가 통합 1·2주기(2012~2017년)를 거친 시점에서는 평가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미흡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숙희	02) 788-4727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국 건강관리실	건강증진과 검진평가부	-	044) 202-2828 033) 736-3563

국민연금공단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장애등급심사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민연금공단	대면심사를 확대하는 등 장애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신장장애 2급도 다른 장애 유형과 동일하게 의무 재판정을 1회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현행 장애인 등급 제도를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욕구친화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2) 국민연금공단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민연금공단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이의신청 사례 분석을 통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개선, 원심사(처음심사)에 적용하여 이의신청을 최소화 함

–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중심의 대면심사 대상을 지적·자폐성 장애까지 확대함(시범실시 후, 확대방안 모색 예정)

○ 매 2년마다 신장장애 재심사를 하되, 장애인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신청·서류제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요양급여내역과 질병코드 확인)하는 확인 방법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2017년 3차 시범사업 위탁수행

– 정부에서 장애등급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단은 제도 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적극 지원 중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국민연금공단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국민연금공단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대면심사를 확대하는 등 장애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실화 방안 마련 수행 여부**
– 대면심사 대상을 10월 중으로 확대하고, 이의신청 사례를 분석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반영할 예정 (이행 중)

■ **신장장애 2급 의무재판정 제도개선 이행 여부**
– 매 2년 마다 재심사를 하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 중 (대안이행 중)

■ **장애등급제도를 장애인의 욕구친화형으로 개선여부**
–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제3차 시범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음 (이행 중)

2) 국민연금공단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국민연금공단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사전적으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심사 시 대면심사 대상을 지적·자폐성 장애까지 확대하고, 이의신청 사례들을 분석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이를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시정조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신장장애 2급에 대한 의무재판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재판정 시 신청 및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모색 중임

– 신장장애 2급 의무재판정 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내역과 질병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체하여 간소화하려는 취지인데 이는

의무재판정을 1회만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를 이행한 것은 아니지만 신장장애인들의 절차상 불편을 줄인다는 점에서 차선책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해 장애등급제 개편 제3차 시범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으므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장애등급제도를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개선방안

□ 장애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사전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면심사 뿐만 아니라 심사결과를 통보하기 전 심사대상자에게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여 부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러한 대면심사나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복지전문가 등의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임

□ 신장장애 2급 의무재판정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정보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임

○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 진료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키는 개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장애등급제도를 장애인의 욕구친화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장애등급제 개편 제3차 시범사업에서 새로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지원조사 판정도구와 장애아동용 조사표가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또한 이를 조사하기 위해 복지코디(국민연금공단 조사원)들이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 장애상황, 그들이 처한 사회·환경적 여건을 중심으로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전담하고 있는데 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해서는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고용 안정 보장도 고려해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대명	02) 788-4728
관련 부처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장애인지원사업기획부	-	063) 713-6002

식품의약품안전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인체이식 의료기기 추적관리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하여 인체이식 의료기기 추적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에 대한 추적관리 강화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함 ('17년, 1,445백만원)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17.11월)

- 추적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부작용 발생시 관련 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1])과 실시간 연계 시스템 운영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탁으로 의료기기 수입통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사용자(의료기관) 환자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부작용 제품 사용 환자에 대한 신속한 추적관리를 통해 피해 확산 방지

○ 부작용 다빈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수입)부터 사용까지 계통 점검 실시('17.11월)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7년도 의료기기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사업예산 1,445백만원은 2013년도에 이미 개발된 동일 시스템의 기능보강(업그레이드)을 위한 예산으로 정상 집행되고 있음(이행)**
- 종전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의료기기 공급자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정보 공유이었으나,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최종 수요자인 의료기관이 시스템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의 추적관리를 더욱 용이하게 함
- 관계기관 간 연계성과 검색과 통계 등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개발됨에 따라 위해성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 즉시 사용중지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착수보고회('17.6.8) 개최, 매주 업무 진행 사항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이행 중,'17.5.25~'18.1.20)**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상시모니터링체계 구축'사업 설계단계 감리('17. 8월) 및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17. 9월)
- 부작용 다빈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제조(수입)부터 사용까지 전주기 점검 실시 예정('17.11)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완료('17.12)
- 의료기관 추적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예정('17.12)

***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사용량이 많은 의료기관(2개소)을 선정·실시**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생산(수입) 단계부터 최종 사용자까지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는 경우,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위해 발생 시 신속한 추적관리로 국민안전을 도모하는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보임

- 부작용 등 위해 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사용자)과의 공조를 통해 환자정보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품질불량 등으로 부작용 발생 시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 허가의 취소·변경 등을 즉시 조치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기기의 부작용·안전성 정보,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의료기관 및 사용 환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기능이 구현됨에 따라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종류(의료기기법 제29조)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48개 품목(1~48번)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4개 품목(49~52번)

연번	품목명	연번	품목명
1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4]	27	콜라겐사용인공혈관[4]
2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용전극[4]	28	헤파린사용인공혈관[4]
3	혼합재질인공심장판막[4]	29	윤상성형용고리[4]
4	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4]	30	이식형인슐린주입기[4]
5	비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4]	31	유헬스케어 이식형 인슐린주입기[4]
6	이식형심장충격기[4]	32	이식형말초신경무통법전기자극장치[4]
7	전동식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4]	33	이식형보행신경근전기자극장치[4]
8	실리콘겔인공유방[4]	34	이식형요실금신경근전기자극장치[4]
9	이식형심장충격기용전극[4]	35	이식형척주측만증신경근전기자극장치[4]
10	인공측두하악골관절[3]	36	혼수각성용미주신경전기자극장치[4]
11	특수재질인공측두하악골관절[4]	37	경동맥동신경자극장치[4]
12	인공안면아래턱관절[4]	38	이식형전기배뇨억제기[4]
13	특수재질인공안면아래턱관절[4]	39	척수이식배뇨장치[4]
14	혈관용스텐트[4]	40	인공심장박동기리드어댑터[4]
15	관상동맥용스텐트[4]	41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수리교체재료[4]
16	장골동맥용스텐트[4]	42	특수재질인공엉덩이관절[4]
17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3] (이식형)	43	특수재질인공무릎관절[4]
18	발작방지용뇌전기자극장치[4] (이식형)	44	특수재질인공어깨관절[4]
19	진동용뇌전기자극장치[4] (이식형)	45	특수재질인공손목관절[4]
20	이식형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4]	46	특수재질인공팔꿈치관절[4]
21	이식형통증제거용전기자극장치[4]	47	특수재질인공발목관절[4]
22	이식형전기자극장치용전극[4]	48	인공엉덩이관절(접촉면 금속)[3]
23	보조심장장치[4]	49	개인용인공호흡기[3]

연번	품목명	연번	품목명
24	횡격신경전기자극장치[4]	50	저출력심장충격기[3]
25	중심순환계인공혈관[4]	51	고출력심장충격기[3]
26	비중심순환계인공혈관[3]	52	호흡감시기(상시착용)[2]

3. 개선방안

□ 2016.12월 개정「의료기기법」제32조의3(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및 32조의4(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운영 등)[2]는 허가부터 제조·수입·판매·사용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현재 개발중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 기능상 중복 우려가 있는 바, 시스템 간 기능적 연계가 자원낭비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개정 법률에 따라 제조업자 등은 의료기기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의료기기에 고유식별코드(표준코드)를 부착해야하는데, 이는 같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52개 품목도 포함됨

○ 4등급 의료기기부터 1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월간 공급내역 보고는 '18.1월부터 시행하고, 표준코드부착은 '19.1월부터 시행하되 3등급의료기기는 2020년부터, 2등급의료기기는 2021년, 1등급의료기기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유통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
제31조의3(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가부터 제조·수입·판매·사용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등은 의료기기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의료기기 표준코드 및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등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등록·관리함에 있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	서창식	02) 788-4726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	043) 719-3811

■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하여 미세플라스틱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세플라스틱 규제와 관련하여 화장품 개정고시만 준비하고 있는데, 치약, 주방세정제, 주방세탁제, 세제, 물티슈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 협력하여 전체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17.7.1)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함

* 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17.5.19)하여 구중청량제, 치약제, 치아미백제 등 세정목적의 제품에 첨가제로서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을 개정하여 '17.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의약외품을 제조·수입금지 조치하고, '18.7월부터는 판매까지 금지할 예정임

○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미세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임('17.6월)

○ 미세플라스틱 사용실태, 인체영향분석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할 계획임('17.12월)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7.6월,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소관 품목·분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의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이행하거나 수립함(이행, 이행 중)**
  - (식약처) 1차 미세플라스틱[3]을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정, 각질제거 등 화장품('17.1.11) 및 치약, 구중청량제 등 의약외품('17.5.19)에 대한 사용을 규제함
  - 주방세정제(위생용품)는 현행 복지부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별표3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 (환경부)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해당원료 사용규제 도입 검토 중
  - EU 등 해외의 규제사례, 국내 미세플라스틱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도입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임
  - (해수부) 해양쓰레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대응센터 운영('11.11.29~)을 통해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수거, 조사, 정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해양생태계 등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오염방지를 위한 R&D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이행 중)**
  - 미세플라스틱 식품 안전관리방안 연구(식약처, '17)
  -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위해성 연구(해수부, '15~'20)
-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이행)**
- **2차 미세플라스틱[4]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하여 총 플라스틱 사용규제, 해양쓰레기 유입량 통제 및 주요 오염원인 폐스티로폼 부표 수거·관리체계 구축 등(해수부 주관 / 환경부, 해양경찰청, 식약처 등 참여)**

3) 1차 미세플라스틱 : 처음부터 작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조각. 세정제, 공업용 연마제 등 제품에 사용.
4) 2차 미세플라스틱 : 플라스틱이 인위적 또는 풍화에 의해 조각나 미세화된 것. 1차 미세플라스틱에 비해 월등히 많을 것으로 예상(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5.10.2.)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현행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규제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체계적인 대처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나,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제조 및 수입시 원료로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시정처리 요구의 주요 내용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허가·신고된 의약외품 중 미세플라스틱(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세정 목적의 의약외품 중 미세플라스틱(폴리에틸렌 가루)은 치약에만 포함되어 있었으며, '08~'12년 사이 6개 품목이 허가·신고 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취하됨

○ 화장품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들이 이미 미세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은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악하고 있음

- 다만, 세정 목적의 화장품이 아닌 기초 및 색조화장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고, 의약외품을 제외한 다른 산업용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사용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개선방안

□ '17.5월 개정 고시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 따르면 첨가제로서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약외품의 범위는 구중청량제, 치약제, 치아미백제 등 3가지임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고시개정('17.5.19)

기 존	개 정
제9조(원료약품 및 그 분량) ① ~ ④ (생 략)	제9조(원료약품 및 그 분량) ① ~ ④ (생 략)
⑤ 첨가제 및 그 분량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_____

기 존	개 정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호 가목 1), 4) 및 자목 4)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는 첨가제로서 미세플라스틱(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아니 한다.

□ 이는 미세플라스틱이 주로 세정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첨가제이기 때문에 상기 3가지 품목 이외의 품목에 함유될 여지가 적고, 세정 목적의 제품이 아닌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하천 등으로 유입에 따른 환경오염 가능성 낮은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이나, 미세 플라스틱은 씻어내는 제품뿐 아니라 메이크업 제품, 세제, 물티슈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제품들에 대한 유통 및 폐기 경로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서창식	02) 788-4726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정책실	소비자위해 예방정책과	-	043) 719-1723

장애인개발원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BF인증제도 개선 및 홍보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BF 인증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BF 인증 취득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민간기관의 BF 인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용적률 완화와 같은 혜택을 주는 등)을 마련할 것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현재의 BF 인증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BF 인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BF 인증 재인증 신청 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2)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사후관리를 연간 2회 진행하여 1차 사후관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여부를 2

차 사후관리에서 확인함

-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지체, 척수, 시각 장애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단을 별도로 구성할 예정임

○ 2016년 10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였으나, 용적률 완화는 도시 밀집화 현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음

-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한 차선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음

○ 2017년 상반기 중 인증 수수료를 건축물 면적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무부처와 협의할 예정임

○ BF 인증 의무대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 직원 및 건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교육, 세미나 개최를 통해 홍보 활성화에 노력하겠음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공동 운영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BF 인증기관들[1]과 논의를 통해 건축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애인들의 이용이 편리한 건축물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을 연장하는 방안 혹은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인증 기준을 이원화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BF 인증 취득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수행 여부**
  - 사후관리를 연간 2회 실시하고 사후관리단을 별도로 구성함 (이행)
- **민간기관의 BF 인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용적률 완화 등) 마련 여부**
  - 민간기관의 BF 인증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 (대안이행 중)
- **BF 인증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1) 한국장애인개발원, LH 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 BF 인증기관들이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추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 (이행 중)

■ **BF 인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 여부**

- BF 인증 활성화를 위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음 (이행 중)

■ **BF 재인증 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재인증 신청 시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및 보건복지부와 하반기에 협의 예정 (이행 중)

2)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BF 인증 취득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대상 시설물 143개소에 대해 3월부터 6월까지 1차 점검을 완료하고 실제 사용자 중심의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 지체, 척수, 시각 장애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단을 별도로 구성하였으므로 시정조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1차 점검 후, 10월까지 시정조치 의견에 대한 답변을 검토한 후, 11월부터 2차 점검을 다시 진행할 예정임
- 다만 현재 사용자 중심의 사후관리를 위해 장애인과 전문가로 구성한 사후관리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수당이나 실비[2]지급과 관련한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민간기관의 BF 인증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위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방안 등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였으나, 도시 밀집화 현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음

- 따라서 대안으로 민간기관의 BF 인증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논의 중임

○ BF 인증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4월, BF 인증기관[3]들이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현행 BF 인증 수수료 부과 체계를 300㎡미만 건축물, 민간 소유건축물(면적제한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물(면적제한 없음)의 경우에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2) 현재 수당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자체예산으로 소액지급하고 있으나, 실비(교통비 등)는 지급을 못하고 있음
3) 한국장애인개발원, LH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관련 고시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를 개정할 예정이므로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BF 인증 홍보 및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및 세미나 등을 다수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 3회, 건축사 실무교육 2회, BF 인증 관련 세미나 3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편의증진 민간교육 2회 실시 예정임

○ 현재는 BF 재인증 신청 시 신청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인증기관 및 보건복지부와 올 하반기에 협의할 예정임

- 건물이 구조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인증을 연장하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별도의 재인증 절차 없이 인증을 연장하는 방안 혹은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에 적용하는 인증 기준을 이원화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임

3. 개선방안

□ BF 인증과 관련한 개선은 결국 인센티브 부여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민간기관의 경우에 BF 인증은 의무도 아닌데, 예비인증과 본인증 수수료를 자비로 지불하면서,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 홍보와 교육의 강화만으로는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BF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증에 따른 세제감면, 인증 수수료 감면 혹은 면제, 인증 시 건축기준 등의 완화 혹은 재인증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해주는 방안 등 보다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가 절실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대명	02) 788-4728
관련 부처	장애인개발원	경영본부	미래전략부	-	02) 3433-0627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인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발생 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간 업무조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

2)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법률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수당을 2016년 10만원에서 2017년 30만원으로 인상함(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결정)

-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공후견사업 지원인력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

○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조정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와 관련 연구수행에 대해 협의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지원인력 강화 방안 마련**
- 법률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의 자격수당을 인상하였고, 법인도 후견인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이행)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조정에 대한 대책 마련**
- 업무조정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 (미이행)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실시**
- 2017년부터 실시하는 장애인패널 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파악하고 연구할 예정 (이행 중)

2)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공공후견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격수당을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4]를 개정하여 후견법인도 후견인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후견사업 심판청구 지원 업무를 공공후견법인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공공후견사업의 지원인력을 강화하라는 시정조치 요구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후견법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공공후견사업에서 활동비를 지원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업무조정에 관한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므로 미이행 상태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장애인 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게 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재까지 단 한 곳도 개관하지 못하였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이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장애인패널조사를 올해부터 실시함

- 이 조사는 장애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삶의 질과 복지욕구 변화를 장애유형별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0년간 동일한 장애인에게 같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4)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견기간 동안 후견법인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사람
2. 후견법인

-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조사대상자 중 최소 400명 이상을 표본비율 배정하여 그들의 전 생애에 걸친 일상생활, 소득수준, 건강, 복지욕구, 교육상태, 사회참여 등을 조사할 예정이므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방안을 연구하라는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중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조사범위를 발달장애인 가구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의 지원이 요구됨

3. 개선방안

□ 공공후견사업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 치매독거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시범 사업[5]을 실시하고 있으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6]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를 공공후견인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공공후견사업의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법령 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대명	02) 788-4728
관련 부처	장애인개발원	경영본부	미래전략부	-	02) 3433-0627

5) 이에 대한 현행법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500호)로 현재 계류 중에 있음

6) 제39조(보호의무자) ①「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②항 생략

장애인 취업 관련 실태 파악 및 임금보장을 위한 대안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장애인 취업 관련 실태 파악 및 취업한 장애인의 임금보장을 위한 대안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	취업장려금 지급 활성화를 위하여 서류 간소화 등 신청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 현황, 임금 및 근로실태 등을 파악할 것
	취업한 장애인의 임금보장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

2)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취업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변경을 통해 취업장려금 지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2016년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한 장애인 취업자의 이력 관리를 시작하여, 2017년부터 장애인 고용 현황(고용유지 현황, 임금, 근로실태 등)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가능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취업장려금 신청절차 개선방안 마련 여부**
- 취업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대안을 검토 중 (대안이행 중)

■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및 근로실태를 파악할 것**
- 장애인 근로자들의 이력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유지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이행)

■ **취업한 장애인의 임금보장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
-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강화하도록 함 (이행)

2)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취업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신청절차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의 활성화를 위한 차선책을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아래와 같음

-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알선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취업장려금은 최소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전문인력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나머지 40%를 기관의 사업비(홍보비 포함)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는 사업주에 대한 실비 지원 등에 일부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취업장려금의 지급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산시스템 구축을 이미 완료하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현황 및 임금, 근로실태 등 실태파악이 가능하므로 시정조치가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취업한 장애인의 임금수준 보장을 위해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을 개정하였음

- 취업한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판매수익금을 포함시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의 보장을 강화하였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한 고용장

려금 등 외부지원금을 취업한 장애인의 임금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음

- 따라서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취업한 장애인들의 임금보장 수준을 강화한 것은 취업한 장애인의 임금보장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라는 시정요구를 부분적으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장애인 근로자들의 이력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향후 기능을 보다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전산시스템과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의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7]의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현재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사용자가 근로능력이 낮은 중증·지체장애인 등을 고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후, 자체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금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없음
- 따라서 사용자와 장애인 근로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합리적 감액기준을 마련하거나, 적용 제외된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대명	02) 788-4728
관련 부처	장애인개발원	경영본부	미래전략부	-	02) 3433-0627

7)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Ⅲ

여성가족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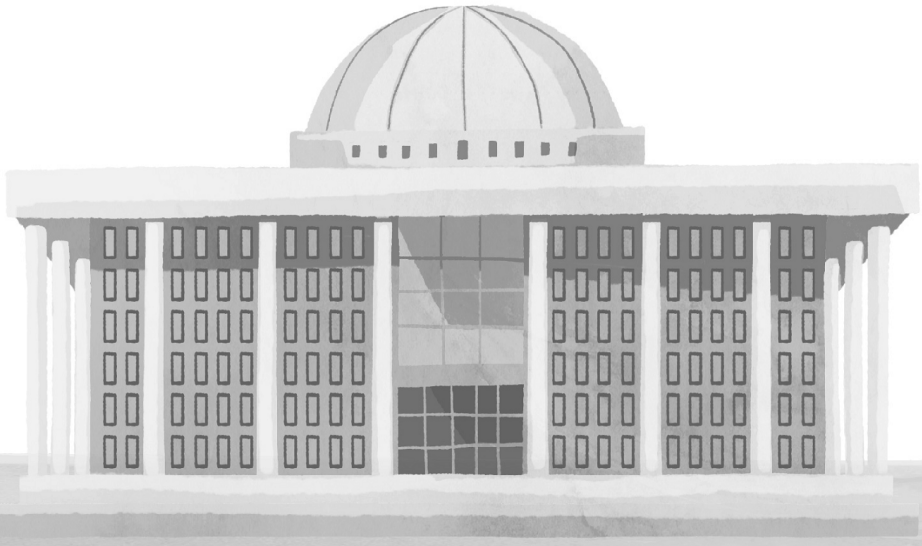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여성가족부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여성가족부	59.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수당이 최저임금인 6,470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근로자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정비할 것
	62. 저출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차원에서 가정에서 부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국가부담을 늘리더라도 돌보미들의 처우개선 대책(시간당 수당,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을 기획재정부 등과 추가 협의하고 서비스제공기관들이 사업주의 위치에서 단체협약 등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집행할 것
	65.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실 이용가구대비 활동 돌보미의 비율이 적으므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여성가족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59.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정 대상으로 아이돌봄 이용 및 운영 현황을 포함한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17년 하반기 예정) 아울러,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62.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안 마련시 재정당국과 협의하겠음
65. 서울을 포함한 지자체에 아이돌보미 양성을 독려하는 등 활동 돌보미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음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에 아이돌보미 신규양성 실적을 적극 반영하고, 양성 우수기관 포상도 실시('17년 하반기)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 정비와 처우개선,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
  -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음(2017년 하반기 예정) (미이행)
- **서울지역의 활동 돌보미의 비율 적음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아이돌보미 양성을 독려하겠음(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시정·처리요구사항이자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59, 62번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현실적으로 거의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었고, 관련하여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들 간 법률분쟁[1)]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음

1) 2017년 7월 기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관련하여 2개의 소송이 진행 중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소송: 원고는 (광주)건강가정연구개발원,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진정내용은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해태) 관련 중노위 결정, 1심은 기각/ 2심 진행 중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소송: 원고는 163명의 아이돌보미, 피고는 (광주)건강가정연구개발원 등 5개 법인, 진정내용은 휴일·야간·주휴·연차수당 등, 1심 진행 중임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시정·처리요구사항(65번)과 관련해서도,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실 이용가구 대비 활동 돌보미의 비율이 적은 주요 이유는 아이돌보미의 낮은 처우수준으로 인한 안정적 공급불가, 아이돌보미의 유사한 업종으로의 이직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시청·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은 문제의 정확한 진단에 기반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3. 개선방안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아이돌보미의 임금 인상,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근로자성 관련 처우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2018년 최저임금안(7,530원)을 참고하여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수당도 인상되어야 할 것임

○ 도서·벽지 등 활동기피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들에게 이동거리 제한요건 없이 교통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임[2)]

□ 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들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할 것임

○ 여성가족부는 서비스제공기관의 법적 성격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기관으로 보고 있는바, 서비스제공기관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피소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해야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02) 788-4723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	02) 2100-6341

2)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지급기준을 2014년 9월 이후 까다롭게 하여 현장의 아이돌보미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임. 교통비 관련 연혁을 살펴보면, '12년~'14.8월 : 4시간 이하 연계, 도서·벽지 등 활동기피 지역 서비스 제공시 대중교통 이용 실비 지급(1만원 이내), '14.9월~ : 도서·벽지 등 활동기피지역에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 10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실비지급(1만원 이내)(여성가족부 제출자료, 201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설계사의 처우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취업설계사의 처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취업설계사의 정규직화, 급여인상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여성가족부	2016년 새일센터 지침을 통해 종사자 무기계약직 비율을 80%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무기계약직 비율은 33.3%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여성가족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종사자의 급여 인상 등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기준 급여 및 근속 기간 등이 나아지고 있음

- 종사자 기준 임금 : ('14) 157.5만원 (4대보험료 등 29만원 별도 반영) → ('15) 162.4만원(3%↑) → ('16) 167.3만원(3%↑) → ('17) 173.2만원(3.5%↑) ('15년 이후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별도 지원)
- 종사자 2년 이상 근무 비율 : ('15.1월) 28.4% → ('16.1월) 30.6% → ('17.1월) 36.3%

○ 무기계약직 전환 및 인건비 추가 지급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 당국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종사자의 고용현황 파악을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근무기간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연 2회) 고용안정을 위해 신규 센터 지정 및 센터 평가 시 종사자 고용안정 지표를 반영하였음

- 종사자 무기계약직 비율 : ('15.1월) 31.1% → ('16.1월) 33.5% → ('17.1월) 36.8%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새일센터 취업설계사의 정규직화, 급여인상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 여부**
  -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이행 중)
- **새일센터 종사자의 고용안정 방안 마련 여부**
  - 종사자의 고용현황에 대한 조사 및 센터 평가에 반영(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가 새일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급여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상담원의 경우, 직급체계도 일반직업상담원, 전임직업상담원, 책임직업상담원, 선임직업상담원, 수석직업상담원으로 나뉘어져 있고,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음. 2017년 기준 8~9호봉을 받는 직업상담원이 가장 많은 가운데, 8호봉을 받는 일반직업상담원의 급여수준을 1,792,690원임. 일반직업상담원에서 전임 → 책임 → 선임 → 수석으로 갈수록 급여수준은 더 올라감.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의 급여수준은 직업상담원보다 더 높은 수준임
- 새일센터의 취업설계사들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센터 등으로 이직하여 2015년 기준 이직률이 32.3%인 상황이고 2017년 1월말 기준 평균 근속 연수는 2년 1개월임
- 새일센터에서 근무하는 취업설계사에게는 호봉제도 적용되고 있지 않고 승진체계도 없는 상황임

○ 종사자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도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63.2%가 기간제 근로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상담원의 고용형태는 모두 무기계약직임

– 정부로부터 사업비만 받아서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새일센터의 과중한 업무, 불만 등이 있는 상황에서 센터 평가 시 종사자 고용안정 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센터 간 경쟁만 부추기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울 우려가 있음

3. 개선방안

□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직무분석이 이루어지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과의 비교 하에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정부부처 중에서 취업지원정책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수준을 분석하고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임금 등 처우수준이 개선되어 이직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방지되어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취업설계사 대상 호봉제 적용 및 승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02) 788-4723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 2100-6201

유해사이트와 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유해사이트와 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처리 요구를 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여성가족부	신종 청소년 성매매루트인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 후 청소년 성매매 관련 주요 채팅앱 명을 공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채팅 앱 성인 인증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을 할 것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여성가족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신종 청소년 성매매루트인 채팅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채팅앱·사이트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유인·권유 의심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 신고건수: ('15) 42건 → ('16) 513건

• 채팅앱·사이트 등에서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 대상 사이버 상담·긴급구조·법률지원을 연계하는 '청소년 성매매 사이버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음

※ 상담인원: ('15) 1,462건 → ('16) 3,241건

– 경찰청 협업을 통해 랜덤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및 유인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였으며, '17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 (1차) '16. 2. 22.~5. 31., (2차) '16. 11. 28.~'17. 1. 26.

• 관계부처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채팅앱 관리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 차단을 위해 인터넷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Web), 스마트폰 앱(App)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성인화상채팅사이트, 애인대행사이트,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예방에 노력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채팅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 의심되는 채팅앱·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청소년 성매매 사이버 예방사업' 추진(이행 중)
-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관련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유해 인터넷 사이트와 채팅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적 전망,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 유해 인터넷 사이트와 채팅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의 협업으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 기술개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있지 않음
- 여성가족부가 2015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한 42건[3]의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접속차단이 된 사이트·채팅앱은 1건, 2016년의 513건[4]의 신고에 대해 접속차단된 사이트·채팅앱은 5건에 불과하였음
- 심지어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관련 업무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보호환경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무과인 권익증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무과인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나뉘어져 분명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과를 찾기 어려운 상황임
- 모니터링의 경우, 청소년보호환경과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운영위탁한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아동청소년성보호과는 '청소년 성매매 사이버 예방사업'을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센터 간, 센터와 정부 간 소통과

3) 중복신고(4건), 접속차단(1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5건), 미유통(17건), 해당없음(신고내용이 성매매 정황에 해당되지 않음)(15건)(여성가족부 제출자료, 2017)

4) 중복신고(34건), 접속차단(5건), 이용자 이용해지(87건), 이용자 이용정지(6건), 처리불가(6건), 내용 확인불가(8건), 미유통(51건), 해당없음(신고내용이 성매매 정황에 해당되지 않음)(316건)(여성가족부 제출자료, 2017)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는 상황임

3. 개선방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유해 인터넷 사이트와 채팅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적 전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유해 인터넷 사이트와 채팅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의 협업으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함

○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신종 청소년 성매매 루트인 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관, 단체 간 협업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구체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02) 788-4723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	-	02 2100-6291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	02) 2100-6391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	02) 2100-6401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근로자 처우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한국건강진흥원의 근로자 처우수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리해고, 임금 원상복귀 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근로자 처우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여성가족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무기계약직 전환자 중 66.7%가 정규직으로 전환조치 되었으며, '17년부터는 직급보조비가 정규예산에 편성되어 지급되는 등 근로자 처우 수준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근로자 처우수준을 개선할 것**
-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2014년 2월「건강가정기본법」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원이 축소되었고 전환 후에 임금수준의 하락, 직급하락되고 관리자(팀장) 보직을 상실하게 된 직원이 다수 있었음

- 당시 퇴직처리된 직원의 수: 19명
- 인건비의 수준: 정규직 종사자 기준 5%의 인건비 삭감
- 당시 직급하락자의 수: 31명[5)]
- 관리자(팀장) 보직을 상실하게 된 직원의 수: 8명[6)]

○ 여성가족부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무기계약직 전환자 중 66.7%가 정규직으로 전환조치" 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여전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직원들이 불안정하게 고용되어 있는 상태임

- 2017년 7월 기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직원들의 고용상태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109명, 계약직은 17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은 정작 계약직 중에서 매우 소수에 불과한 현실임
-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66.7%의 직원들의 낮아진 임금수준 관련한 보존책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함
- 2017년 7월 기준 179명의 계약직 중에서 무기계약직은 16명(8.93%)이고 나머지의 다수는 수탁계약직 112명[7)], 일반계약직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8)]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323개 기관 중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기관소속인원(단시간, 기간제, 기타)중 '기타'로 분류된 고용형태가 50%를 넘고 있는 몇 안되는 공공기관 중 하나임[9)]

○ 정부는 "2017년부터 직급보조비가 정규예산에 편성되어 지급되는 등 근로자 처우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낮아진 직원들의 처우수준이 아직까지도 재단법

---

5) 정규직 직급하락 14명, 무기계약직으로 직급하락 17명(여성가족부 제출자료, 2017)
6) 퇴사자 포함함(여성가족부 제출자료, 2017)
7)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수탁계약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이 하는 업무는 다누리콜센터, 미혼모자 전화상담원, 부모교육강사 양성사업, 아이돌보미 보수운영인 것으로 확인됨(여성가족부를 통하여 확인, 2017)
8) http://public.moel.go.kr
9) 기관소속인원의 고용형태가 '기타'로 분류된 인원이 50%를 넘는 공공기관은 한국문화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3개 기관임

인이었던 당시로 회복되고 있지 아니함

- 2017년 기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현원 109명의 평균 연봉은 3,6785만원으로 2014년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기 전보다 낮을 뿐 아니라, 352개 공공기관 중에서 임금수준의 순위가 349위로 거의 꼴찌수준임[10)]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재단법인 당시에는 호봉제가 적용되었으나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이 되고나서는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지 아니함

3. 개선방안

□ 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의 고용조건, 고용형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임금수준 하락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

○ 일반계약직, 수탁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검토되어야 함

○ 향후 직원채용 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마련해야할 것임

□ 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마련하여야 함

○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규직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인상되어야 함

○ 정부는 요구조사를 통하여 정규직 종사자들에게도 예전에 적용되었던 호봉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02) 788-4723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	02) 2100-6329

10) 2017년 공공기관 정규직 1인당 평균보수액 및 공공기관 임금순위, 알리오통계를 참고함

화해치유재단의 성격과 사업 검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화해치유재단의 활동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여성가족부	28.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 10억엔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합의한 2015.12.28.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재단이 추진 중인 사업·공무원 파견을 즉각 중단하며,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취소할 것
여성가족부	30. 일본 정부의 거출금 10억엔에 대한 법적 성격은 일본군'위안부'동원의 강제성 및 일본정부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했는지 여부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정부는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여성가족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28. 한일 합의에 대해서는 국가간 신뢰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봄 재단 파견 공무원은 '16.12.16일자로 복귀하였으며, '16년 재단에 지원한 보조금 중 재단설립과 관련된 비용 등은 재단 출연금으로 대체하여 지출하도록 조정하였음
30. 일본 정부예산 10억엔은 한일양국이 합의한 바와 같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이행 조치로 알고 있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 사업을 중단할 것**
- 화해치유재단은 국가간 신뢰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공무원파견을 중단하였고 운영비 지원 중단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조정함(일부 미이행[11], 이행완료)

■ **일본정부의 거출금 10억엔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것**
- 10억엔은 일본정부의 책임 이행조치로 알고 있음(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이 사건과 관련된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승인 취소와 관련하여, 동 재단을 설립한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재단을 해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음[12]

- 화해치유재단[13]설립 후 일본정부는 2016. 9. 1. 화해치유재단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억엔을 송금하였고, 이 금액은 재단의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 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음. 만약 화해치유재단이 '보통'재산인 이 사건 금원을 일본정부에 반환하고자 할 경우, 정관 제1조에서 정한 이 사건 재단의 목적[14]의 달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경우이므로,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재단에는 '법인의 목적 달성불능'이라는 해산사유(「민법」제77조 제1항[15])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임

※ 화해치유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기본' 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정관 제23조), '보통'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한 제한 규정이 없음

○ 10억엔은 일본정부의 책임 이행조치라기 보다는 인접국과의 국제협력 차원에서 도의적·역사적 책임에 기인해 일본정부가 출연하여 화해치유재단에 지원한 자금, 즉

11)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승인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이행으로 평가함
12)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보건복지여성팀·외교안보팀 공동주최, 2017. 2. 10.)의 원민경 변호사의 발표문
13) 화해치유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기본' 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무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정관 제23조)
14)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일괄 거출된 자금으로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사죄반성금", "(배상금적 성격의) 치유금", "위로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임[16]

- 일본정부의 거출금 10억엔은 법적인 차원에서 온전한 배상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02) 788-4723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복지지원과	-	02) 2100-6421

16)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보건복지여성팀·외교안보팀 공동주최, 2017. 2. 10.)의 조정현 교수의 발표문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Ⅲ

환경노동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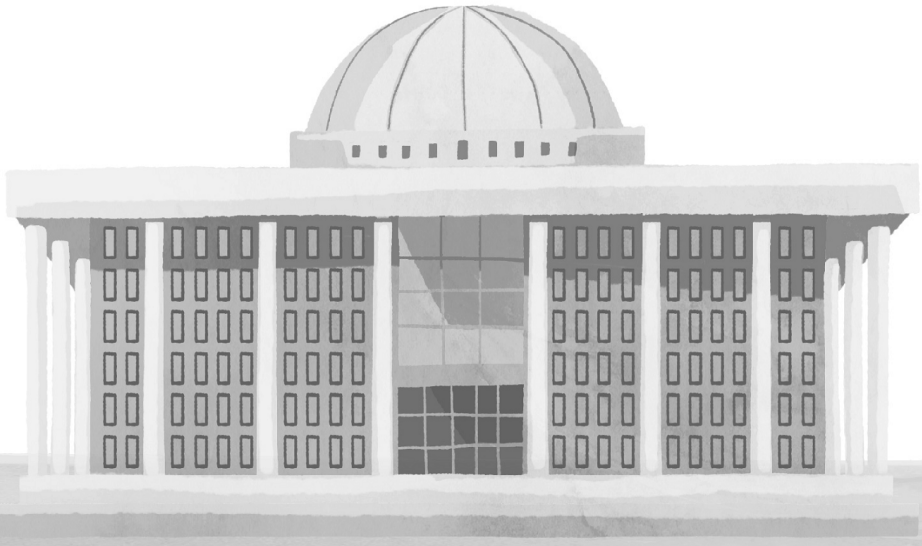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환경부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하천 유입 총인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에 대하여 하천 유입 총인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환경부	ㅇ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장, 산간지역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4대강 주변의 축산단지 운영 현황 등을 전수조사하여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ㅇ 총인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응집제의 성분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추진 ㅇ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총인처리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환경부는 2017년 2월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하천 유입 총인 감소에 대한 제재강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ㅇ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연 1~3회 정기적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6월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기획 단속을 실시함

-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에 대해 특별감시를 실시함

○ 매년 전국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 4대강 주변의 축사현황에 대해 기 조사하고, 이를 활용하여 금년에도 가축분뇨 부적정 관리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예정임

○ 매년 녹조가 되풀이되고 있는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강우 時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는 하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17) 중임

○ 총인 처리시설의 응집제에 의한 생태독성 발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완료함

○ 녹조 우심기간(5~9월) 중 하·폐수처리시설 총인 부하량 저감시 약품비 일부 지원중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인 처리시설의 응집제에 의한 생태독성 발현 여부**
  - 인 처리시설의 응집제에 의한 생태독성 발현여부조사 수행 (이행 중)[1)]
-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이행 중)**
- **전국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 4대강 주변의 축사현황에 대한 조사 및 합동점검 (이행 중)**
- **총인 부하량 저감시설 약품비 일부 지원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환경부는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하천으로 유입되는 총인 중 대부분의 부하량은 이행 중인 조치와는 별도로 대

1) 2011년부터 생물학적 물 관리기법인 생태독성관리제도가 도입되어 방류수의 생태독성(TU)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공공수역의 영양염류에 의한 부영양화 대책 마련을 위하여 조류의 성장제한인자인 T-P의 처리가 강화됨. 국내 인 처리방법은 생물반응조 후단과 2차침전지 후단에 Alum 등의 응집제를 주입하여 T-P부하를 저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생태독성이 적용되는 처리장에서는 인 처리시 응집제 사용으로 인한 생태독성 초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하·폐수처리시설 4개소를 선정하여 응집제에 의한 생태독성 발현여부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생태독성이 미 발현된 대상시료(포기조 유출수 등)는 강화수질인 T-P(0.2㎎/L이하)와 생태독성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 응집제 주입농도와 유사하거나 증가시켜 주입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부분 농림축산식품부 영역이며 이는 하천에 유입되는 총인은 비점오염원[2] 관리가 중요한데 이의 대부분은 축산과 농업에서 유래되고 있기 때문임

-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하수관거 누수 및 미처리 가축분뇨로 인한 하천 비점오염부하량의 비율은 약 65% 이상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따라서 토지피복을 좀 더 세분화하여 비점오염원 유출 특성에 영향을 주는 주된 인자의 원단위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02) 788-4732
관련 부처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	044) 201-7001

■ 빗물 재이용시설 확충 등 필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에 대하여 빗물 재이용시설 확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환경부	현재 빗물을 활용한 정책이 다소 미흡하므로, 빗물 침투·저류시설 확대 및 저영향개발(LID)[3]을 기본으로 한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할 것

2) 점(點)오염원이 파이프를 통한 배출경로를 가지는 것과는 달리, 비가 올 때 지표면 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오염물질로서 농지에 살포된 비료나 농약, 토양침식물, 축사유출물, 교통오염물질, 도시지역의 먼지와 쓰레기, 자연동·식물의 잔여물, 지표면에 떨어진 대기오염물질 등을 말함

3) LID(Low Impact Development)란 개발과 강우 관리에 대한 개념으로, 신속한 우수유출수의 배수와 장치형 위주의 비점(非點)오염원 관리에만 치중된 물관리 정책을 보완하고, 지역 전체의 건전한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분야에서 대두된 최적개발기법임. 여기에서 건전한 물순환 시스템이란 물의 증발, 이동, 상승, 응결을 통한 강수 현상이 자연적인 형태로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2월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으로 빗물 재이용시설 확충 필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도시의 빗물 침투·저수량을 늘려 전체 물순환 체질을 개선하는 물순화 선도도시 조성 사업 이행 중임

– 도시별 물순환 개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2017년 12월까지 마련하여 도시 전반에 LID 기법을 적용할 예정임

○ 신규도시인 행복도시(세종시)에 도시 조성계획 단계부터 LID 적용 추진임

※ 2017년 착공한 6-4생활권에 하루 23.2mm까지 빗물을 관리하도록 LID 도입계획 수립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이행 중)**[4]
- **세종시에 도시조성계획 단계부터 LID 적용 (이행 중)**[5]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정부의 시정 및 처리가 국회에 보고된 대로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에서 지적한 저영향개발을 기본으로 한 도시계획 수립 추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법」등 국토부의 다른 법령이나 계획들과 같이 검토되어야 함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도시 공간 내에서의 침투, 저류, 이용 등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4)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5개 도시를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했으며, 올해는 도시별로 '물순환 개선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물순환 회복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임. 이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규모 개발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폐수처리사업장에 LID기법적용을 의무화함

5)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환경공단, 세종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밀리(6-4생활권)에 빗물관리목표인 일강우량 23.2mm만큼 LID 기법을 적용하여 설계를 완료함. 세종시에 적용되는 LID기법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의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물순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이 잘 스며들고 머무르도록 흙과 자갈로 만들어진 식생수로, 빗물정원, 투수블록 등을 곳곳에 배치함

3.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경우 LID에 대한 법적 기본이념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서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개별법에 따라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도시계획 수립시 LID개념을 반영한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개발'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 위주에서 유지·관리로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 향후 재개발 단계에서는 과거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기 보다는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복구 또는 구축하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개별 건물이나 작은 커뮤니티에서 LID를 구현할 수 있는 민간의 활동영역을 조성하고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LID기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중장기적 재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02) 788-4732
관련 부처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044) 201-7040

■ 일회용 컵 재활용률 제고방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에 대하여 일회용 컵 재활용률 제고방안 마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환경부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회수율, 분리수거율 및 재활용률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환경부는 2017년 2월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일회용 컵 재활용률 제고방안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자발적협약 업체 현장 모니터링, 컵 보증금 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1회용컵 실태조사, 1회용컵 자발적협약 효율성 강화, 커피전문점 1회용컵 사용·처리(배출·수거·재활용 등) 실태조사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자발적협약 업체 현장 모니터링('16.9~10) 및 간담회('16.12.27) (조치완료)**
  - 협약 내용 강화 및 갱신에 대한 업체 의견 수렴
  - ①1회용컵 감량 목표율 상향, ②다회용컵 사용에 따른 현금할인 금액 확대, ③매장 내 1회용컵 사용제한, ④분리배출 및 회수·재활용 기준 추가 등
- **컵 보증금 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1회용컵 실태조사 착수('17.1.13) (조치완료)**
  - 1회용컵 자발적협약 효율성 강화 (이행 중)
  - 업계 추가 의견 수렴 및 협약서 초안 마련('17.1), 협약서 초안에 대한 2차 간담회('17.2월), 협약 갱신('17.3)
- **커피전문점 1회용컵 사용·처리(배출·수거·재활용 등) 실태조사 (이행 중)**
  - 국내 커피전문점 현황 및 1회용컵 사용·처리실태 조사(~'17.2)
  - 1회용컵 및 부속물(컵뚜껑·빨대 등) 사용·배출 현장조사(~'17.2)
  - 이해관계자(1회용컵 제조·사용·재활용업체) 간담회('17.3)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정부가 국회의 시정 요구에 따른 사항을 불이행한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조차도 다회용컵을 권하는 문구나 홍보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1회용컵 사용 감소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개선방안

□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재·개정시 현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체 이외에 실태조사 업체와 같이 매장수가 많은 업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협약업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업체 협약내용 및 관리를 강화해야함

□ 매장 내에서 발생한 1회용컵 및 컵 부속물을 적정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02) 788-4737
관련 부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	044) 201-7360

■ 순환골재의 품질안전 기준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에 대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안전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환경부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순환골재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순환골재를 사용한 건축물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바, 순환골재 의무사용 확대에 앞서 순환골재의 품질 보장을 위한 안전성 기준마련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환경부는 2017년 2월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순환골재의 품질안전 기준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품질기준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와 품질기준 개정을 3월에 공고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안전성 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 (불가능)**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소관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품질기준 개정을 2017년 3월에 공고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항은 환경부 소관이 아니며 공고한 바를 찾아보기 어려웠음

○ 한국과 일본의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율은 각각 약 97%, 96%로 미국의 약 20~30%, 영국의 약 3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영국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품질기준이 일반 골재와 동등한 품질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은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더 이상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02) 788-4732
관련 부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044) 201-7360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하여 관할권이 인천시로 이관되면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어려울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이 인천시로 이관되면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17년 2월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관할권 이전으로 인한 조율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공사 관할권 이관사항은 환경부 및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가 합의하고,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 공사도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공사 관할권 이관이 공식적으로 추진될 경우 동 위원회를 통해 3개 시도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공사 관할권 이관은 4자 합의서에 따라 인천시에서 지역주민, 공사 노동조합과의 갈등해결방안 제시·협의 등이 선결조건으로 되어 있어, 동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음

※ 인천시에서 공사 관할권 이관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경우 진행상황 국회 보고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수도권매립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는 경우 조율의 어려움 우려 (이행 중)**

– 수도권매립관리공사의 매립사업은 이해관계자간 공동협정서 체결 및 운영관리, 기관별 역할·책임 등이 명확화되어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자원화·환경조성사업은 계획된 사업중단, 비효율적 운영 등 비정상적 사업추진의 구조적 한계가 있음[6)]

– 수도권매립관리공사의 사업추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기존 사업계획 구체화 미흡, 건설폐기물 자원화, 생활폐기물 전처리, 열병합발전, 바이오에너지사업, 태양광사업, 테마파크사업 등의 수입원 및 사업비의 명확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재정수지개선에 미포함되어 있어 재정수지는 불명확함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환경부는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를 대체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수도권매립지의 구조는 공동협정의 체결에 의한 운영관리이므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추후 인천시

6) 사업추진의 협의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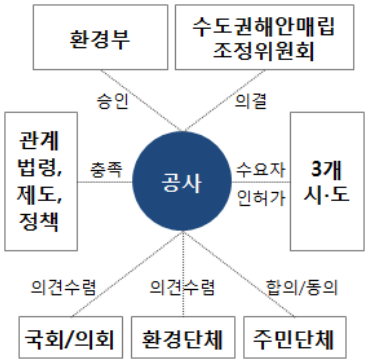

로 이관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힘듦

- 인천시로 수도권매립관리공사가 이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자원화 사업을 통해 생산될 것으로 보이는 에너지 활용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등에 대한 협의가 미진한 단계이며, 적극적인 추진주체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 의사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수도권매립관리공사가 중장기적 예측이 가능하고 능동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자원화·공원화사업을 명확히 하는 구속력 있는 행정적 절차 선생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동협정서에 기초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추진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매립사업 협정서에 기초한 사업계획의 체계적 추진 및 2018년 시행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에 적합한 조직구조 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02) 788-4732
관련 부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	044) 201-740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환경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심각해질 경우 경유차, 화력발전소 등을 일시적으로 운행중단시키는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환경부는 2017년 2월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및 소속 사업장 대상 시범사업 실시('17.2~)

– 비상저감조치 법제화 및 민간부문 확대 방안 마련('17.12)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시범사업 실시 (이행)**
  – 수도권 지자체와 고농도 미세먼지시 조치사항 시행 합의 (이행)[7]
- **법제화 및 민간부문 확대방안 (이행 중)**[8]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응에 있어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정부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공공부문 이외의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대형 오염원에 대한 가동중단 등 조치의 법제화는 시범사업 결과분석 후 시행예정으로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7)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시·도 630여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 환경부는 매일 17시 기준, 당일의 미세먼지($PM_{2.5}$) 농도와 익일 예보현황을 검토하여 발령요건을 검토한 후 합동 비상저감회의에서 발령 결정

8)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를 추진한다는 계획

3. 개선방안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2항[9]은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시 시·도지사가 차량운행제한 및 조업단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제8조제3항에서는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조치 등의 사항은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재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제8조제2항을 '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함과 동시에 불응시 처벌(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고농도 대기오염 상태에서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을 무시하였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최준영	02) 788-4731
관련 부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대기정책과	-	044) 201-6860

■ 전기차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필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에 대하여 전기차 배터리 원료의 안정적 수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9)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②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환경부	전기차 제작 시 필수 원자재인 리튬, 코발트의 안정적 확보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할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환경부는 2017년 2월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으로 전기차 배터리 원료 수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리튬 수요기업들은 중장기 도입계약을 통해 현물가격 급등에 대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리튬을 확보하고 있음

○ 향후, 수급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 등 소관부처인 산업부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수급전망을 분석 및 대비(이행 중)**
- 수급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 등 추진
- 산업부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최근의 코발트 등 원료가격 급상승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16GWh(2016년)수준이지만 Tesla 등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시장 규모는 연간 50GWh로 증가

- 중국의 CATL은 5년내 생산규모를 10배(50GWh), Tesla는 기존의 Gigafactory(35GWh)의 증설을 검토
- 이미 연간 코발트 생산량의 45%인 5.5만톤이 2차전지 생산에 소모되고 있으며, 리

튬의 경우 40%인 7만톤이 사용되는 실정에서 이와 같은 공급증가는 가격폭등으로 연결중

□ Tesla는 Model 3를 2019년 연간 50만대씩 생산할 계획이지만 50%인 25만대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연간 1.4만톤의 리튬과 4천톤의 코발트가 필요

- Tesla의 Gigafactory 증설시 Tesla 1곳만으로도 전세계 리튬생산량의 35~40%를 조달해야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음
- 대량의 리튬과 코발트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원료 대부분은 중국이 확보[10)]

국제 코발트 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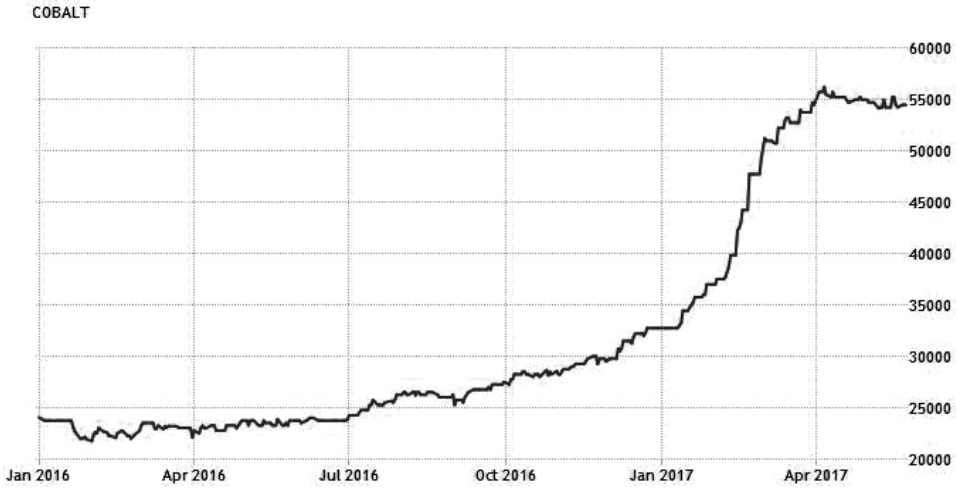

3. 개선방안

□ 향후 전기차 배터리 원료 가격의 지속적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전기차 보급목표의 달성가능성 및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최준영	02) 788-4731
관련 부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청정대기기획과	-	044) 201-6883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자동차항공과	-	044) 203-4322

10) 전기차용 삼원계 배터리 양극재에서 코발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높은 편이며, 전지 기준 원가 비율도 약 5~8%에 이름

■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 재검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에 대하여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환경부	완속충전기로 10시간 이내에 충전되는 전기차만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 기업의 전기차에게 불리하여 통상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환경부는 2017년 2월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 재검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보조금 지급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중('16.12～'17.6)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 여부 (이행 중)**
- 10시간 기준 폐지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017년 7월 19일 행정예고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기준 개정과 관련한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최준영	02) 788-4731
관련 부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청정대기기획과	-	044) 201-6883

■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관리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에 대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리강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환경부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재원을 지자체만 부담하여 관련된 피해보상 지원액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보상 관련 예산 확보 및 인력 확충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현재 포획 및 수렵 위주의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방식은 포획 등이 가능한 자를 즉시 고용하기 어려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피임약 투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환경부는 2017년 2월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관리강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16년 33억원 → '17년 50억원)

○ 멧돼지 도심출몰 관리 강화('멧돼지는 산으로' 프로젝트 확대 추진, '16년 서울 → '17년 경기)

- 중앙정부 차원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협의 추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피해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이행)**
- 2017년도 예산에 2016년에 비해 17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의 예산을 반영

■ **관리방안 다각화 (이행 중)**
- 국립공원 관리공단 및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멧돼지를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 마련
- 포획 이회의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피해방지시설 설치비 확대의 경우 예산확보가 이루어졌으나, 관리방안 다각화의 경우 포획 이회의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관리방안의 다각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국제적으로도 뚜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은 시기의 구분없이 운영가능하지만 해당 지자체별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동물의 도피로 인하여 실효성이 낮음

○ 인접 지자체와 공동으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구체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은 지자체 단위에서의 활동만을 허용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요시 광역적 차원에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률 제23조제5항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11]을 검토해볼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최준영	02) 788–4731
관련 부처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	044) 201–7245

11) 인접 지자체를 포괄하는 광역적 차원에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의 운영, 유해야생동물포획특별지역의 지정 등

기상청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해저지진 관측장비 도입 및 연구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상청에 대하여 해저지진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기상청	ㅇ 울릉도 해저지진계가 2006년 설치되어 약 8년간 운영되다가 2015년 철거되었는데, 철거된 경과를 보면 운영기간 동안 4일 중 하루 정도 작동이 중지되는 등 부실시공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ㅇ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저지진계가 특별히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상청은 울릉도 해저지진계의 부실시공 여부와 향후 해저지진계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기상청은 2017년 2월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해저지진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ㅇ 과도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

–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진계 설치 위치까지 13km 연장의 해저케이블을 해저에 매설 시 약 98억 원의 설치비용 소요

- 예산은 약 23억 원만 확보되어 부족분 75억 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해저케이블을 해저면에 노출 후 암반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공하였으나, 저인망 어업등으로 훼손이 잦아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철거

○ 최근 독도, 울릉도 및 동해안에 17개소의 지진관측소를 확충하였고 '17년 울릉도 태하지역에 시추형광대역 지진관측소 1개소를 추가 신설하여 해역관측망 보강 예정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해저지진계 재설치는 곤란하며 다른 대응수단을 강구중 (이행 중)**
- 기 설치되었던 해저지진계의 경우 잦은 단선으로 인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관련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철거
- 독도를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 지진관측소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해역관측망 보강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기상청은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하여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

- 동해안 지진관측망은 울릉도에 설치된 것을 포함하여 총17개소에서 가동중이며, 2016년 3개소(강릉, 울산 정자, 부산 가덕)의 지진관측소를 추가
- 전국적으로 설치된 150개의 지진관측소를 2020년까지 314개소(유관기관 50개소 포함)로 확충을 진행할 계획

○ 해저지진계의 경우 연간 5억원 이상의 운영비용이 소요되지만 데이터 활용도가 낮아 관측소 추가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상청의 의견

□ 최근 동해안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1]이 발생한 바 있으나 해당지역을 직접 관측할 수단이 없다는 점은 문제

1) 2016년 7월 5일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

○ 일정 규모 이하의 지진은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육상에서 탐지하기 곤란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확한 지질운동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3. 개선방안

□ 과거 수립되었던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체계적인 해저지진관측망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07년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 감시기술 발전을 위한 Safety Area From Earthquake 비전 2012"를 통해 4곳의 해저지진계 설치 필요를 강조한 바 있음

- 국가 지진·해일 감시기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측범위 확대가 필요함을 이유로 기 설치되었던 울릉도 해저지진계 이외에 3개의 해저지진계 설치를 추진
- 그러나 이후 별다른 추가설치 검토 및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존 1개소 철거로 인해 현재 해저 지진계가 전무한 상황

○ 해역 어느 지역에 어떠한 형태의 지진계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단계적 예산확보 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최준영	02) 788-4731
관련 부처	기상청	지진화산관리관	지진화산정책과	-	02) 2181-0762

근로복지공단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역학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역학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강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미리 알려 이들이 참석을 원하는 때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
근로복지공단	특정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를 분명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음에도, 과태료부과 외에는 역학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2월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역학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강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공단의 요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역학조사에 신청인(청구인) 또는 보험가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13.3.27 시행)함

- 공단의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사업장 조사 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나 보험가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조사에 참석토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음
-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장 조사일정을 통보받으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참석을 안내하도록 「요양업무처리규정」의 개정을 추진('17.2월) 하고 있음

○ 역학조사 시 공문 등을 통해 사업장의 협조를 요청하고, 거부 시에는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역학조사 실시 통보 단계부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 하는 등 업무처리요령을 마련·시행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역학조사에 신청이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는지 여부**
- 요양업무처리규정의 개정 (이행)[1]
-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협조요청 (이행)[2]

■ **역학조사 실시통보단계에서 불참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전공지 등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하여 시행했는지 여부 (이행)[3]**

1) 「요양업무처리규정」 제9조(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한 자문) ⑨ 소속기관장은 자문기관으로부터 사업장 조사 일정을 통보받으면 신청(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보험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조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안내 하여야 하며, 참석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7.3.1.〉

2)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7년 3월 7일 2016년 국정감사시 신청인(대리인) 또는 보험가입자의 참석을 통한 공정한 업무처리 필요지적에 관하여 역학조사 수행시 사업장 조사일정이 정해지는 경우 의뢰기관에 통보하여 신청인(대리인) 또는 보험가입자가 참석토록 안내하기로 협의함

3) 「산재보험법에 다른 과태료 부과 의뢰 요령 (요양·보상 분야)」(근로복지공단, 2017년 2월)에 "산재보험법에 근거한 행정조사임을 알 수 있도록 문서에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구 분	문서작성	유의사항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	• 문서의 제목은"○○○보고 요구"또는"○○○서류제출 요구"등으로 하고, • 제출 대상자료 및 요구사유, 법적 근거, 거부시 과태료 조항 등을 적시	"○○○협조요청"은 산재보험법 제114조 제1항, 제117조 제1항 또는 제118조의 행정조사가 아닌 단순히 업무 협조를 구하는 행위로 보여 질 수 있으므로 지양
현장조사 계획 통보	• 문서의 제목은"○○○조사 계획 알림"또는"○○○조사 일정 통보"등으로 하고, • 조사목적 및 일자, 사유, 범위나 대상, 조사자, 조사의 법적근거, 거부나 방해시 과태료 조항 등을 적시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근로복지공단은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된 「요양업무처리규정」이 잘 이행되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혜경	02) 788-4737
관련 부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재해기준부	–	052) 704-7436

■ 사무장 병원의 산재급여 부정수급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사무장 병원[4]의 산재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근로복지공단	사무장병원의 산재급여 부정수급이 계속되고 있으나, 부정수급액 중 회수되는 금액의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회수대책을 마련할 것

4)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를 의미하며 (「의료법」등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 근로복지공단은 「의료법」등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 중에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 판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의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2012년 감사연보』, 감사원, 2013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2월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으로 사무장 병원의 산재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채권확보를 통한 회수율 제고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제도* 도입('16.9월 시행)

※ 체납자의 신용정보조회 및 주거래은행을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조회하여 압류

○ 부당이득 사전예방 활동 강화

□ 행정제제조치 강화 및 실개설자 이력관리로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지정 방지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제도권 유입방지

※ 보건복지부 주관 불법의료기관 대응을 위한 협력체(합동단속, 정보교류 목적)

○ 향후 적극적 체납처분, 제도개선 등을 통한 회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음

□ 체납자 및 공모자의 적기 재산조회, 적극적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 등을 통한 채권확보 및 일실 방지

□ 고용노동부 예산성과지표('16년)에 회수율 반영

□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회수율 제고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전자예금압류제도 이행여부(이행 중)**[5]
- **부당이득 사전예방활동 이행 여부**
  - 행정제제조치 강화 및 실개설자 이력관리로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지정 방지(이행 중)[6]
  -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제도권 유입(이행 중)[7]
- **향후 적극적, 체납처분, 제도개선 등을 통한 회수율 제고 이행여부**
  - 적극적 체납처분을 위항 분기별 재산조회 진행(이행 중)[8]
  - 고용노동부 예산 성과지표(16년~) 회수율 반영(이행 중)[9]
  -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제도개선을 통한 회수율제고(계획수립중)[10]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정부의 시정 및 처리가 국회에 보고된 대로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무장 병원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시정조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개선방안

□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건강보험공단과의 사무장병원 관련 정보공유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분기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사무장병원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주관 불법의료기관 대응을 위한 협력체를 통하여 사무장 병원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는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혜경	02) 788-4737
관련 부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보험급여국		052) 704-7428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			033) 736-3463

5)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예금압류 현황〉 (2017.3월말 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	체납현황		예금압류*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91	30,096	38	9,439	53	20,657

* 신용정보조회 후 예금압류(대부분 무재산일 경우 예금압류)
** 압류, 소송진행 중, 분납 중, 실익 없음

6) 사무장병원 의심기관(고령의 개설자, 요양병원, 의료소비자협동 조합)에 대한 진료 실태 확인 등 의료기관 점검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적발 시 지정취소·배액징수 등 제재조치 강화하고, 산재의료기관 신규 지정시 지정취소 개설자 및 부당이득 공모자에 대한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선(17.2.)하여 사무장병원 운영 개설자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지정 방지하고 있음

7) 사무장병원 개설자 인적사항, 공모자 인적사항, 사건번호 등 건강보험공단과의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함

8) 2017년 7월 12일 제2차 재산조회 의뢰가 이루어짐

9) 201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성과지표에 부당이득 전체(사무장병원 포함) 회수율 목표를 반영하고 있으며2016년 목표(19.6%)를 초과달성(19.9%)하였으며, 2017년은 20.7%를 목표로 설정함

10) 근로복지공단은 회수율 제고를 위해 인터넷 공매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영업비밀로 정보공개 거부 시 정보공개심의회 이용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하여 영업비밀로 인한 정보공개 거부시 정보공개심의회 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인과관계 입증 등으로 해당 기업에 자료를 요구할 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7년 2월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영업비밀로 정보공개 거부시 정보공개심의회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서 해당 기업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단이 해당기업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없음

○ 그러나 공단 자체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안전보건자료에 대해 근

로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시행 '17.1.12)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공단 자체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안전보건자료에 대해 근로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공해하였는지 여부**

– 지침의 개정(2017년 1월 11일) 이후 1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렸으나 비공개로 결정된 바 있음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정부가 국회의 시정 요구에 따른 사항을 불이행한 것은 아니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근로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는데 한 원인이 있다고 보여짐

–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도 비공개 자료는 아니지만 국민이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임

3. 개선방안

□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혜경	02) 788-4737
관련 부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기획법규부		052) 703-0518

고용노동부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조선업 하청업체 종사 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조선업 하청업체 종사 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고용노동부	소위 "물량팀" 등 조선업 하청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 확인을 위해 조선소 원청회사 출입기록을 확보하여 보고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는 2017년 2월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조선업 하청업체 종사 근로자의 근로자성 확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확인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협조를 받아 하청근로자의 출입기록을 확인하고 있음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근로자에 대해 출입내역을 확인해 주기로 11개 대형 원청사와 협의 완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1개 원청의 협조를 받아 하청 근로자의 출입기록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미이행)**
- 11개사 중 10개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출이 곤란하거나 사내협력사 출입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음
  - 단, 고용노동부와 관련업체는 향후'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확인 등 필요한 출입내역을 확인해주기로 함
- 1개사도 하청업체 근로자의 출입내역을 제출한 것이 아니며 가입자 4,191명의 명단만 제출한 것이어서, 해당명단을 시스템과 대조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하청업체 25개소 1,546명[1]의 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격 신고 및 피보험자격 청구제도 안내 문서를 보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법적인 한계) 고용노동부가 원청업체에 하청근로자의 출입기록을 강제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법적인 한계가 있음

- 「고용보험법」제108조(보고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은 사업주에 대한 의무여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원청업체는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조치가 불가능함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1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분쟁 소지가 있음

○ (문제점) 고용노동부가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함에 있어서 법적인 한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11개 대형 원청사와 협의한 사항만을 보고한 것은 성실한 답변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 추진이 어렵다면,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취지에 부합한 대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통보받은 29개소 4,191명 중에 고용보험 기가입자(2,294명), 임의 가입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351명)는 제외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혜경	02) 788-4737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지원 실업급여과		044) 202-7370

모성보호 근로감독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모성보호 근로감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인력지원과 근로감독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는 2017년 2월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모성보호 근로감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모성보호 근로감독 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감독관을 지정·운영하고,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연계하여 3대 법위반 유형* 의심사업장에 대해 사전 실태조사 후 감독을 실시하여 감독 강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겠음

※ ①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②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 부진 사업장 ③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모성보호에 관한 전문 감독관을 지정·운영하였는지 여부 (이행 중)**
- 고용노동부는 각 지청에 모성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모성전담 감독관이 모성보호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 올해 근로감독관 증원 시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 모성 전문 감독관을 지정해줄 것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연계하여 3대 법 위반 유형 의심사업장에 대해 사전실태조사 후 감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이행 중)**
- 2017년 2월 말 올해 점검 목표 사업장을 500개소로 정하고, 2017년 상반기에 법위반 의심사업장(출산휴가 미부여 의심사업장 3,112개소, 출산 휴가자 대비 육아휴직 저조사업장, 460개소,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의심사업장 18개소)을 지방관서에 시달하였으며, 6월말 기준으로 151개소 점검사업장을 선정하여 점검을 진행 중임(점검완료55개소, 점검실시 51개소 중 169건의 법위반 적발)
  - 참고로, 2월말 점검계획이 시달되어 점검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법위반 의심사업장은 중복사업장의 경우가 많이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시정 및 처리요구를 대체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 다만,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증원 시[2], 모성보호 전문감독관을 지정·운영하였는지에 대해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혜경	02) 788-4737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보호정책과		044) 202-7471

2) 정부는 최근 근로감독관 500명 증원 계획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발표한 바 있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 2017년 6월 1일.

고용형태공시제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고용형태공시제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고용노동부	ㅇ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2014년 고용형태공시제가 도입되었으나, 대기업의 비정규직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용형태공시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제재 신설 등 방안을 마련할 것 ㅇ 소속 외 근로자를 '사업장 내'에서 파견·용역·도급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로 한정함으로써, 삼성전자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업의 외근 근로자는 공시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개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에 대해 기업 단위 공시 현황과 사업장별 고용형태현황을 함께 공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ㅇ 고용구조가 개선된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유공 등 포상 대상 선정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고용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고용형태공시제에서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한 것은 직접 고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나,

ㅇ 소속 외 근로자의 범위를 사업장 밖 근로자까지 확대할 경우 공시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현황이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ㅇ 특정 업종의 경우에만 사업장 밖 근로자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음

ㅇ 따라서 제도의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제도 확대보다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000인 이상 대규모 개업에 대해 기업 단위 공시 현황과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을 함께 공시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 및 다양한 고용구조개선 촉진 방안 추진 (이행 중)
- 소속 외 근로자 범위를 사업장 밖 근로자까지 확대할 경우 대상 범위가 넓고 범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현황 공시가 어려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음 (미이행)
-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 확대보다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정부는 고용형태공시제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단위 및 사업장 단위 고용형태 공시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1,0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점, △법령 개정을 위한 추진 사항, △인센티브 방안으로 일자리유공 등 포상 대상 선정 관련 구체적인 조치 사항 제시가 필요함

○ 법령 개정 추진 단계(예컨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개정 추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상을 1,000인 이상으로 설정한 근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대상범위의 확대 및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고용형태공시제도의 취지가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촉진을 위함에 있는 만큼, 기업의 사업주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소속 외 인력은 사업주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가 다수임) 대상 기업과의 관계에서 전속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현황을 함께 공시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02) 788-4737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일자리정책평가과		044) 202-7227

시내버스 운전사의 장시간 운전관행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시내버스 운전사의 장시간 운전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고용노동부	ㅇ 운수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내버스 운전사의 장시간 운전이 만연해 있어 운전사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므로, 운수업에 대해서는 주간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며, ㅇ 특히 노사합의로 격일제로 근무형태를 정해 놓고도 일손 부족을 이유로 하루 17시간 이상 주 3~4일 운전하게 하는 살인적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운수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시간근로에 대한 감독 등 실시 예정(2017년)

□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등의 일자리 영향을 감안, 실태 조사와 노사정 논의 등을 거쳐 개선안 마련(2017년 업무보고)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운수업 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시간근로 감독 등 실시 예정 (이행 중)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등의 일자리 영향을 감안 실태 조사와 노사정 논의 등을 거쳐 개선안 마련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최근 운수업 종사 근로자의 졸음운전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등 이들의 장시간 근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현재 운수업 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운수업은 여전히 특례유지업종에 포함되어 있음

○ 과거 2011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내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운수업 등은 특례유지업종에 포함된 바 있었음

○ 특례업종 중 운수업의 경우 근로자의 피로누적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입법 논의뿐만 아니라, 이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와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는 2017. 7. 17. 버스운전기사 장시간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향후 구체적인 실태 조사의 결과 및 근로감독 이행 단계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02) 788-4733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기준혁신추진팀		044) 202-7526 044) 202-7543

■ IT업계의 과도한 근로시간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IT업계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고용노동부	IT업계는 과도한 장시간 근로관행이 만성화되어 있으므로, 해결 방안을 마련 특히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포괄임금제를 운용하는 업종의 노동시간 등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과 연동하여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 포섭되도록 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는 2017년 2월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해당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 IT업종 등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도

○ IT업종 대상 원·하청 구조, 고용형태, 장시간근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 이를 기반으로 2017년 근로감독과 연계

○ 2017년 상반기 방문 실태조사를 토대로 100개사를 선정, 기획 감독(장시간 근로, 불법파견, 불합리한 차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 점검)

○ 아울러, 장시간근로를 지양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IT 업종 등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도하고 IT 업종 대상 실태조사 실시 (이행)**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감독 연계 (이행)
- 장시간근로를 지양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방안 검토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정부는 IT업계 장시간 근로를 해결 방안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관련 업계의 근로 실태 등을 조사·분석하고 향후 근로감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해당 업계 근로실태 조사·분석, 이를 토대로 상반기 근로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고용노동부, IT서비스업체 83개소 중 79개소 노동법 위반 적발(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 처우 등)[3]

○ 다만,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국회가 요구한 해결 방안 및 포괄임금제 폐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국회가 시정 및 처리 요구한 포괄임금제 금지와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와의 연계 방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02) 788-4733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고용차별개선과 근로기준정책과		044) 202-7570 044) 202-7526

■ 노사간 균형감이 있는 고용노동행정 필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노사간 균형감이 있는

3) 고용노동부는 2017. 7. 27. IT서비스업체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음

고용노동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노사자율적 영역인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과도하게 하는 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은 감소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노사간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 및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는 2017년 2월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노사 간 균형감이 있는 고용노동행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노사를 막론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토록 하겠음

- (단체협약 시정)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 노력 계속(연중). 2016년 12월말 기준 대상 사업장 1,503개소 중 자율개선완료 741개소(1,172조항)

○ (부당노동행위) 노사·노노간 갈등 예상 사업장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예방 지도·점검 실시(연중)

-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유형별 수사기법을 포함한 「부당노동행위 수사업무매뉴얼」마련(2017. 2), 근로감독과 교육 등을 통해 수사관행 개선 병행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 노력을 보고함 (이행 중)**

- 노사·노노간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예방 지도·점검 실시하겠다고 보고함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단체협약 시정명령)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의 방침을 밝혀 왔음

- 국회는, 정부가 노사자율적 영역인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함. 정부는, 국회의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단체협약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의 시정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위법한 단체협약 및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의 판단 기준 등

○ (부당노동행위) 국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노사 간의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 및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음

- 이에 대하여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수사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근로감독관 교육 등을 통해 수사관행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힘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 및 기획수사 실시,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시달, 전담조직 및 상시제보시스템 운영을 주요 내용을 제시함
- 정부의 이러한 조치와 추진계획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감소의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행과정으로 이해됨.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 심판, 재판, 처벌 등은 노동위원회,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고용노동부의 자체 역량이 필요한 만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후속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02) 788-4733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		044) 202-7611

■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 2대 지침 관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 2대 지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고용노동부	ㅇ 고용노동부가 2월에 발표한 2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내서에 불과함에도 '지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ㅇ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 지침을 발표한 이후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 퇴출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시작하였는 바, 이 중 상당수는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 ㅇ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을 임금삭감의 근거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2대 지침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는 2017년 2월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ㅇ 2대 지침은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시 법률과 판례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내부적으로 통일된 집행기준을 정하는 의미에서 표제에 '지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님

ㅇ 철저하게 법률과 판례를 토대로 작성된 2대 지침이 현장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교육, 홍보, 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음

– 2017년 감독 시 교육컨설팅업체를 포함하여 2대 지침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대 지침에서 '지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함 (미이행)
- 철저하게 법률과 판례를 토대로 작성된 2대 지침이 현장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교육, 홍보, 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보고함 (이행 중)
- 2017년 감독 시 교육컨설팅업체를 포함하여 2대 지침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함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의 '지침'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법률과 판례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내부적으로 통일된 집행기준을 정하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함

○ 국회에서의 지적은, 사업장에서 2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의 소지가 있다는 점과 2대 지침을 토대로 사업장에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점이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및 조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회에서의 요구는, 공정인사 지침 발표 이후 기업에서 근로자 퇴출 프로그램 등이 운용되는 등 2대 지침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감독 강화 및 방지 조치였음

○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을 유지하면서 이를 토대로 교육, 홍보, 지도하고 2대 지침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함

-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은 노동계로부터 '쉬운 해고를 조장하는 지침'이라는 비판과 학계로부터 '정책의 모호성과 추진 배경의 불명확성, 판례에 따른 지침의 한계' 등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과 관련하여 정책 추진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지침의 유지 또는 폐기 등), 2대 지침이 오·남용된 사례 등 구체적인 실태 조사

및 향후 세부적인 근로감독 및 방지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02) 788-4733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과		044) 202-7302

집필자 명단

분 야	직 위	성 명	연락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팀 장	심정희	4540
	입법조사관	조규범	4541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팀 장	심정희	4540
	입법조사관	조규범	4541
	입법조사관	백상준	4544
	입법조사관	박지영	4547
	입법조사관	박혜림	4542
	입법조사관보	이재일	4546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외교부 통일부	팀 장	유웅조	4550
	입법조사관	이승현	4555
	입법조사관	이승열	4557
	입법조사관	김예경	4551
〈국방위원회 소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팀 장	유웅조	4550
	입법조사관	형혁규	4553
	입법조사관	김도희	4556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팀 장	이상팔	4560
	입법조사관	박영원	4561
	입법조사관	김현정	4566
	입법조사관	하혜영	4562
	입법조사관	노성준	4564
	입법조사관	배재현	4563
	입법조사관	류영아	4565
	입법조사관	김종갑	4534
	입법조사관보	정재환	4567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부 국세청	팀 장	정지은	4570
	입법조사관	김민창	4571
	입법조사관	김재환	4575

분 야	직 위	성 명	연락처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국제원산지정보원	입법조사관	정도영	4574
	입법조사관	임언선	4572
	입법조사관	김영찬	4573
	입법조사관	조대형	4585
	입법조사관보	박인환	4578
〈정무위원회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팀 장	임동춘	4580
	입법조사관	최정배	4581
	입법조사관	원종현	4583
	입법조사관	기준하	4584
	입법조사관	김창호	4582
	입법조사관	강지원	4587
	입법조사관	조대형	4585
	입법조사관	김성봉	4554
	입법조사관보	김애진	4586
	입법조사관보	이재일	454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마사회	팀 장	김봉주	4590
	입법조사관	배민식	4593
	입법조사관	유제범	4588
	입법조사관	강재구	4604
	입법조사관보	김태우	459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팀 장	김봉주	4590
	입법조사관	전은경	4596
	입법조사관	유재국	4594
	입법조사관	구본근	4598
	입법조사관	박충렬	4591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새만금개발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팀 장	유인규	4600
	입법조사관	김예성	4605
	입법조사관	장경석	4601
	입법조사관	김진수	4603
	입법조사관	박준환	4602
	입법조사관	강재구	4604

분 야	직 위	성 명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조사관보	박인숙	460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팀 장	유의정	4700
	입법조사관	이덕난	4702
	입법조사관	정환규	4701
	입법조사관	정태희	4703
	입법조사관	조인식	4705
	입법조사관	임주현	4707
	입법조사관	김휘정	4704
	입법조사관보	유지연	4706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애인개발원	팀 장	이만우	4720
	입법조사관	서창식	4726
	입법조사관	조숙희	4727
	입법조사관	김주경	4725
	입법조사관	최병근	4721
	입법조사관	서선영	4722
	입법조사관	박선권	4724
	입법조사관보	김대명	4728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여성가족부	팀 장	이만우	4720
	입법조사관	조주은	4723
〈환경노동위원회소관〉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팀장 직무대리	최준영	4731
	입법조사관	김경민	4732
	입법조사관	전형진	4734
	입법조사관	한인상	4733
	입법조사관	이혜경	4737
	입법조사관보	이동영	4736
편집	팀장	박규찬	4530
	입법조사관보	김유정	4537
	행정실무원	김안나	4530
	입법조사원	방우리	4530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Ⅲ

발 간 일 | 2017년 8월 31일
발 행 | 이 내 영
편 집 |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발 행 처 |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TEL 02·788·4524
인 쇄 |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1.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508-4240
발간등록번호 31-9735006-001485-14

Ⓒ 국회입법조사처, 201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정감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www.nars.go.kr
ISSN 2508-4240